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

2021. 12.



경상남도
GYEONGNAM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

2021. 12.



< 일러두기 >

- 본 관리계획(도면포함)에 표기된 해양공간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대상 해역의 해양용도구역 등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인접 시·도의 육지부와 관할 해역이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관리계획의 도면은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 행정구역의 경계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의 참고자료로 주장·활용할 수 없고, 어업권 및 공유수면 관리 권한 등 「해양공간계획법」의 소관사항이 아닌 타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제1장 해양공간관리계획 개요 3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 2. 목적 및 성격 4
 - 1) 계획의 목적 4
 - 2) 계획의 성격 4
- 3. 범위 5
 - 1) 시간적 범위 5
 - 2) 내용적 범위 5
 - 3) 공간적 범위 6
- 4. 수립 절차 7
- 5. 추진 경과 9

제2장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13

- 1. 환경적·생태적 특성 13
 - 1) 조석 및 조류 13
 - 2) 해안선 13
 - 3) 유·무인도서 14
 - 4) 연안습지 15
 - 5) 연안·해양보호구역 15
 - 6) 해양생태계 현황 17
 - 7) 해양수질 현황 20
- 2. 이용·개발 및 관리 현황 23
 - 1) 인구 23
 - 2) 사업체수 24
 - 3) 수산 26
 - 4) 바다골재 및 광업권 32
 - 5) 해양관광 34
 - 6) 항만·항행 39

7) 군사활동	53
8) 공유수면 점용사용	55
9) 안전관리	56
3.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59
1) 분석 개요	59
2) 분야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62
4. 해양공간관리 현안	83
1) 일반주민 설문조사	83
2) 해양공간관리 현안	93
5.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97
제3장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103
1. 해양공간특성평가	103
1) 해양공간특성평가 개요	103
2) 기초자료 조사·수집	105
3) 평가항목	107
4) 해양공간특성평가	109
2.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및 구획 방법	116
3.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130
1) 어업활동보호구역	132
2)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142
3) 해양관광구역	146
4) 환경·생태계관리구역	152
5) 연구·교육보전구역	157
6) 항만·항행구역	159
7) 군사활동구역	163
8) 안전관리구역	165
9) 에너지개발구역	167
제4장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 및 이행방안	171
1.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171
2.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175
1)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업무협의회('18.4.17~18)	175

2) 남해안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부산·경남지역 협의회('18.5.18)	175
3)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사전설명회('18.8.10)	176
4)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현장 정책설명회('18.11.01)	177
5) 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8.11.29)	178
6) 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제도 설명회 및 지역협의회('19.05.15)	178
7) 제1차 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9.08.07)	179
8) 제2차 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9.09.03)	179
3. 해양공간관리 이행·점검 방안	180
1)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구축	180
2) 해양공간관리 주기적 모니터링	181
부록 : 1. 경남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수요	187
2. 경남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서	190
3. 경남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위원	200
4. 지역협의회 운영결과	201
5.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210
6. 관계기관 의견조회 이후 제출 의견(20.11.28~)	221

표 목 차

〈표 2-1〉 경상남도 해안선 길이(2020년)	14
〈표 2-2〉 경상남도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현황	14
〈표 2-3〉 경상남도 연안습지 면적 변화(2008, 2013년)	15
〈표 2-4〉 경상남도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15
〈표 2-5〉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 현황	16
〈표 2-6〉 경상남도 특정도서 지정 현황	17
〈표 2-7〉 경남 해역의 해양환경(WQI, COD, DO, TN, TP) 현황	21
〈표 2-8〉 경남연안 인구 수(명)	23
〈표 2-9〉 경남연안 사업체수	25
〈표 2-10〉 경남연안 면허어업현황(면적)	28
〈표 2-11〉 경남연안 어항 현황	29
〈표 2-12〉 경남연안 인공어초 설치현황	30
〈표 2-13〉 경남 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30
〈표 2-14〉 경남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현황	31
〈표 2-15〉 경남 해수면 수산자원보호수면 지정 현황	31
〈표 2-16〉 경남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현황	32
〈표 2-17〉 경남연안 광업권·탐사권·채굴권 설정 현황	33
〈표 2-18〉 경남연안 해수욕장 2017년 방문객 수	34
〈표 2-19〉 경남연안 연안 및 해양 관광객 현황	35
〈표 2-20〉 경남 거제시 수중테마공원 개발계획	35
〈표 2-21〉 경남연안 마리나항만 개발 및 예정구역	36
〈표 2-22〉 경남연안 어촌체험마을 현황	37
〈표 2-23〉 경남연안 유어장 현황	38
〈표 2-24〉 경남연안 해안누리길 현황	38
〈표 2-25〉 경남 주변 해역 무역항·연안항 현황 (2021년)	39
〈표 2-26〉 경남 무역항 항만별 화물량 입출량 추이	39
〈표 2-27〉 경남 항만별 선박 입출항 현황(2018/2019)	40
〈표 2-28〉 경남권 컨테이너 처리 실적	41
〈표 2-29〉 경남 내 무역항 및 연안항의 비전 및 목표	41
〈표 2-30〉 마산항 항만 현황	42
〈표 2-31〉 삼천포항 항만 현황	43
〈표 2-32〉 통영항 항만 현황	44

〈표 2-33〉 장승포항 항만 현황	45
〈표 2-34〉 옥포항 항만 현황	46
〈표 2-35〉 고흥항 항만 현황	47
〈표 2-36〉 진해항 항만 현황	48
〈표 2-37〉 진해항 항만 현황	49
〈표 2-38〉 중화항 항만 현황	50
〈표 2-39〉 하동항 항만 현황	51
〈표 2-40〉 경남 연안 해군훈련구역 및 해양경찰청훈련구역 지정 개요	54
〈표 2-41〉 지역별 점용·사용 분포 현황	55
〈표 2-42〉 경남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지정 현황	58
〈표 2-43〉 경남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수역 지정 현황	58
〈표 2-44〉 국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연안·해양 이용·개발 관련 주요 계획	60
〈표 2-45〉 경남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사업성격)	60
〈표 2-46〉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현황	62
〈표 2-47〉 연안용도해역 및 기능구 지정 현황	62
〈표 2-48〉 경남연안 공유수면매립수요 현황	71
〈표 2-49〉 경남연안 해역이용협의 실적 현황	72
〈표 2-50〉 경남연안에 위치하는 항만개발수요	73
〈표 2-51〉 어항 개발	74
〈표 2-52〉 경남연안 해양관광 및 레저 개발 수요	74
〈표 2-53〉 경남연안 해양관광 및 레저 개발계획	75
〈표 2-54〉 경남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77
〈표 2-55〉 경남 해상 풍력발전 개발계획	78
〈표 2-56〉 갯벌복원 대상지 상세 현황	80
〈표 2-57〉 바다목장 조성 및 관리 사업	80
〈표 2-58〉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해양공간 활동간 갈등 예상 정도	88
〈표 2-59〉 지역 공무원이 인식하는 해양공간 활동간 갈등 예상 정도	89
〈표 2-60〉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인접 해역 내 공유수면 매립사업 현황	95
〈표 3-1〉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목록	105
〈표 3-2〉 특성평가 평가항목	107
〈표 3-3〉 해양용도구역 설정 시 고려사항	118
〈표 3-4〉 해양용도구역 지정기준	118
〈표 3-5〉 「해양공간계획법」의 해양용도구역과 「연안관리법」의 연안해역기능구 비교	122
〈표 3-6〉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시 기존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의 경과조치	122
〈표 3-7〉 항만·항행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123
〈표 3-8〉 환경·생태계관리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125

〈표 3-9〉 어업활동보호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126
〈표 3-10〉 해양관광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127
〈표 3-11〉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127
〈표 3-12〉 어업활동보호구역 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137
〈표 3-13〉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144
〈표 3-14〉 해양관광구역 내 관리구역	149
〈표 3-15〉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155
〈표 3-16〉 항만·항행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162
〈표 4-1〉 2018년도 제1차 부산·경남 지역협의회 구성(안)	173
〈표 4-2〉 2018년도 제2차 부산·경남 지역협의회 구성(안)	174
〈표 4-3〉 2019년도 부산 및 경남 지역협의회 최종 구성	174
〈표 4-4〉 부산시 업무협의회 주요내용	175
〈표 4-5〉 경상남도 업무협의회 주요내용	175
〈표 4-6〉 남해안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부산·경남 협의회 주요내용	176
〈표 4-7〉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사전설명회 주요내용	176
〈표 4-8〉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현장 정책설명회 주요내용	177
〈표 4-9〉 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178
〈표 4-10〉 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제도 설명회 및 지역협의회	178
〈표 4-11〉 제1차 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179
〈표 4-12〉 제2차 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179
〈표 4-13〉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대상 및 방법	182
〈표 4-14〉 자체평가 보고서의 목차	183
〈부록표 1-1〉 경남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사업성격)	188
〈부록표 1-2〉 경남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용도해역)	189
〈부록표 3-1〉 2019년도 경남 지역협의회 위원	200

그림 목 차

〈그림 1-1〉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 범위 6

〈그림 1-2〉 관리계획(안) 초안 작성 및 수립 절차 7

〈그림 2-1〉 남해안 일부해역의 조간대 및 조하대 Taxonomic distinctness index(Δ+) 현황
(법정자료 및 해역이용협의 취합자료) 19

〈그림 2-2〉 경남 연안 잘피 서식 현황 19

〈그림 2-3〉 경남연안 인구수 변화 24

〈그림 2-4〉 경남 어업생산량 변화 26

〈그림 2-5〉 멸치 어획량 분포 및 집중 해역('13~'17) 27

〈그림 2-6〉 어업권 현황 비교 28

〈그림 2-7〉 수산자원관리수면 위치도 31

〈그림 2-8〉 수중테마공원 배치계획도 36

〈그림 2-9〉 마산항 계획 평면도 42

〈그림 2-10〉 삼천포항계획평면도 43

〈그림 2-11〉 통영항 계획 평면도 44

〈그림 2-12〉 장승포항 계획 평면도 45

〈그림 2-13〉 옥포항 계획 평면도 46

〈그림 2-14〉 고현항 계획 평면도 47

〈그림 2-15〉 진해항 계획 평면도 48

〈그림 2-16〉 국도항 계획 평면도 49

〈그림 2-17〉 중화항 계획 평면도 50

〈그림 2-18〉 하동항 계획평면도 51

〈그림 2-19〉 경남연안 항로 지정현황 52

〈그림 2-20〉 경남연안 해상사격 훈련구역 지정 현황 53

〈그림 2-21〉 경남연안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55

〈그림 2-22〉 지역별 점용사용 분포 현황 55

〈그림 2-23〉 경남 해역 화물선·탱커선 밀집도 56

〈그림 2-24〉 경남 안전관리 필요 해역 57

〈그림 2-25〉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위치도(성격) 61

〈그림 2-26〉 경상남도 연안용도해역 지정 63

〈그림 2-27〉 경상남도 연안해역기능구 지정 67

〈그림 2-28〉 경남연안 공유수면 매립수요 현황 71

〈그림 2-29〉 제2신항 현황 개요	73
〈그림 2-30〉 통영 욕지도 해상풍력발전 대상 후보지 및 사업 최종 목표	78
〈그림 2-31〉 욕지 해상풍력 발전단지 배치 계획	79
〈그림 2-32〉 경남 해역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분포	81
〈그림 2-33〉 경남 주민 거주만족도 및 바다 이용현황	83
〈그림 2-34〉 경남 바다 고유 자원의 유형 및 바다 공간 혜택 인식도	84
〈그림 2-35〉 경남 바다와의 유대 정도 및 이용·개발을 통한 생태계 변화에 대한 의견	85
〈그림 2-36〉 응답자 및 지역사회에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	85
〈그림 2-37〉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 변화 정도 및 이용방식 복잡화 정도	86
〈그림 2-38〉 지역주민의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	87
〈그림 2-39〉 지역 공무원의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	87
〈그림 2-40〉 해양공간계획제도 인지 여부 및 갈등해결 기여 여부	89
〈그림 2-41〉 해양공간계획제도 이행을 위한 필요요소의 중요도	90
〈그림 2-42〉 경남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우선 가치	90
〈그림 2-43〉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활동 갈등변화 정도 및 관리 필요성	91
〈그림 2-44〉 경남 바다 향후 지향 발전양상 및 해양공간관리 관련 우선 해결 현안	92
〈그림 2-45〉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우선 해결 현안	92
〈그림 2-46〉 해양공간계획 정책방향 도출 과정	97
〈그림 3-1〉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 및 방법	103
〈그림 3-2〉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	104
〈그림 3-3〉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109
〈그림 3-4〉 일반격자(영해내측: 3'×3', 영해외측: 15'×15')만 적용한 격자 구성	109
〈그림 3-5〉 특성평가를 위한 GIS 분석 과정	110
〈그림 3-6〉 경남 어업활동보호구역 특성평가 결과	111
〈그림 3-7〉 경남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111
〈그림 3-8〉 경남 에너지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112
〈그림 3-9〉 경남 연구·교육보전 구역 특성평가 결과	112
〈그림 3-10〉 경남 군사활동구역 특성평가 결과	113
〈그림 3-11〉 경남 항만·항행구역 특성평가 결과	113
〈그림 3-12〉 경남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114
〈그림 3-13〉 경남 안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114
〈그림 3-14〉 경남 해양관광구역 특성평가 결과	115
〈그림 3-15〉 해양활동 별 보전·이용·개발 특성 개념도	116
〈그림 3-16〉 해양용도구역 지정 절차	121
〈그림 3-17〉 용도구역별 1:1 공간분석을 통한 중첩 공간	128
〈그림 3-18〉 용도구역별 관리구역 도출 결과	129

〈그림 3-19〉 해양용도구역 별 관리구역 현황	131
〈그림 3-20〉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구역	137
〈그림 3-21〉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내 관리구역	144
〈그림 3-22〉 해양관광구역 내 관리구역	149
〈그림 3-23〉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내 관리구역	155
〈그림 3-24〉 항만·항행구역 내 관리구역	161
〈그림 4-1〉 2018년도 부산·경남 지역협의회 추진 경과	172
〈그림 4-2〉 2019년도 부산·경남 지역협의회 추진 경과	173
〈그림 4-3〉 현장답사 코스	177



제1장

해양공간관리계획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목적 및 성격
3. 범위
4. 수립 절차
5. 추진 경과



제1장 / 해양공간관리계획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해양 이용개발의 다양화, 부처별 해양공간 선점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해양생태계 가치저하 및 이용-보전 간, 이용 간 갈등 심화
 - 해양자원은 공유재로 비합리적 입지선정은 타분야 활용 가능성 훼손
 - 바다골재 채취와 어민과 갈등, 양식어장과 선박 통행·해양에너지 간 갈등, 어로 활동과 해양레저 활동 간 충돌 등 해양공간 이용의 갈등 광범위
- 해양생태계의 가치, 개발잠재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해양공간의 핵심활동과 관리방향을 사전 설정하는 실효적 계획체제 도입 필요
 - '17년 EU 해양수산국과 UNESCO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는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 이하 "MSP")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MSP 목표(전 세계 해양의 1/3, 2025년까지 MSP 통해 관리)를 제시하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
 - 우리나라도 '18년 4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여 해양공간 통합관리 정책을 도입·시행
- 「해양공간계획법」에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해양공간을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명시
 -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 보전 및 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지정·관리함.
 - 해양수산부 장관 :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 시·도지사 : 그 외 해양공간(영해 내)
 - 다만, 법 시행 후 제7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해양공간계획법」 부칙 제5조)

- 해양공간특성평가, 해양용도구역제 등 해양공간의 객관적 평가 수단 도입 및 적용 필요
 - 해양용도구역제 도입으로 해양공간의 용도를 미리 지정하고 관리함으로써 해양공간의 핵심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혜택을 지속가능하게 유지 및 보호
 -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2. 목적 및 성격

1) 계획의 목적

- 해양공간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개발·보전 방향을 설정하고 계획 수립
- 해역의 특성과 다양한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공간의 현재 활동 및 미래 수요에 맞는 계획의 수립
- 효율적인 해양공간 관리를 위해 민·관·산·학·연 등 이해관계자의 협력 및 참여의 장 마련

2) 계획의 성격

- 법정계획
 -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해양공간의 체계적·통합적 보전 및 이용·개발하기 위한 법정계획임.
- 실천계획
 - 해양공간관리계획을 통해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개발의 실패를 피약하고,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관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관리에 관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실천계획임.
- 협력계획
 - 해양공간관리계획은 민·관·산·학·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협력계획임.

3. 범위

1) 시간적 범위

- 고시일로부터 적용 :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수시 변경
 -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여건 변화로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변경
 - 향후 발생하는 해양공간에 대한 보전 및 이용·개발에 대한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
 - * 「해양공간계획법」제7조제7항에 따라 수립·고시된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2) 내용적 범위

-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이하, “대상 해양공간”)
-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
-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 및 현황에 관한 사항
- 대상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 대상 해양공간의 공간구조와 기능배분에 관한 사항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제5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제3항
 -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된 해양공간을 용도에 맞게 지속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리계획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3) 공간적 범위

○ 대상 해양공간의 면적은 5,975.52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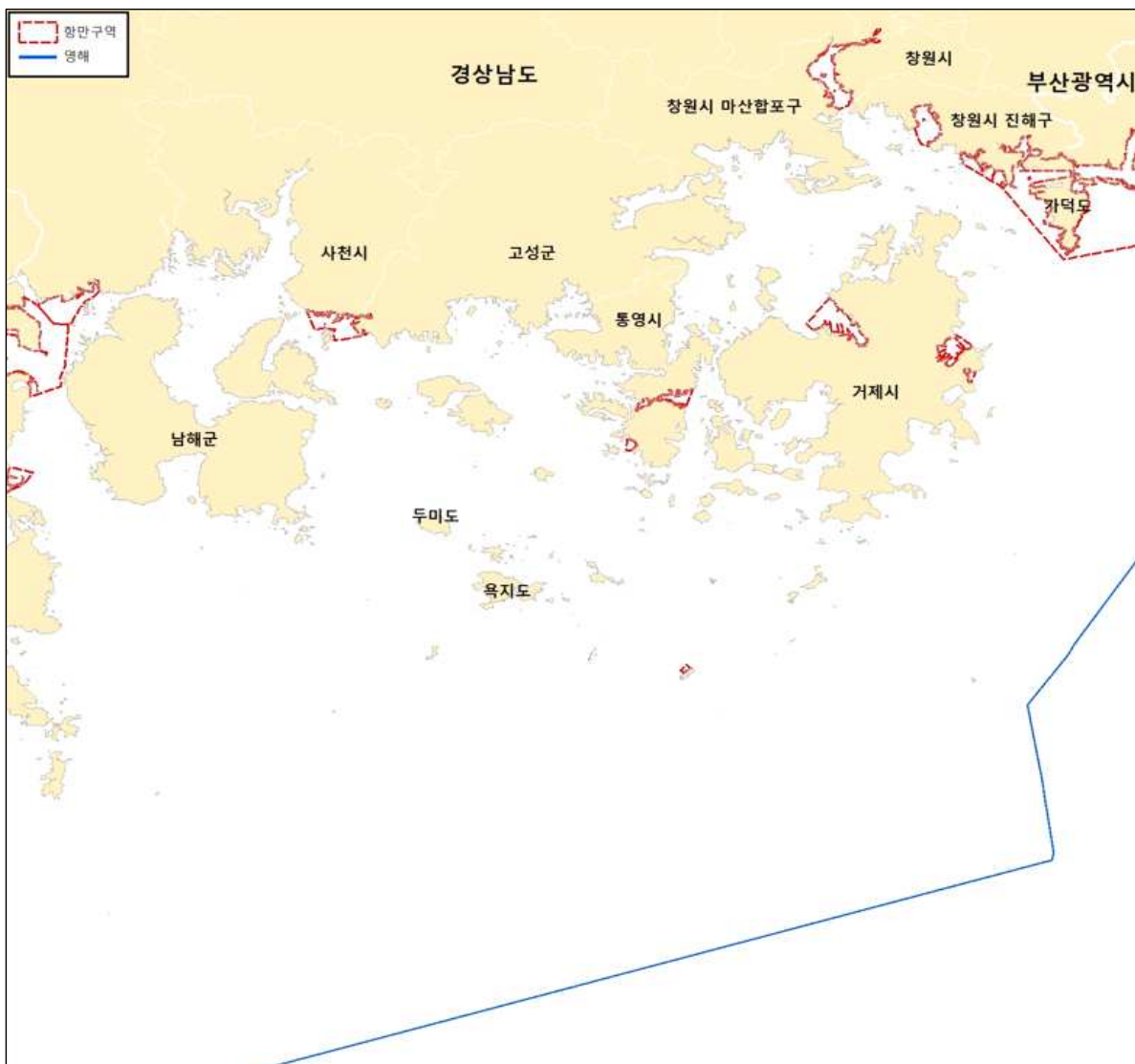
* 면적은 관할해역 주장 범위(현재 판결, 관습적 경계, 연안관리지역계획 범위 등)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인접 시·도의 육지부와 관할해역이 포함되는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도면)과는 다를 수 있음.

- 해양수산부 : 항만구역(111.49km²)

- 경남도 : 영해 중 항만구역 제외 해양공간(5,864.03km²)

*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항만구역 등 대한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변경하고, 그 외 해양 공간(영해)은 시·도지사가 수립·변경(「해양공간계획법」 제7조)

〈그림 1-1〉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 범위



4. 수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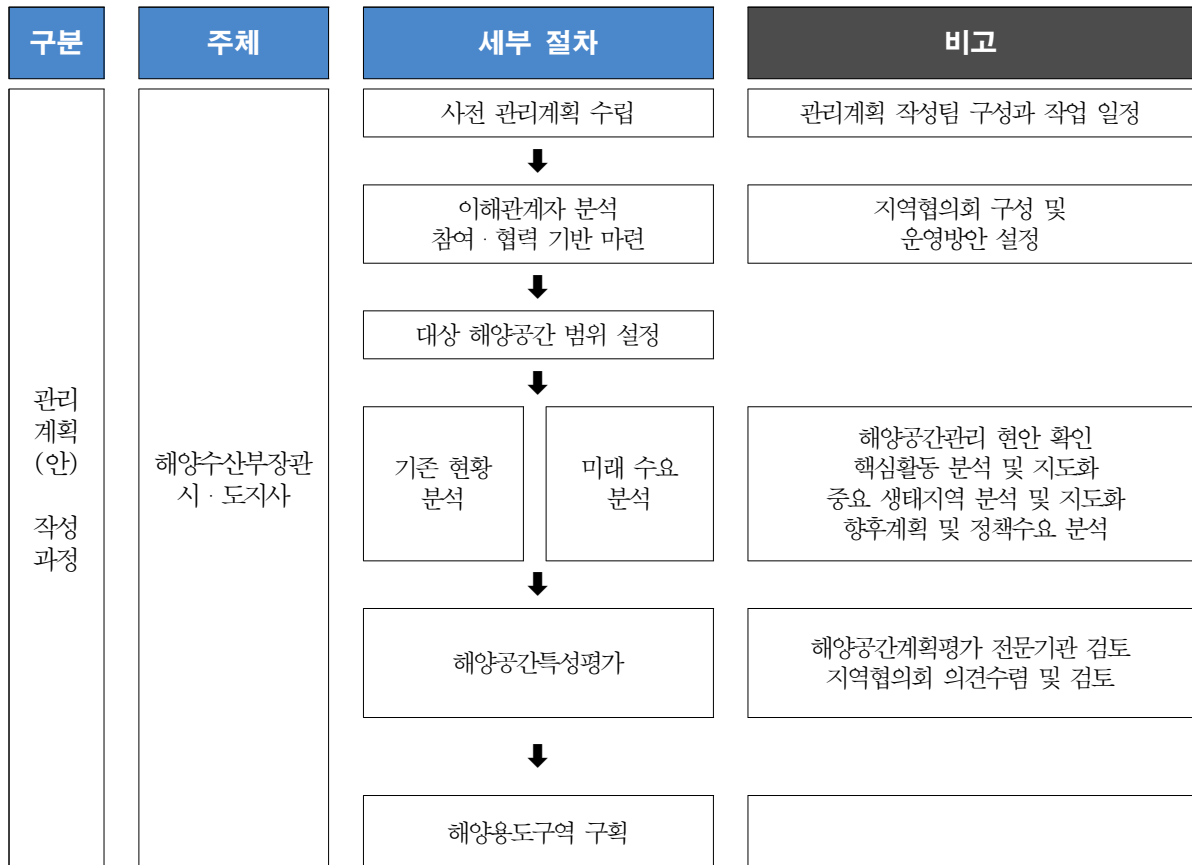
□ 관리계획의 초안 작성

-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이용·개발·보전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협의회를 통해 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계획(안) 마련
- 관리계획(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

□ 관리계획의 승인 과정

- 이후 관리계획(안)은 시·도지사 소속의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게 관리계획(안)의 승인을 신청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승인

〈그림 1-2〉 관리계획(안) 초안 작성 및 수립 절차



구분	주체	세부 절차	비고	
		↓		
		해양용도구역 및 핵심 해양 활동 상충·조정		
		↓		
		9개 해양용도구역(안) 지정	지역협의회 의견수렴 및 검토	
		↓		
		해양공간관리계획(안) 작성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검토	
		↓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공청회 등)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해당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심의 (시·도 소속)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해당	
		↓		
관리 계획 승인 과정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신청	<제출자료> -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 - 공청회 결과, 관계 행정기관 협의결과 -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심의 결과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검토 결과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		
	해양수산부장관	↓	관리계획 승인	
	해양수산부장관	↓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지사	↓	공보 고시 관리계획 수립 공간정보 제출	
	시·도지사	↓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시·도지사	↓	일반열람	<제출자료> -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 등 -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 해양공간정보체계 등재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검토 후)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1-64호)

5. 추진 경과

-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착수('18.3)
- 경남 지역협의회 사전설명회('18.8) 및 지자체 대상 설명회('18.11) 개최
- 2018년 경남 지역협의회('18.11)
- 2019년 경남 지역협의회('19.8/'19.9, 2회) 개최
-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안) 공청회 개최('19.10)
-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안) 관계기관 협의('19.10)
-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5)
- 경남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심의('21.10)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서면 심의('21.12)



제2장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1. 환경적·생태적 특성
2. 이용·개발 및 관리 현황
3.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4. 해양공간관리 현안
5.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제2장 / 해양공간관리 여건 및 정책방향



1. 환경적·생태적 특성

1) 조석 및 조류

- 경남 해안은 많은 유·무인도서가 존재하며, 반도와 만이 연속해서 분포하여 해안선이 복잡함.
 - 특히 남해도와 거제도에 의하여 반폐쇄적 지형인 진주만과 진해만이 형성되어 있음.
 - 황해와 마찬가지로 대륙붕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수심분포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갈수록 깊어짐.
- 조석은 황해보다 작고, 동해보다 크게 나타나며 동쪽으로 갈수록 조차는 점차 작아짐.
 - 조석특성은 반일주조형으로 통상적으로 1일 2회조이고 일조부등은 매우 작음.
- 남해 동부 해역은 조류 타원의 반장축과 반단축의 차이가 매우 작은 왕복성 조류가 주를 이루지만, 일부 해역에서는 유속이 약하며 복잡하게 나타남.
 - 창조류는 대체로 서향 또는 북서향하고 낙조류는 남향 또는 남동향함(국립해양조사원, 2016).

2) 해안선

- 경남의 해안선 길이는 총 2,477.81km이며 전국 해안선 길이의 16.2%를 차지
 - 연안 시·군별로 통영시(776.16km), 거제시(513.64km), 남해군(375.07km) 순
 - 자연해안선이 57.7%(1,430.53km)으로 인공해안선(1,047.28km)에 비해 발달해 있으나 전국 자연해안선 평균(64.3%)보다 낮은 수준임

〈표 2-1〉 경상남도 해안선 길이(2020년)

(단위 : km, %)

구분	총 해안선 길이		자연해안선		인공해안선	
	길이	비율	길이	비율	길이	비율
전국	15,281.68	100.0	9,821.77	64.3	5,459.91	35.7
경상남도	2,477.81	100.0	1,430.53	57.7	1,047.28	42.3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2020년 해안선 통계 공표 자료

- 인공해안선 비율이 43.2%로 전국 평균(34.0%)보다 높으며, 대부분의 인공해안선(86.2%)이 육지부에 분포
 - 경상남도 인공해안선의 길이는 총 1,086.62km로 전체 해안선 길이의 4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평균(34.0%)보다 높은 인공화 경향을 보임
 - 연안 시·군별로는 고성군(56.8%), 창원시(54.8%) 순이며, 통영시가 31.7%로 인공해안선 비율이 가장 낮으나 지자체별 차이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편
 - 인공해안선 중 육지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86.2%로 전국 평균(78.3%)보다 다소 높음

3) 유·무인도서

- 유·무인도서는 총 865개소, 이 중 유인도서는 72개소, 무인도서는 793개소임.
 - 무인도서 중 관리유형이 지정된 무인도서는 391개소이며 이중 이용·개발가능 무인도서는 총 251개로 64.2% 차지
 - 개소 수를 기준으로 절대·준보전 유형이 35.8%, 이용·개발가능 유형은 64.2%를 차지
 - 면적을 기준으로 절대·준보전 유형이 25.2%, 이용·개발가능 유형은 74.8%를 차지

〈표 2-2〉 경상남도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현황

구분	개소	비율(%)	면적(m ²)	비율(%)
절대보전	14	3.6	261,919	3.4
준보전	126	32.2	1,678,827	21.8
이용가능	182	46.6	1,829,869	23.7
개발가능	69	17.6	3,943,023	51.1
총계	391	100.0	7,713,638	100

자료 :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 현황(2017.12.31 기준)

4) 연안습지

- '18년 연안습지 면적은 총 62.8km²로 '08년에 비해 20.6% 감소
 - '18년 연안습지 면적은 '13년에 비하여 6km² 감소하여 총 62.8km²로 전국 연안습지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08년부터 지속 감소 추세

〈표 2-3〉 경상남도 연안습지 면적 변화(2008, 2013년)

구분	2008년		2013년		2018년	
	면적(km ²)	비율(%)	면적(km ²)	비율(%)	면적(km ²)	비율(%)
전국	2,489.4	100.0	2,487.2	100.0	2,482.0	100.0
경상남도	79.1	3.2	68.8	2.8	62.8	2.5

자료 : 해양수산부, 연안습지면적현황, 2018

5) 연안·해양보호구역

- 습지보호지역 1개소, 해양보호구역 2개소, 해상국립공원 1개소가 지정·관리 중
 - 경남 연안에는 해양보호구역 2개소, 마산만 봉암곶별 1개소가 있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경상남도 일원과 전라남도 여수시를 포함하여 지정되어 있음

〈표 2-4〉 경상남도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

구분	명칭	위치	지정년도	면적(km ²)
해양보호구역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고성군	2019	2.1
	선촌마을 주변해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통영시	2020	1.9
습지보호지역	마산만 봉암곶별	창원시	2011	0.1
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전남~경남	1968	408.5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현황(2018.6. 기준)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지정 현황(2018.2. 기준)

□ 천연기념물 6개소, 사적 1개소, 명승 2개소 등 연안·해양에 총 9개소 분포

〈표 2-5〉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 현황

명칭	구분	분류	지정일	관리자
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	천연기념물 제227호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 생물과학기념물 / 분포학	1970.11.04	거제시
통영 홍도 팽이갈매기 번식지	천연기념물 제335호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 생물과학기념물 / 생물상	1982.11.20	통영시
사천 아두섬 공룡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제474호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 지구과학기념물 / 고생물	2006.12.05	사천시
사천 늑도 유적	사적 제450호	유적건조물 / 유물산포지유적산포지 / 육상유물산포지 / 선사유물	2003.07.02	사천시
남해가인리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제499호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 지구과학기념물 / 고생물	2008.12.29	남해군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 산지	천연기념물 제411호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 지구과학기념물 / 고생물	1999.09.14	고성군
소매물도등대섬	명승 제18호	자연유산 / 명승 / 자연명승	2006.08.24	-
남해지족해협죽방렴	명승 제71호	자연유산 / 명승 / 역사문화명승	2010.08.18	남해군
하동 중평리 장구섬 화석 산지	천연기념물 제477호	자연유산 / 천연기념물 / 지구과학기념물 / 고생물	2007.05.07	하동군

자료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 특정도서 62개소가 지정·관리 중이며 전국 특정도서의 24.9%가 경남 연안·해양에 분포

○ 전국 연안·해양에 지정된 특정도서는 총 249개소이며, 이 중 66.7%가 전라남도(104개소, 41.8%), 경상남도(62개소, 24.9%)에 분포

- 경남에 지정된 특정도서 62개소 중 가장 많은 숫자가 통영시에 지정(26개소)되어 있으며, 남해군(9개소), 하동군(9개소), 거제시(8개소) 순으로 특정도서가 분포

- 경상남도에 지정된 특정도서의 면적은 1,762km²로서 전국 특정도서 면적의 13.3%를 차지함

〈표 2-6〉 경상남도 특정도서 지정 현황

구분	거제시	마산시	사천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계
도서수	8	1	4	26	5	9	9	62
면적(m ²)	171,038	27,489	43,140	921,442	90,428	354,369	154,532	1,762,438

자료 : 환경부, 특정도서 지정현황(2018.1. 기준)

6) 해양생태계 현황

□ 해양생태계

- 해양환경공단(2016)의 해양생태계 조사에 따르면 남해안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성에 따라 소해역 생태계로 구분 가능
 - 소해역 생태계는 진도-완도 외해역, 고흥반도 주변해역, 남해 서부 외해역, 남해동부 내만해역, 남해동부 하구영향권역, 남해동부 연안역, 대마난류 영향권임. 이 중 경남에 해당하는 해역은 남해동부 연안역임
- 남해 동부해역의 연안 해역은 활발한 어·패류 양식뿐만 아니라, 어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양자원의 무분별한 남획과 이용이 해양생태계의 건강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새우조망 등에 의하여 저서생태계가 낮은 건강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 수역에 대한 해역관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통영과 거제 남부해역의 저서생태계가 낮은 건강도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음. 이는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던 현상으로 관찰된 생물상은 낮은 생체량을 보이거나 기회종 또는 작은 몸체를 가지는 개체들로 구성되는 등 전형적인 교란 서식처의 특성을 보이며, 해당 해역이 새우조망어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따라서 생태계가 순차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격년제 휴식구역 신설 등 제도 개선노력 필요

□ 해양생물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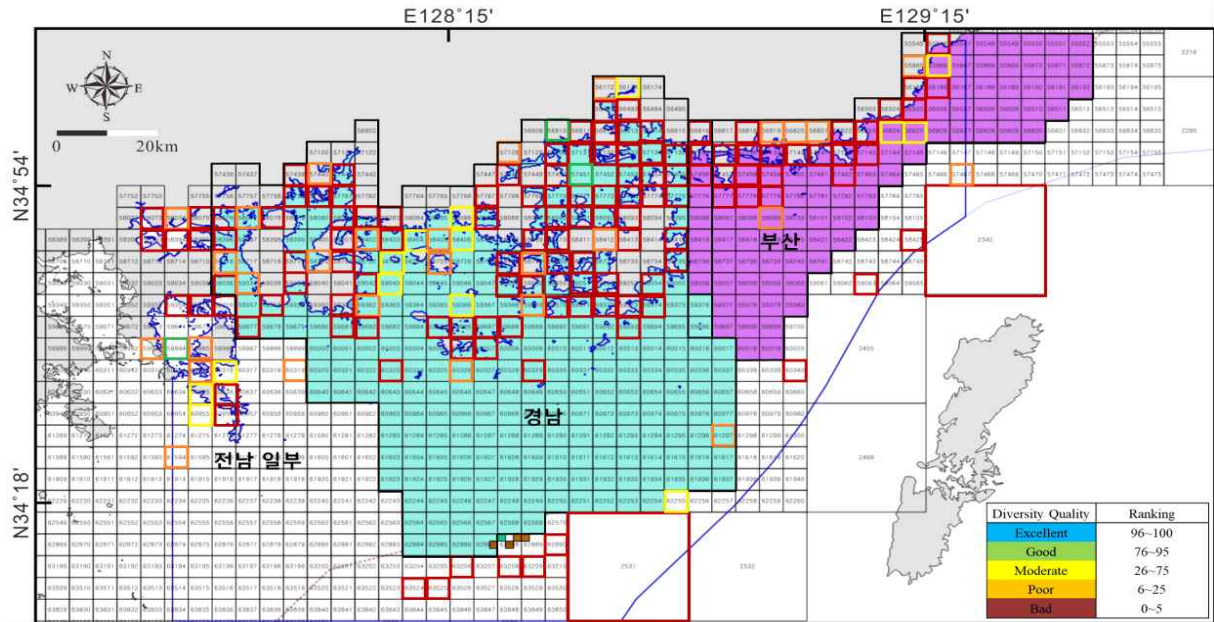
- 경남 해역의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조간대 및 조하대 저서동물 출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법정조사인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2016) 자료의 5월, 8월 평균을 분석한 결과임

- 경남 해역의 식물플랑크톤 출현종수는 표층 28~70종, 저층 16~59종의 범위를 보이며, 현존량은 표층 95,201~6,633,221 cells/ℓ, 저층 14,873~1,924,343 cells/ℓ의 범위를 보임
 - 동물플랑크톤의 출현종수는 20~37종, 현존량은 854~17,211 ind./m³의 범위를 보임
 - 조하대 저서동물의 출현종수는 13~99종, 서식밀도는 36.3~2851.2 개체/m², 생물량은 0.8~602.2 g/m²의 범위를 보임
 - 조간대 저서동물의 출현종수는 21~95종, 서식밀도는 380.0~7,726.7 개체/m², 생물량은 5.4~2,585.9g/m²의 범위를 보임
- 경남 해역의 생물다양성 진단을 위해 조간대와 조하대를 대상으로 수집된 저서대형동물 출현종자료를 이용하여 Taxonomic distinctness index ($\Delta+$, 델타플러스)를 구하였음
- Taxonomic distinctness index ($\Delta+$)는 출현종들의 진화적 유연관계를 거리로 환산하여 이를 생물다양성에 반영하는 지수로 생물다양성을 나타내는 index의 한 종류임¹⁾
 - 지수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출현 종 목록이며, 개체수나 생물량 자료가 필요하지 않고 채집면적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넓은 범위의 해양생물다양성을 파악하는데 적합
 - Taxonomic distinctness index ($\Delta+$)는 국가/지역간 생물다양성 비교가 가능함
- 경남 해역의 조간대, 조하대 저서생태계(법정조사, 해역이용협의) Taxonomic distinctness index($\Delta+$)를 분석한 결과 총 323개 격자(부산과 경남이 중복되는 격자 포함) 중 108개의 격자에 자료가 존재함
- 법정조사인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2016) 자료와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의 해역이용협의 보고서(2014-2017)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임
 - 델타플러스로 판정한 생물다양성을 5등급으로 구분하여 아래 그림에 제시함
 - 자료가 존재하는 108개 격자 중에서 1등급은 0개(0%), 2등급은 0개(0%), 3등급은 5개(4.6%), 4등급은 12개(11.1%), 5등급은 91개(84.3%)로 나타남
- * 다만, 계획수립 대상 해양공간의 분석격자(323개, 3분 격자)의 자료 유무에 따라 차이가 큼
- ** 1등급(탁월), 2등급(좋음), 3등급(보통), 4등급(빈약), 5등급(나쁨)

1) 영국 Plymouth Marine Laboratory 소속의 Clarke and Warwick 박사가 1998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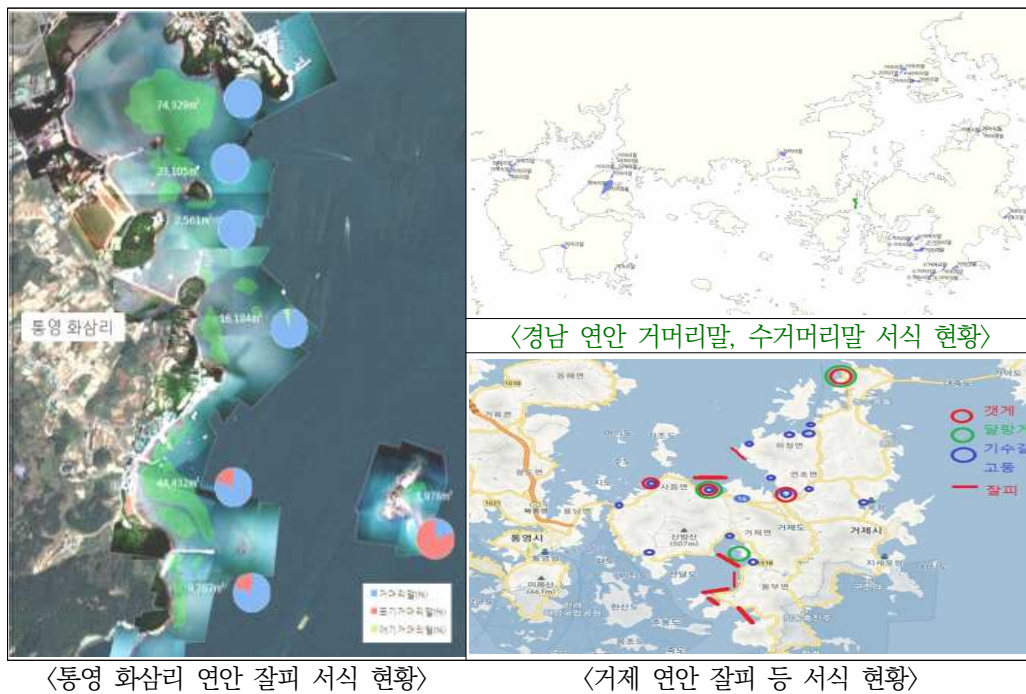
〈그림 2-1〉 남해안 일부해역의 조간대 및 조하대 Taxonomic distinctness index(Δ+) 현황 (법정자료 및 해역이용협의 취합자료)



자료: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2016), 해역이용협의 자료(2014-2017)

- 경남 일부 연안에는 거머리말, 수거머리말, 애기거머리말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 또는 산란장으로 기능하는 잘피가 넓게 분포함

〈그림 2-2〉 경남 연안 잘피 서식 현황



자료 : KOEM, 2017,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2017 긴급조사; 한국수산자원공단 거머리말, 수거머리말 서식 조사 자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현장조사 자료

7) 해양수질 현황

- 경남 해역의 해양환경측정망 해수수질평가지수(WQI²⁾)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진해만 중앙부, 마산내만 해역 등 일부 구역은 수질 등급이 저조
 - 경남 해역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격자별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³⁾ 농도는 표층 0.85~3.69 mg/L, 저층 0.74~2.25 mg/L, 용존산소(이하 “DO”)⁴⁾ 농도는 표층 8.00~10.85 mg/L, 저층 6.67~9.25 mg/L, 총질소(이하 “TN”)⁵⁾ 농도는 표층 0.194~0.546 mg/L, 저층 0.210~0.513 mg/L, ⁶⁾총인(이하 “TP”) 농도는 표층 0.016~0.069 mg/L, 저층 0.020~0.061 mg/L의 범위를 보임
 - 경남 해역의 WQI는 전반적으로 I~II 등급으로 양호하나, 진해만 중앙부, 마산내만 해역에서 III~IV 등급으로 다소 좋지 않은 수질등급을 보임
 - 마산만, 진해만에서 COD 2 mg/L 이상, TN 0.4 mg/L 이상의 높은 값을 보임
 - 마산내만에서 TP 0.05 mg/L 이상의 높은 값을 보임
 - DO는 진해만 중앙부 저층에서 7 mg/L 미만의 낮은 값을 보임
 - 경남 해역의 전체적인 수질환경 현황을 요약하면 과거 10년 간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양식장이 밀집되어 있는 진해만 중앙부, 해수유통이 좋지 않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마산내만의 수질이 다소 떨어지며, 항만 내측의 수질환경도 외해에 비해 좋지 않음

2) 해수수질평가지수(Water Quality Index)는 우리나라 종합적인 해역수질상태를 알기 위해 해역을 해류, 조석, 탁도, 수심 등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의 생태구(동해, 대한해협, 서남해역, 서해중부, 제주 생태구)로 구분하고 부영양화의 원인항목(용존 무기질소(DIN), 용존 무기인(DIP)과 일차반응항목(클로로필(Chl-a), 투명도(SD))과 이차반응항목(저층 용존산소 포화도(DO))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으로 계산

※ 생태계기반 해수수질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10호)

등급	수질평가지수(Water Quality Index)
I(매우 좋음)	23 이하
II(좋음)	24 ~ 33
III(보통)	34 ~ 46
IV(나쁨)	47 ~ 59
V(아주 나쁨)	60 이상

- 3)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 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ppm 또는 mg/l로 나타낸 것임
- 4) 용존산소(DO)는 물 속에 용해해 있는 산소량을 ppm으로 나타낸 것으로 유기물에 의하여 오염된 수역일수록 낮은 농도를 보임
- 5) 총질소(TN)는 유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및 질산성 질소 등 수중에 포함된 모든 질소화합물의 총량으로 생활하수,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과 같은 인위적인 유입에 따라 증가함
- 6) 총인(TP)은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물속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말함

〈표 2-7〉 경남 해역의 해양환경(WQI, COD, DO, TN, TP) 현황

Grid*	측정망 정점	WQI		COD		DO		TN		TP	
		점수	등급	(mg/L)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59036	여수연안02	20	I	1.13	1.09	8.44	7.56	0.314	0.331	0.026	0.029
59037	여수연안03	20	I	1.18	1.05	8.55	7.52	0.313	0.311	0.026	0.028
59677	여수연안04	20	I	1.15	1.01	8.58	7.35	0.303	0.293	0.021	0.025
58077	광양04	23	I	1.28	1.04	8.01	7.55	0.385	0.353	0.029	0.029
58717	광양05	20	I	1.08	0.92	8.12	7.38	0.346	0.277	0.026	0.026
57761	진주만01	23	I	1.25	1.06	8.12	7.92	0.282	0.252	0.034	0.034
58399	진주만02	26	II	1.42	1.34	8.48	8.37	0.250	0.269	0.033	0.037
60002	남해도남안03	20	I	1.00	0.74	8.56	7.43	0.251	0.295	0.016	0.022
59360	남해도남안04	20	I	0.97	0.93	8.52	8.12	0.268	0.267	0.018	0.020
58082	사천H01, 01,02	20	I	1.00	1.03	8.00	7.78	0.256	0.260	0.031	0.034
58403	사천03,04	20	I	1.07	1.11	8.47	7.98	0.229	0.233	0.028	0.031
58087	고성·자란만01	20	I	1.30	1.10	8.43	8.02	0.251	0.259	0.032	0.033
58085	고성·자란만02	20	I	1.19	1.08	8.56	7.99	0.202	0.210	0.023	0.028
58405	고성·자란만03	20	I	1.03	1.08	8.39	7.92	0.211	0.237	0.022	0.028
59043	통영외안01	20	I	1.12	1.09	8.84	7.50	0.209	0.225	0.024	0.032
58726	통영외안02	20	I	0.95	1.00	8.35	7.60	0.214	0.222	0.025	0.029
59365	통영외안03	20	I	1.03	0.96	8.59	7.80	0.194	0.219	0.021	0.027
59049	통영외안 04,06	20	I	1.10	0.84	8.33	7.56	0.230	0.237	0.025	0.029
59688	통영외안05	30	II	0.97	0.79	8.39	7.34	0.201	0.250	0.023	0.031
59048	통영연안 H01	20	I	1.01	0.87	8.80	8.28	0.353	0.287	0.029	0.030
58729	통영연안 H02,02,03	20	I	1.27	1.17	8.54	8.05	0.299	0.289	0.035	0.038
58410	통영연안01	20	I	1.21	1.20	8.36	7.94	0.241	0.246	0.029	0.034
58408	통영연안04	20	I	1.18	1.08	8.59	7.98	0.230	0.232	0.024	0.030
58732	거제도남안01	20	I	1.13	1.28	8.60	7.97	0.237	0.237	0.025	0.028
59051	거제도남안02	20	I	1.04	0.99	8.32	7.87	0.236	0.248	0.024	0.028
59371	거제도남안03	20	I	0.86	0.83	8.13	7.50	0.215	0.234	0.022	0.028
59693	거제도남안04	30	II	0.85	0.82	8.08	7.25	0.207	0.249	0.021	0.032
58415	거제도동안H01, H02	20	I	1.62	1.38	8.97	7.88	0.396	0.344	0.033	0.033
58095	거제도동안01	20	I	1.47	1.13	9.05	7.80	0.288	0.237	0.023	0.024
59054	거제도동안02	20	I	0.99	1.00	8.32	7.79	0.210	0.224	0.019	0.022
59056	거제도동안03	30	II	0.96	0.92	8.21	7.04	0.207	0.254	0.018	0.029

Grid*	측정망 정점	WQI		COD		DO		TN		TP	
				(mg/L)							
		점수	등급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표층	저층
58416	거제도동안04	30	II	1.24	1.02	8.75	7.36	0.270	0.246	0.021	0.026
57456	진해01	20	I	1.35	1.05	8.73	7.55	0.262	0.266	0.026	0.030
56813	진해02, 마산02	29	II	2.16	1.63	9.69	7.59	0.362	0.360	0.036	0.039
57130	진해03	30	II	1.65	1.30	8.79	7.14	0.325	0.275	0.029	0.030
57449	진해04	26	II	1.97	1.77	8.67	7.87	0.365	0.338	0.040	0.037
58089	진해05	20	I	1.67	1.48	8.90	7.75	0.257	0.251	0.024	0.027
58093	진해06	30	II	2.07	1.72	9.43	7.03	0.384	0.310	0.041	0.038
57451	진해07,08	40	III	1.61	1.22	9.31	6.67	0.259	0.265	0.026	0.033
57770	진해09	40	III	1.63	1.37	9.20	6.71	0.239	0.265	0.024	0.035
56172	마산H01	48	IV	3.69	2.24	10.85	7.30	0.546	0.513	0.069	0.061
56492	마산01,03	42	III	3.01	2.25	9.80	7.39	0.461	0.454	0.054	0.052
56814	행암01,02	32	II	2.26	2.07	10.37	9.25	0.396	0.343	0.038	0.036
57136	신항02	23	I	1.54	1.45	8.55	8.01	0.319	0.296	0.030	0.030

주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측정 자료가 있는 정점만 활용, 신규정점 제외, *:격자번호
 자료 : 해양환경측정망 자료(2008-2017)

2. 이용·개발 및 관리 현황

1) 인구

- 경남연안의 인구는 2018년 기준 1,696천명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08%임
 - 2018년 경남연안은 전국 인구의 3.27%인 1,696천명이 거주하며, 2008년 1,710천명에 비해 0.8% 감소함
 - 경남연안 중 거제시의 인구수가 지난 10년 동안 1.53% 증가하였으나 남해군과 통영시는 각각 1.32%, 1.12% 감소하였음. 사천시, 창원시, 고성군, 하동군의 인구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경남연안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08%로 전국 연평균 인구증가율(0.46%)보다 현저히 낮음

〈표 2-8〉 경남연안 인구 수(명)

(단위 : 천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인구 증가율	
전국	49,540	49,773	50,516	50,734	50,948	51,141	51,328	51,529	51,696	51,779	51,826	0.46	
연안인구	12,066	12,172	13,424	13,533	13,795	13,896	13,983	14,108	14,203	14,294	14,407	1.94	
경상남도	3,225	3,250	3,291	3,309	3,319	3,334	3,350	3,365	3,374	3,380	3,374	0.46	
경남연안	1,710	1,715	1,731	1,740	1,739	1,736	1,731	1,732	1,724	1,709	1,696	-0.08	
경남	거제시	217	226	228	233	237	242	248	256	257	254	251	1.53
	고성군	56	57	57	57	57	56	56	55	55	54	53	-0.48
	남해군	51	50	49	50	48	47	47	46	45	45	44	-1.32
	사천시	113	113	114	114	115	117	116	115	115	114	114	0.09
	창원시	1,083	1,080	1,090	1,092	1,091	1,084	1,075	1,070	1,064	1,057	1,054	-0.27
	통영시	136	137	140	140	139	140	139	139	138	136	134	-0.19
	하동군	54	52	52	54	51	50	49	50	50	49	48	-1.12
경남연안/전국	3.45	3.45	3.43	3.43	3.41	3.39	3.37	3.36	3.33	3.30	3.27		

자료 : 통계청, 2019

〈그림 2-3〉 경남연안 인구수 변화



자료 : 통계청, 2019

2) 사업체수

□ 경남연안의 사업체 수는 2017년 기준 135,837개로 전국 사업체 수의 3%를 차지

○ 전국 대비 경남연안의 산업별 비율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4.3%)을 보였으며, 광업에서 가장 낮은 비율(1.1%)을 나타냄

* 도소매업 25.4%, 숙박·음식점업 18.6%, 제조업 10.8%, 운수업 9.6%, 기타 35.4%

○ 2007년에 비해 2017년의 사업체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또한 전국의 사업체 수에 대한 경남연안의 각 산업별 비율은 지난 10년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 지난 10년간 창원시, 거제시의 사업체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표 2-9〉 경남연안 사업체수

(단위 : 개)

구분	전 산업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2007	2017	2007	2017	2007	2017	2007	2017	2007	2017	2007	2017	2007	2017	2007	2017	
전국	3,262,925	4,019,872	2,263	3,880	1,778	2,001	332,617	433,684	867,784	1,022,739	338,812	386,919	623,064	747,577	1,096,607	1,423,072	
경상남도	216,280	274,490	197	336	63	89	25,663	36,668	53,912	65,162	17,557	20,856	48,207	59,762	70,681	91,617	
경남연안	112,561	135,837	65	99	17	22	10,316	13,814	28,898	33,194	9,233	9,842	26,547	32,312	37,485	46,554	
경남	거제시	11,901	15,765	8	3	0	1	710	853	2,768	3,444	701	872	3,702	5,131	4,012	5,461
	고성군	3,736	4,541	12	17	3	0	412	557	961	1,082	212	284	911	1,062	1,225	1,539
	남해군	3,825	4,569	10	25	0	1	234	307	1,000	978	256	250	1,190	1,652	1,135	1,356
	사천시	8,146	9,944	17	20	3	1	738	990	2,510	2,832	577	616	1,827	2,258	2,474	3,227
	창원시	72,095	85,745	4	19	4	12	7,327	10,128	17,949	20,769	6,576	6,916	15,585	17,820	24,650	30,081
	통영시	9,245	11,345	2	0	0	1	580	601	2,711	3,030	744	772	2,364	3,359	2,844	3,582
	하동군	3,613	3,928	12	15	7	6	315	378	999	1,059	167	132	968	1,030	1,145	1,308
경남연안/전국	3.4	3.4	2.9	2.6	1.0	1.1	3.1	3.2	3.3	3.2	2.7	2.5	4.3	4.3	3.4	3.3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7, 2017) 경상남도 경상남도사업체조사(2007, 2017)

3) 수산

□ 2020년 기준 경남 어업생산량은 596,842톤으로 전국 생산량(3,274,406톤)의 18.2%를 차지⁷⁾

○ 경남 어업생산량 중 천해양식어업이 63.3%(377,652톤), 일반해면어업이 36.1%(215,529톤)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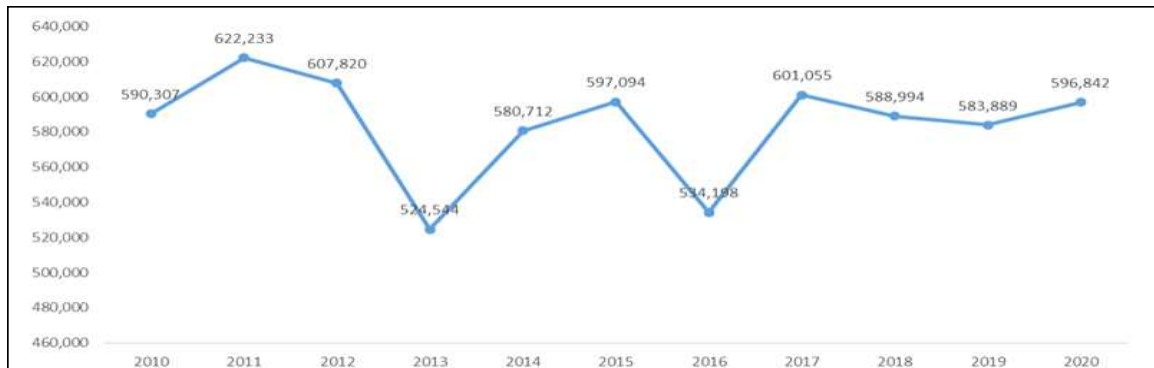
□ 경남 멸치 어업생산량은 124,249톤으로 일반해면어업 어업생산량(215,529톤)의 약 57.6%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전갱이, 갈치, 붕장어, 삼치 순임.

○ 경남 일반해면어업의 어업방식별 어업 생산량은 기선권현망*이 46.9%로 가장 많으며, 이외에 정치망 7.7%,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6.6%, 연안자망 6.5%, 쌍끌이대형저인망 5% 등임.

* 기선권현망은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업 중 규모가 큰 선단으로 구성(40톤급 본선 2척, 어탐선, 가공선, 운반선)

〈그림 2-4〉 경남 어업생산량 변화

(단위: 톤)



주 : 일반해면어업, 천해양식어업, 내수면어업의 생산량의 합

자료 : 수산정보포털 내 어업생산통계(<https://www.fip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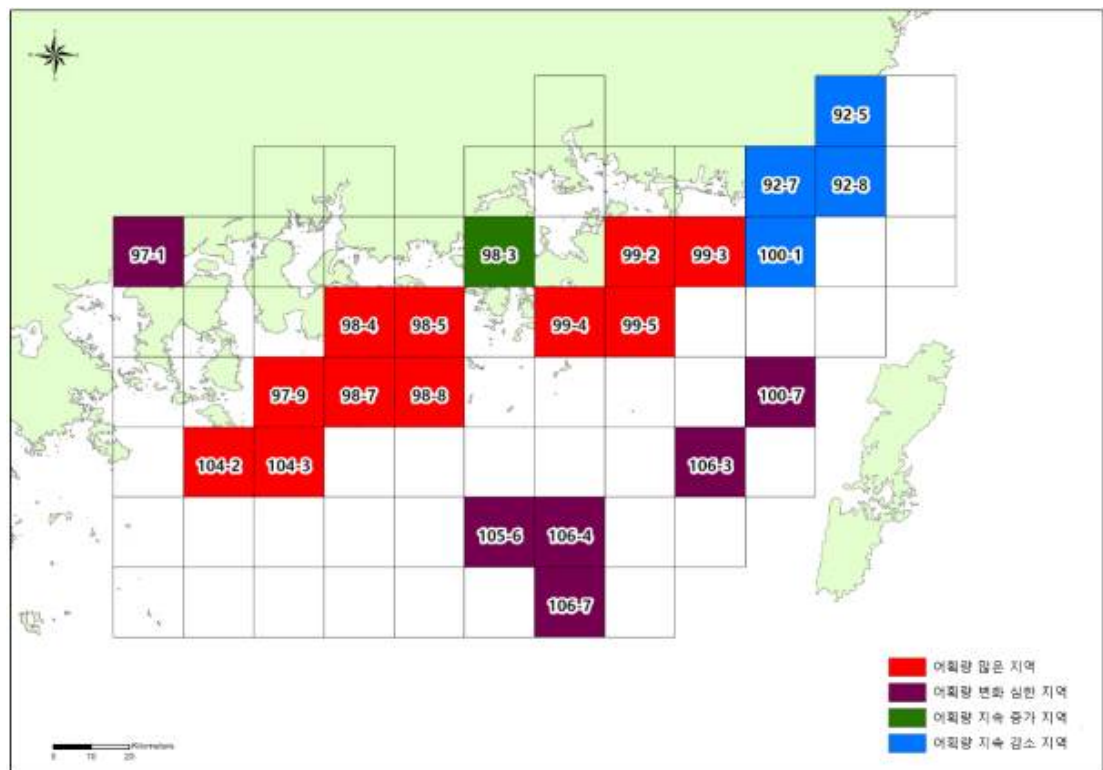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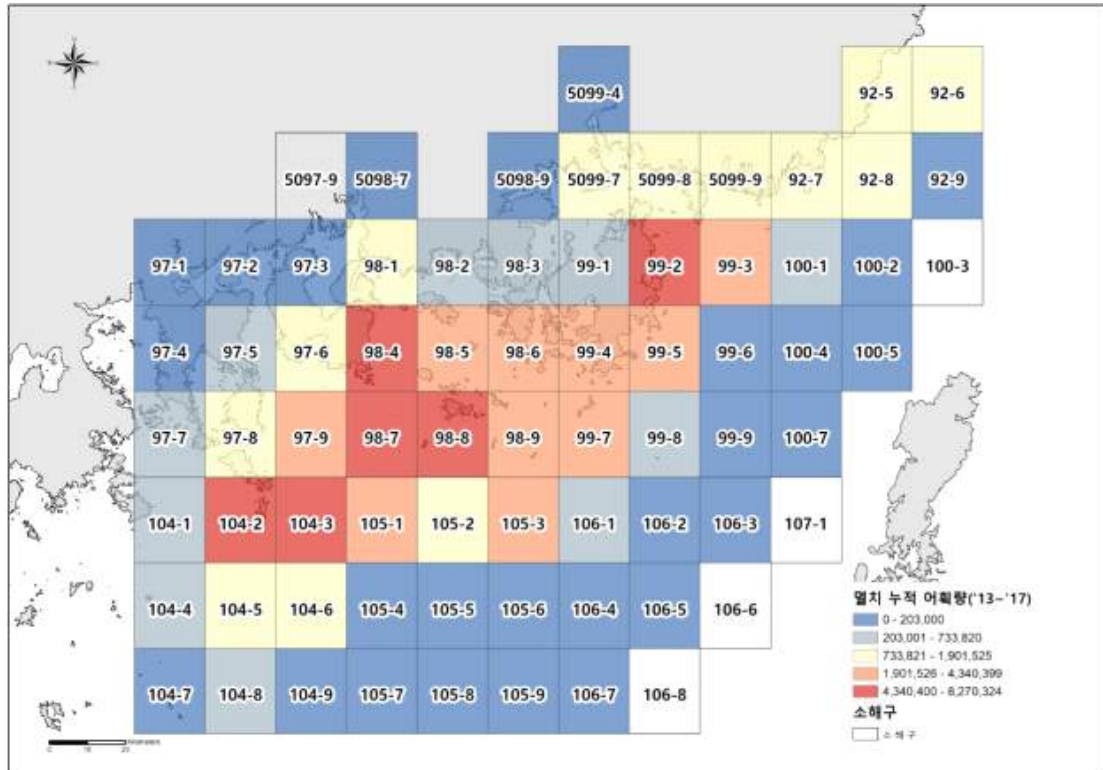
○ 수협이 소해구별 연근해 어획실적 보고자료*를 기반으로 지난 5년간('13~'17) 멸치 어획량 분포와 시계열 변화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이 자료는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연근해어선의 선장이 조업일마다 해구별, 어종별 어획량을 연근해어업보고서에 기록한 데이터임.

- 경남 해역 중에서도 남해, 통영, 거제 해역에 멸치 생산이 집중(〈그림 2-4〉 상단 참고).
- 특히, 99-2, 99-3, 98-4, 98-5, 99-4, 99-5, 97-9, 98-7, 98-8, 104-2, 104-3 소해구는 꾸준히 멸치 어획량이 높음(〈그림 2-4〉 하단 참고).

7) 해양수산부, 2020, 수산포털 내 어업생산통계(<https://www.fips.go.kr/>)

〈그림 2-5〉 멸치 어획량 분포 및 집중 해역('13~'17)



자료 :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해당년도, 연근해 어획실적 정보

□ 경남연안의 어업권 중 마을어업이 가장 많은 면적(54.2%)을 차지

○ 경남연안에 발급된 면허어업권의 개수는 2,838개, 총 면적은 25,440ha이며, 이중 마을어업이 가장 많은 면적(54.2%)을 차지함

* 마을어업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일정한 수심이내의 패류·해조류·정착성 수산 동물을 관리하여 포획

○ 패류양식(34.1%), 어류양식(9.1%)이 마을어업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표 2-10〉 경남연안 면허어업현황(면적)

(단위 : ha, %)

구분	마을	어류양식	해조류양식	패류양식	복합양식	협동양식	합계	비율(%)
경남	창원시	1,056.3	290.4	0.0	588.7	0.0	1,992.3	7.8
	거제시	2,657.1	180.4	20.0	1,090.6	2.1	4,126.7	16.2
	고성군	1,596.1	394.8	0.0	1,688.6	5.0	3,684.5	14.5
	남해군	5,781.8	770.1	0.0	1,609.2	13.0	8,174.1	32.1
	하동군	640.3	16.5	0.0	148.9	0.0	805.7	3.2
	통영시	0.0	647.1	263.6	3,163.5	38.5	4,112.6	16.2
	사천시	2,064.0	13.1	0.0	397.6	0.0	2,544.3	10.0
합계	13,795.6	2,312.5	283.6	8,687.1	58.5	25,440.3		
비율(%)	54.2	9.1	1.1	34.1	0.2	1.2	100.0	

자료 : 지자체, 2018

○ 건수와 면적을 기준으로 전국과 비교한 결과, 천해양식어업권 건수는 전국, 경남 모두 증가 추세

〈그림 2-6〉 어업권 현황 비교

(단위 : 건, ha)



주 : 마을어업을 포함한 어업권 현황
 자료 : 통계청, 2018, 천해양식어업권통계

□ 국가어항 19개소를 포함한 567개의 어항이 경남연안에 지정

- 경남연안에는 국가어항 19개소를 비롯하여 지방어항 68개소, 어촌정주어항 337개 및 소규모 어항 143개 등 총 567개 어항이 지정되어있음
 - 통영시에 167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거제시 117개소, 남해군 111개소, 고성군 66개소 순임

〈표 2-11〉 경남연안 어항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어항	합계	비율(%)
	연안	도서	소계					
거제시	6	0	6	20	80	11	117	20.6
고성군	2	0	2	4	58	2	66	11.6
남해군	2	0	2	15	94	-	111	19.6
사천시	0	1	1	4	40	0	45	7.9
창원시	2	0	2	5	6	34	47	8.3
통영시	1	4	5	17	49	96	167	29.5
하동군	1	0	1	3	10	-	14	2.5
합계	14 2.4%	5 0.9%	19 3.2%	68 11.6%	337 57.5%	143 24.4%	567 100%	100

자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수산·해양환경통계, 2018

- 경남 남해군 설리항은 `19년 어촌뉴딜300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해양 레포츠 계류시설, 요트 계류시설 건설 등 해양레저형 어항 조성을 위한 사업을 `21년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임

□ 경남연안에는 총 12,178개(35,72km²)의 인공어초 시설이 설치

- 인공어초 시설은 남해군에 가장 많은 시설이 설치되었고(5,047개, 10.78km²), 거제시와 통영시 순임.
- 또한 고성군을 제외한 6개 지자체에서 인공어초 사후관리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총 84,95억의 예산이 소요

〈표 2-12〉 경남연안 인공어초 설치현황

(단위 :개, ha, 백만원)

구분		인공어초 설치			인공어초 사후관리 사업	
		설치량	설치면적	설치비	사업량	사업비
경남	거제시	3,773	1,001	7,560	412	534
	고성군	598	51	1,067	-	-
	남해군	5,047	1,078	8,878	622	3,158
	사천시	1,186	64	1,747	4	196
	창원시	207	210	2,185	429	75
	통영시	1,333	932	5,805	814	3,897
	하동군	34	236	1,837	41	635
합계		12,178	3,572	29,079	2,322	8,495

자료 : 경상남도·해당 기초지자체, 2018, 지자체 내부자료

- 경남연안 수산자원보호구역 4개소(진동만, 한산만, 남해-통영1, 남해-통영2), 수산자원관리수면6개소, 수산자원보호수면 4개소 지정

〈표 2-13〉 경남 해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단위 : km²)

구분		대상 읍, 면	지정면적		
			계(A+B)	수면(A)	토지(B)
진동만 한산만 남해-통영1 남해-통영2	거제시	동부면 등 7개 면	193.216	153.045	40.171
	고성군	고성읍 등 5개 읍면	166.269	141.650	24.619
	남해군	남해읍 등 7개 읍면	201.959	198.605	3.354
	사천시	서포면	53.476	43.650	9.826
	창원시	구산진동-진전면	104.956	93.850	11.106
	통영시	산양읍 등 7개 읍면	476.819	452.629	24.190
	하동군	진교면 등 2개 면	11.037	9.981	1.056
합계		32개	1,207.732	1,093.41	114.322

자료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 (18년 말 기준)

〈표 2-14〉 경남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현황

(단위 : ha)

위치	개소	면적	지정사유	비고
경남 통영시 삼덕리-미남리 해역 일원 지선	1	1,460	바다목장	최초지정(5년)/ 재지정(3년)
경남 통영시 비진권 연안바다 목장 해역 일원 지선	5	80	바다목장	최초지정
6개소		1,540		

자료 : 해양수산부, 2018년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2018, pp. 31-33.

〈표 2-15〉 경남 해수면 수산자원보호수면 지정 현황

'17년 12월 기준 (단위 : ha)

구분	위치	면적	지정목적
통영시	통영시 산양읍 곤리, 저림리, 연화리	539.6	수산자원 보호(바다목장/불락, 조피불락,전복, 참돔, 감성돔)

자료 : 해양수산부, 2018년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2018, p.34.

□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바다목장 조성 확대 및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연장

- '통영 바다목장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보호수면 540ha, 수산자원관리수면 1,460ha)

〈그림 2-7〉 수산자원관리수면 위치도



자료 : 경상남도, 통영 바다목장 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 연장 보도자료, 2018.04.23.

- 남해군은 남면 평산 해역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투입하여 패조류용 어초 설치, 해조류 보식 및 구제 동물 제거, 방류사업, 독살시설, 경제성 분석, 어획조사 및 잠수 조사 사업을 추진⁸⁾
 - 거제시 사등면 가조도(계도) 주변해역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100ha 규모의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⁹⁾
 - 통영시(3개), 거제시(3개), 남해군(4개) 등 3개 시·군 10개 해역 58ha에 어류용, 패조류용 어초 설치, 통영시와 남해군 2개 해역 16ha의 해역에 인공어초 보강사업을 실시¹⁰⁾
- 국가별 위생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이 5개소 분포
- 전국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7개소) 중 5개소가 경남 해역에 지정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25,849ha임.

〈표 2-16〉 경남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현황

‘18년 기준 (단위 : ha)

구분	위치	면적
1호해역(한산~거제만)	거제시~통영시	2,050
제2호해역(자란~사랑해역)	고성군, 통영시	9,492
제3호해역(산양해역)	통영시 산양읍	3,107
제6호해역(창선해역)	고성군 하이면, 사천시 삼천포항, 남해군 창선면, 통영시 사랑면	5,910
제7호해역(강진만해역)	사천시 서포면, 하동군 금남면, 남해군 고현면, 남해읍, 삼동면, 창선면	5,290
5개소		25,849

자료 : 해양수산부, 2013, 지정해역의 지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3-153호)

4) 바다골재 및 광업권

- 경남 계획수립 대상공간에 총 10개 광구에 대하여 광업권, 탐사권, 채굴권이 등록되어 있음
- 이 중 채굴권이 등록된 광구는 거제시에 2개, 통영시에 2개, 경남 창원시 진해에 1개 분포하며, 해당 면적은 1,075ha임

8) 남해군 2018년 주요업무계획

9) 거제시 2018년 주요업무계획

10) 경상남도 보도자료(2018.01.17.)

〈표 2-17〉 경남연안 광업권·탐사권·채굴권 설정 현황

구분	지적명	지적호수	등록번호	면적(ha)	존속기간	소재지	비고
채굴권	거제	082	100381	272	2017.11.04. ~2037.11.03.	경남 거제시 하청면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거제	083	100382	206	2017.11.04. ~2037.11.03.	경남 거제시 하청면	금광, 은광, 동광, 연광, 아연광
	부산	041	100485	268	2018.7.14. ~2038.7.13.	경남 통영시 산양읍	보크사이트
	충무	085	100370	61	2017.10.14. ~2037.10.13.	경남 통영시 노산면	고령토
	진해	015	062483	268	2014.3.01. ~2034.2.28.	경남 진해	고령토, 납석
	소계			5개	1,075		
광업권	충무	115	079531	276	2011.05.21. ~2031.05.20.	경남 고성군 삼산면	금, 은
	충무	125	079532	267	2011.05.21. ~2031.05.20.	경남 고성군 삼산면	금, 은, 동
	진동	025	079529	281	2011.05.21. ~2031.05.2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금, 은, 동, 아연
	가덕	125	074748	100	2005.6.30. ~2025.6.29	경남 진해	고령토
	소계			4개	924		
탐사권	진해	094	200527	70	2015.7.8. ~2022.7.7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고령토
	소계			1개	70		
합계			10개	2069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 2019

5) 해양관광

- 경남연안에는 29개 해수욕장이 운영 중으로 이 중 거제시에 가장 많은 해수욕장이 분포(17개)
 - 경남연안의 해수욕장 중 2018년 개장된 창원시 광암 해수욕장을 제외한 28개 해수욕장의 2017년 방문객은 총 756천명임
 - 2017년 방문객 수는 거제시, 남해군 각각 340,778명, 335,775명으로 비슷한 수준임

〈표 2-18〉 경남연안 해수욕장 2017년 방문객 수

구분	관광지	2017년 방문객수(명)	운영방식	
경남	거제시	구영, 구조라, 농소, 덕원, 덕포, 망치해변, 명사, 물안, 사곡, 여차해변, 옥계, 와현모래숲해변, 죽림, 학동흑진주몽돌해변, 함목해변, 황포, 흥남	340,778	위탁
	남해군	두곡월포, 사촌, 상주은모래비치, 설리, 송정솔바람해변	335,775	직영/번영회 위탁
	창원시	광암	2018년 개장	직영
	통영시	비진도, 사랑대항, 통영공설, 옥지 덕동, 한산	44,378	위탁
	사천시	남일대 해수욕장	35,305	
합계	29개	756,236		

자료 : 지자체, 2018

- 해수욕장 외 연안·해양 관광지 15개소에 3,597천명 방문
 - 29개 해수욕장 외 연안·해양관광지, 마리나 항만, 어촌체험마을, 해안누리길 등 다양한 해양관광·레저 시설이 존재하며, 경남연안 연안·해양 관광지 15개소에 2017년 기준 총 3,597천명 방문
 - 경남 연안 및 해양관광지 중 통영시에 위치한 이순신공원이 2017년 기준 704천명으로 가장 많으며 통영시 사랑도, 창원시 진해해양공원 순

〈표 2-19〉 경남연안 연안 및 해양 관광객 현황

구분		관광지	2017년 관광객수	
경남	거제시	거제씨월드 조선해양문화관 해금강, 외도	171,544 260,209 949,450	1,381,203
	창원시	마산해양레포츠센터 진해해양공원 진해해양레포츠센터	2,468 413,264 7,471	
	하동군	대도어촌체험마을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3,001 1,274	4,275
	통영시	사랑도 소매물도 연대도, 만지도 욕지도 이순신공원 장사도해상공원 통영유람선터미널 한산도 제승당	629,318 123,806 197,435 318,143 704,234 290,033 240,449 234,159	
합계		16개	4,546,258	

자료 : 경상남도·해당 기초지자체, 2018, 지자체 내부자료

□ 경남 거제 연안에는 해중문화시설구로 지정된 수중테마공원이 2개소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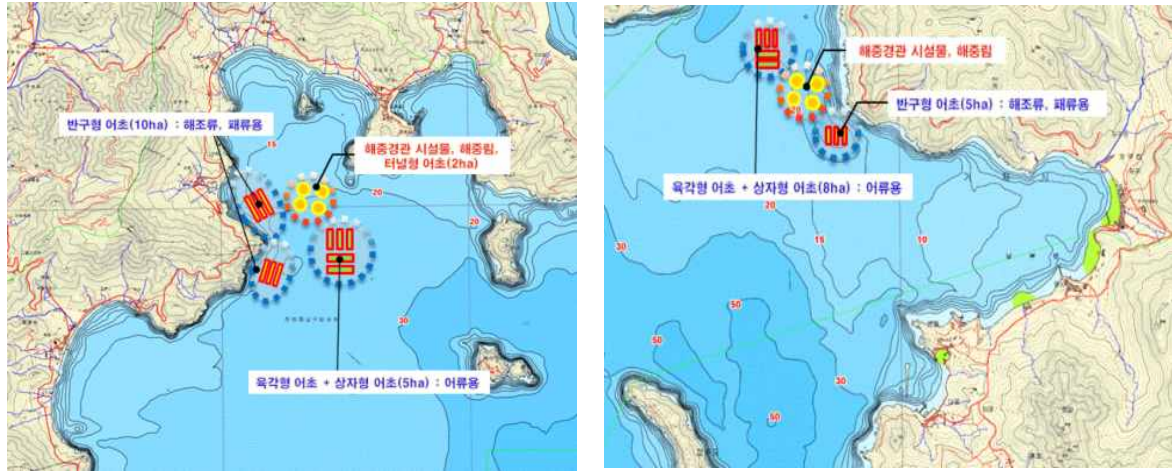
- 거제시 구조라리 양화 및 남부면 저구리 일원에 수중테마공원 2개소 분포하고 있으며, 시설면적은 총 0.23km²이며, 해중문화시설구로 지정된 해역의 면적은 5.82km² 임.
- 수중테마공원의 조성은 해중생태계의 보호 및 해중경관자원의 조성에 따른 지속가능한 해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함

〈표 2-20〉 경남 거제시 수중테마공원 개발계획

구분	위치	시설계획		규모	사업기간
수중테마공원	거제시 양화	시설물 (10ha)	연안어초	150개	단기 2013~2016 중기 2016~2018
			대수심어	30개	
			PPT 및 자연석	50개	
		해조류 및 경관시설	해중림	2ha	
	경관시설물		18개		
	거제시 저구	시설물 (13ha)	연안어초	100개	단기 2013~2016 중기 2016~2018
			대수심어	30개	
			PPT 및 자연석	25개	
해조류 및 경관시설		해중림	1ha		
	경관시설물	14개			

자료 : 거제시, 거제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2016, p.255.

〈그림 2-8〉 수중테마공원 배치계획도



〈 양화 〉

〈 저구 〉

자료 : 거제시, 거제시 제2차 연안관리 지역계획, 2016, p. 256.

□ 경남연안에는 마리나항만구역 2개소, 마니라항만 예정구역 9개소 분포

- 마리나항만구역은 충무, 진해명동 2곳이며, 삼천포, 지세포, 물건 마리나 시설이 운영 중
-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에 반영되어 있는 곳은 하동, 삼천포, 당항포, 충무¹¹⁾, 신전항, 근포, 지세포, 동환, 대동 등 9곳임.

〈표 2-21〉 경남연안 마리나항만 개발 및 예정구역

마리나 항만	위치	예정면적(육·해상포함, m ²)	단계	규모(척)	비고
충무	통영시	40,000m ²	완료	60	운영/기본계획
진해명동(거점형)	창원시	110,400m ²	설계 중	300	기본계획
삼천포	창원시	-	-	-	운영/기본계획
지세포	거제시	135,246m ²	예정	170	운영/기본계획
당항포	고성군	28,545m ²	개발 중	100	운영/기본계획
동환	창원시	-	-	-	기본계획
신전항	통영시	-	-	-	기본계획
대동	김해시	-	-	-	기본계획
하동	하동군	40,000m ² (해상 15,250m ² , 육상 24,750m ²)	예정	100	기본계획
대포근포	거제시	80,000m ²	개발 중	104	기본계획
사천요트	사천시	해상 738m ² , 육상 175m ²	완료	-	운영(지자체 자료)
물건	남해군	-	-	-	운영
12개		435,104m ²		834	

자료 : 경상남도·해당 기초지자체, 2018, 지자체 내부자료;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20~2029)

11) 충무는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으나, 추가개발예정이므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에 포함

□ 경남연안 어촌체험마을은 총 27개소

○ 2001년 이후 남해군 8개소, 거제시 7개소 등 총 27개소의 어촌체험마을 운영

〈표 2-22〉 경남연안 어촌체험마을 현황

구분	마을명	주소	선정연도	체험 종류
창원시	고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미더덕로 358-163	2014	종합안내소, 해상콘도2동
거제시	탑포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 462-1		숙박시설, 주차장, 해상콘도
	산달도	거제시 거제면 산달1길 11		숙박시설, 체험실, 캠핑시설
	계도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 837	2006	숙박시설, 해상콘도, 안내센터
	쌍근	거제시 남부면 남부해안로 1094	2007	숙박시설, 안내센터, 갯벌
	이수도	거제시 장목면 이수도길 10	2008	숙박시설, 해상콘도, 파고라
	도장포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로 100	2004	파고라, 체험시설
	다대	거제시 남부면 다대5길 11	2013	숙박시설, 갯벌체험장
고성군	하일면	고성군 하일면 동화1길 203	2015	종합안내소, 해상펜션, 전망대정자등
남해군	지족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죽방로 24	2001	갯벌체험, 바다낚시체험, 죽방렴체험
	문항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206번길 54-19	2002	갯벌체험, 진심 모세현상, 석방렴체험, 개막이체험, 화바리
	냉천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790-4	2003	쏙잡기체험, 해산물채취체험, 해안산책로 체험, 유람선승선
	은점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942번길 34-9	2006	통발체험, 글돌세기, 후릿그물체험, 레저체험
	유포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2381번길 60	2007	갯벌체험, 개막이체험, 후릿그물체험
	항도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동부대로 310번길 32-8	2008	조개잡이체험, 맨손고기잡이, 문어단지체험, 후릿그물체험
	이어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 3100번길 65	2013	조개잡이체험, 석방렴체험, 통발체험
	설리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303번길 75-12	2014	해녀체험, 수상레저, 배낚시체험
하동군	대도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 177-5(대도길 43)	2005	어촌체험마을 관광안내소
통영시	유동	경남 통영시 욕지면 유동길 108	2004	종합안내소, 생태체험장, 해안산책로 등
	연명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명길 134	2006	종합안내소, 체험교육장 등
	궁항	경남 통영시 산양읍 궁항길 44	2007	종합안내소, 바지락체험장, 체력단련장 등
	예곡	경남 통영시 한산면 추봉로 375	2014	종합안내소, 야영장, 체력단련장 등
사천시	대포	경상남도 사천시 대포동	2007	관리선, 테마수상가옥, 선박계류장
	다맥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2005	종합관광안내소, 주차장, 산책로, 표지판 등
합계	27			

자료 : 경상남도·해당 기초지자체, 2018, 지자체 내부자료; 해양수산부, 2018. 해수부 내부자료

□ 경남연안에는 총 87개소의 유어장이 있으며 연간 223천명이 이용

○ 남해군에 유어장이 많이 분포하며 수익이 높은 곳은 거제시와 남해군 등임.

〈표 2-23〉 경남연안 유어장 현황

구분	유어장 수	이용객(명)	이용금액(천원)
거제시	19	56,360	1,001,581
고성군	3	6,277	103,151
남해군	29	85,856	960,240
사천시	5	54,994	523,264
창원시	18	8,250	165,000
통영시	7	744	37,200
하동군	6	10,326	182,196
합계	87	222,807	2,972,632

자료 : 경상남도·해당 기초지자체, 2018, 지자체 내부자료

□ 경남연안에는 해안누리길 11개소가 조성되었고 총연장 178km임

○ 해안누리길 11개소 중 8개소가 창원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연장은 44.2km으로 경남 해안 누리길 총연장의 24.9%를 차지하며, 남해군에 총연장이 가장 긴 해안누리길이 조성(128.5km)

〈표 2-24〉 경남연안 해안누리길 현황

구분	명칭	위치	총연장(km)	소요시간
거제시	지세포해안산책로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일원	1.35	30분
고성군	공룡화석지 해변길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하일면 맥전포항 일원	3.5	60분
남해군	남해 바래길	남해군 해안전역 10개 코스	128.5	44시간
창원시	진해바다70리길	창원시 진해구 수협 ~ 안골포 굴강	29.2	8~9시간
	수도 전망테크로드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0.094	20분
	동섬 테크로드	창원시 진해구 명동	0.091	10분
	삼귀해안도로변 산책로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귀산동	4.8	120분
	저도 비치로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산153 일원	8	180분
	구산면 파도소리길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석곡리 산183-2번지 일원	1.7	40분
	행암 테크로드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 산6-1	0.15	8분
	소죽도 테크로드	창원시진해구덕산동산2	0.2	10분
합계	11		177.585	

자료 : 경상남도·해당 기초지자체, 2018, 지자체 내부자료

6) 항만·항행

(1) 항만

□ 경남 해역에 무역항 8개소, 연안항 2개소 분포

〈표 2-25〉 경남 주변 해역 무역항·연안항 현황 (2021년)

무역항 (8개소)	연안항 (2개소)
마산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하동항	국도항, 중화항

자료 : 해양수산개발원, 2018, 해운항만통계

□ 경남 소재 무역항의 총 물동량은 2019년 기준 64백만 톤이며, 2018년에 비하여 17백만 톤 증가

○ 마산항의 물동량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하동항, 옥포항 순임

〈표 2-26〉 경남 무역항 항만별 화물량 입출량 추이¹²⁾

단위 : 1,000 RT

항만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마산항	입항	7,118	7,694	8,388	7,483	9,091	9,305	7,590	6,505	19,985
	출항	8,394	8,366	6,691	5,826	6,473	5,962	5,631	5,549	5,999
	소계	15,513	16,059	15,079	13,309	15,564	15,267	13,222	12,054	25,984
삼천포항	입항	11,761	11,914	11,919	11,340	11,272	10,867	10,326	9,546	8,163
	출항	425	270	379	413	641	461	883	655	375
	소계	12,187	12,183	12,297	11,753	11,914	11,328	11,208	10,201	8,538
통영항	입항	428	281	142	243	244	158	120	103	112
	출항	73	49	10	38	107	38	22	4	3
	소계	501	330	152	281	351	197	142	107	115
장승포항	입항	13	5	4	3	3	8	2	3	1
	출항	-	-	-	-	1	-	-	-	-
	소계	13	5	4	3	4	8	2	3	1
옥포항	입항	8,360	7,683	7,762	8,779	9,645	8,239	7,692	5,548	7,857
	출항	190	155	102	748	497	520	138	197	889
	소계	8,550	7,837	7,864	9,527	10,142	8,759	7,830	5,745	8,746
고현항	입항	4,831	10,552	8,889	6,748	7,054	9,451	6,031	4,762	7,403
	출항	377	506	483	436	554	870	393	711	1,045
	소계	5,208	11,057	9,372	7,183	7,608	10,321	6,425	5,473	8,448
진해항	입항	806	1,924	2,446	2,093	2,477	2,777	1,615	1,131	972
	출항	359	347	177	238	343	264	202	374	215
	소계	1,165	2,271	2,624	2,331	2,821	3,040	1,817	1,505	1,187
하동항	입항	13,864	13,501	13,537	12,652	12,776	12,504	12,727	11,778	10,944
	출항	46	50	22	18	846	12	-	-	-
	소계	13,911	13,551	13,559	12,670	13,621	12,517	12,728	11,778	10,944
합계		57,048	63,293	60,951	57,057	62,025	61,437	53,374	46,866	63,963

자료 : 해양수산개발원, 2020, 2020 해운통계요람; 해양수산통계시스템 전국항만 물동량

12) 국도항, 중화항 데이터 없음.

○ 경남 무역항 중 선박의 마산항 입출항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옥포항, 진해항, 고현항 순임.

〈표 2-27〉 경남 항만별 선박 입출항 현황(2018/2019)

항구		마산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연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입항	외항선	No.	1,630	1,815	168	144	514	557	1	-
		1,000GT	31,990	45,544	6,745	4,986	255	260	0	-
	연안선	No.	3,606	3,727	770	655	584	500	20	30
		1,000GT	5,962	9,962	728	517	89	81	6	15
	소계 (a)	No.	5,236	5,542	938	799	1,098	1,057	21	30
		1,000GT	37,952	55,506	7473	5,503	344	340	6	15
출항	외항선	No.	1,645	1,819	167	146	506	549	1	-
		1,000GT	32,090	45,469	6,600	5,059	262	257	0	-
	연안선	No.	3,584	3,717	767	659	582	505	21	28
		1,000GT	5,889	10,051	773	540	81	81	6	12
	소계 (b)	No.	5,229	5,536	934	805	1,088	1,054	22	28
		1,000GT	37,979	55,519	7,373	5,599	343	338	7	12
합계 (a+b)	No.	10,465	11,078	1,872	1,604	2,186	2,111	43	58	
	1,000GT	75,931	111,026	14,847	11,102	687	678	12	27	

항구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하동항		
연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입항	외항선	No.	116	158	229	358	147	146	109	93
		1,000GT	1,540	2,371	1,745	2,279	1,089	811	7,337	6,811
	연안선	No.	1,789	2,005	868	1,367	1,719	1,782	172	146
		1,000GT	2,443	2,745	1,232	2,427	2,908	2,478	188	162
	소계 (a)	No.	1,905	2,163	1,097	1,725	1,866	1,928	281	239
		1,000GT	3,982	5,116	2,977	4,707	3,997	3,289	7,525	6,972
출항	외항선	No.	148	204	248	373	152	150	109	93
		1,000GT	6,108	8,980	3,300	4,265	1,222	816	7,412	6,725
	연안선	No.	1,787	2,007	867	1,365	1,736	1,794	173	145
		1,000GT	2,431	2,741	1,246	2,366	2,947	2,497	191	159
	소계 (b)	No.	1,935	2,211	1,115	1,738	1,888	1,944	282	238
		1,000GT	8,539	11,721	4,546	6,631	4,169	3,313	7,603	6,884
합계 (a+b)	No.	3,840	4,374	2,212	3,463	3,754	3,872	563	477	
	1,000GT	12,521	16,837	7,523	11,338	8,166	6,602	15,128	13,856	

자료 : 해양수산개발원, 2020, 2020 해운통계요람

□ 컨테이너 처리 실적이 가장 높은 곳은 마산항으로 2011년 이후 처리 실적은 증가 추세

〈표 2-28〉 경남권 컨테이너 처리 실적

단위 : 천TEU

항만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마산항	66	75	46	47	149	199	206	243	169
옥포항	-	0.30	0.15	-	-	-	-	-	0.02
진해항	0.05	0.42	-	0.81	0.13	0.32	7.98	21.64	19.75
합계	66.05	75.72	46.15	47.81	149.13	199.32	213.98	264.64	188.77

자료 : 해양수산개발원, 2020, 2020 해운통계요람; 해양수산부 PORT-MIS 컨테이너 수송실적 총괄

□ 무역항 및 연안항의 비전 및 목표는 다음과 같음.

〈표 2-29〉 경남 내 무역항 및 연안항의 비전 및 목표¹³⁾

항만	비전	세부 육성 목표
무역항	마산항	권역산업지원 지원항 • 배후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원 지원
	삼천포항	화력발전소 및 어업활동 지원항 • 어민 지원기능 강화 • 삼천포 화력발전소 원료 수송 지원
	통영항	남해권 어업전진 기지 및 해양활동 거점항 • 수산물 수출입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확충 • 해양·관광거점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장승포항	지역생활 지원항 • 어업활동을 위한 지원시설 및 생활형 SOC 확충
	옥포항	조선 산업지원항 • 조선산업 지원
	고현항	조선산업 지원 및 항만-도심 상생항 • 항만내 조선산업 지원 • 항만재개발을 통한 항만-도심 활성화 기반
	진해항	지역 산업지원항 • 건설자재 및 자동차 연안 운송 처리 지원
연안항	국도항	화력발전 지원항 • 하동화력발전 연료공급 지원 항만으로 특화
	중화항	전략적 요충항 • 남해동부 영도수호 및 영해관리, 전략적 요충항만으로 육성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 마산항

○ (기본방향) 경남권 산·농·어업단지 지원 항만으로 특화

- 배후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남권 물류기지로써 경쟁력 강화
- 항만과 도시간 상생발전을 위한 청정항만 환경 조성 및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방재인프라 구축

13) 하동항 자료 없음.

〈표 2-30〉 마산항 항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 항종 : 무역항(국가관리항) • 항만구역 : 현면적 14,206천㎡ (수상 : 12,668천㎡, 육상 : 1,538천㎡) 					
안벽(m)	소형선 부두(m)	잔교(기)	방파제(m)	상옥(동)	야적장(천㎡)
6,824	1,546	5	700	1	6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안능력 : 29선석(유류 포함)/하역능력 : 19,719천RT/년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 항만 기능 재정립
 - 기업 전용부두를 외 잡화(기계류) 및 잡화성 화물(고철, 철재 등)과 모래를 처리하는 부두로 특화
 - 서항지구는 친수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특화하여 시민에게 휴식을 제공
- 항만 운영 및 관리
 - 서항지구의 해양신도시 개발사업과 연계, 친수문화공간 조성 지원
 - 모래 물동량 추세 및 여건 변화에 따른 모래부두 건설 추진 시기 조율 필요
 - 재해방지시설(플랩게이트) 설치를 추진하여 항만 및 배후지역의 안전성 제고
- 항만 환경개선
 - 미세먼지 저감 등 항만대기질 개선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AMP) 도입
 - 항내 오염물질 유입 차단 및 수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

〈그림 2-9〉 마산항 계획 평면도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 삼천포항

- (기본 방향) 화력발전소 및 어업활동 지원 항만으로 육성
 - 삼천포화력 등 발전소 연료 수송지원 및 어민 지원기능 강화
 - 어업기능 지원 및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형 SOC사업 추진

〈표 2-31〉 삼천포항 항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고성군 • 항종 : 무역항(지방관리항) • 항만구역 : 현면적 10,069천㎡ (수상 : 9,581천㎡, 육상 : 488천㎡) 					
안벽(m)	소형선 부두(m)	잔교(기)	방파제(m)	상옥(동)	야적장(천㎡)
1,999	3,004	5	2,376	-	1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안능력 : 10선석/ 하역능력 : 13,240천RT/년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 항만 기능 재정립
 - 항만 물동량 및 부두 운영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선석활용으로 부두운영 효율성 제고
- 항만 운영 및 관리
 - 발전소 연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부두시설 및 외곽시설 공급·확대
 - 신항 지역 해양공원 보도교 설치 등 지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형 SOC사업 추진
- 항만 환경개선
 - 해양오염 방지 및 항만대기질 개선

〈그림 2-10〉 삼천포항계획평면도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 통영항

- (기본 방향) 남해권 어업전진 기지 및 해양활동 거점항만으로 육성
 - 수산물 수출입 지원기능 강화 및 해양·관광거점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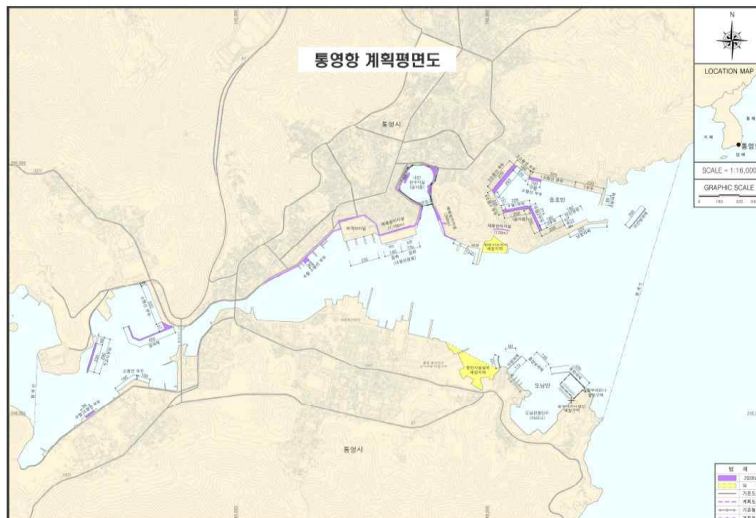
〈표 2-32〉 통영항 항만 현황

•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 항종: 무역항(지방관리항) • 항만구역 : 현면적 4,344천㎡ (수상 : 4,181천㎡, 육상 : 163천㎡)					
안벽(m)	소형선 부두(m)	잔교(기)	방파제(m)	상옥(동)	야적장(천㎡)
1,379	3,103	13	1,208	-	19
• 접안능력 : 9선석/하역능력 : 290천RT/년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 항만 기능 재정립
 - 부두별(잡화, 처리/내만 소형선, 동호만) 기능 특화
- 항만 운영 및 관리
 - 소형선 부두 확대 및 신규건설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수산물 처리 기능 강화
 - 기상악화시 재해 방지와 정온도 유지를 위한 신규방파제 건설 및 보강
 - 항만 내 친수시설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 항만 환경개선
 - 항만 내 대기 오염 및 소음 저감 시설 설치를 통한 환경 개선

〈그림 2-11〉 통영항 계획 평면도



□ 장승포항

- (기본 방향)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생활형 항만으로 조성
 - 어업활동을 위한 지원시설 및 생활형SOC확충을 통한 지역밀착형 항만으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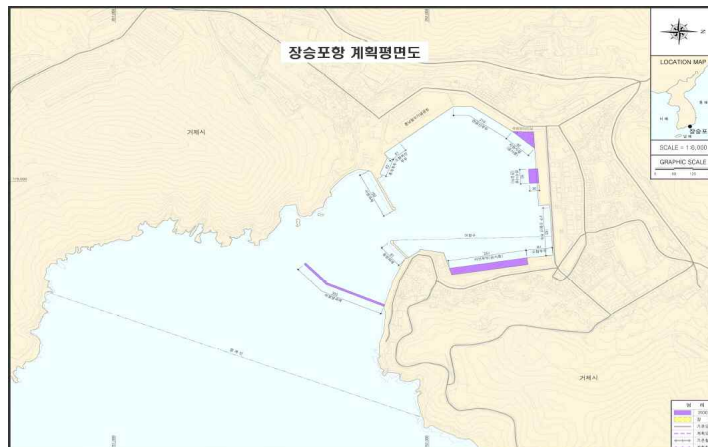
〈표 2-33〉 장승포항 항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 항종 : 무역항(지방관리항) • 항만구역 : 현면적 791천㎡ (수상 : 721천㎡, 육상 : 70천㎡) 					
안벽(m)	소형선 부두(m)	잔교(기)	방파제(m)	상옥(동)	야적장(천㎡)
-	1,203	3	248	-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안·하역능력 : 없음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 항만 기능 재정립
 - 어선부두 확충을 통해 원활한 위판 및 작업공간 확보
 - 여객부두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친수시설로 기능전환
- 항만 운영 및 관리
 - 어선부두 확장 및 방파제 신설을 통해 어업활동을 지원하고 항내 정온도 개선
 - 해양관광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친수시설(공원, 공연장)을 확충
- 항만 환경개선
 - 항내 어구 보수 및 적치 공간 정비 등으로 항만 경관 개선

〈그림 2-12〉 장승포항 계획 평면도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 옥포항

○ (기본 방향) 조선산업 지원항만으로 특화

- 조선산업 관련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조선산업 지원항만으로 경쟁력 강화

〈표 2-34〉 옥포항 항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 항종: 무역항(지방관리항) • 항만구역 : 현면적 5,884천㎡ (수상 : 5,866천㎡, 육상 : 18천㎡) 					
안벽(m)	소형선 부두(m)	잔교(기)	방파제(m)	상옥(동)	야적장(천㎡)
100	338	-	1,546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안능력 : 1선석/ 하역능력 : 1,930천RT/년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 항만 기능 재정립 : 항만 여건 변화 가능성이 낮은 상황으로 현 기능 유지

○ 항만 운영 및 관리

- 조선산업과 관련된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항만 운영 및 관리

○ 항만 환경개선

-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산업용수 및 해양오염물질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유지

〈그림 2-13〉 옥포항 계획 평면도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 고현항

- (기본 방향) 조선산업 지원 및 항만-도심 상생항만으로 육성
 - 조선산업 지원기능 강화 및 항만재개발을 통한 항만-도심 활성화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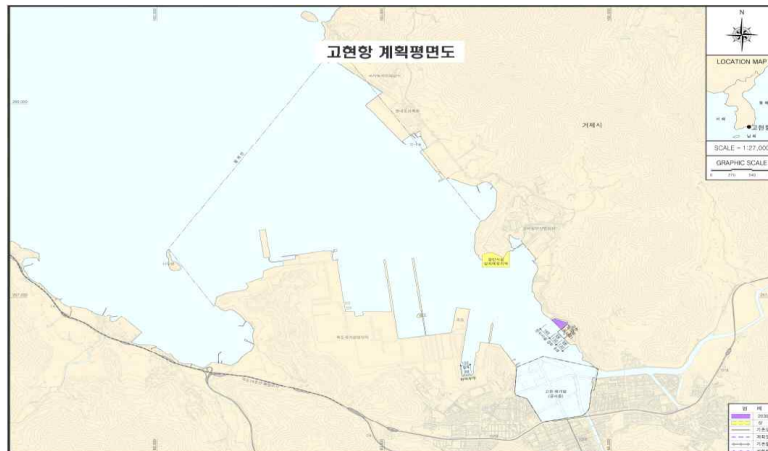
〈표 2-35〉 고현항 항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 항종: 무역항(지방관리항) • 항만구역 : 현면적 11,956천m^2 (수상 : 11,892천m^2, 육상 : 64천m^2) 					
안벽(m)	소형선 부두(m)	잔교(기)	방파제(m)	상옥(동)	야적장(천 m^2)
252	155	-	-	-	13
• 접안능력 : 2선석/하역능력 : 1,150천RT/년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 항만 기능 재정립
 - 전용부두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기능을 유지
- 항만 운영 및 관리
 - 조선산업과 관련된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항만 운영 및 관리
 - 항만재개발 사업에 의하여 개발 중인 잡화부두 확충
 - 친수시설 조성과 항만재개발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 질 개선 및 편의성 제공
- 항만 환경개선
 - 재개발 및 일반화물 처리에 따른 분진 방지를 위한 시설 확보 필요

〈그림 2-14〉 고현항 계획 평면도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 진해항

- (기본 방향) 지역산업 지원 항만으로 육성
 - 건설자재 및 자동차 연안 운송 처리 지원

〈표 2-36〉 진해항 항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 항종: 무역항(지방관리항) • 항만구역 : 현면적 8,473천m^2 (수상 : 8,260천m^2, 육상 : 213천m^2) 					
안벽(m)	소형선 부두(m)	잔교(기)	방파제(m)	상옥(동)	야적장(천 m^2)
1,293	1,194	1	420	-	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안능력 : 9선석/하역능력 : 4,530천RT/년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 항만 기능 재정립
 - 1부두는 모래부두 기능유지, 2부두는 기계류 및 차량부품의 잡화성 물동량 보조 처리
 - 속천항 어항구는 인근 어선세력 수용과 수산물 취급 편의 제공
- 항만 운영 및 관리
 - 건설자재, 자동차 등 지역산업과 관련된 처리품목의 상시 모니터링
- 항만 환경개선
 - 항만 폐기물 등 항내오염 방지를 위한 상시 관리·감독 지속

〈그림 2-15〉 진해항 계획 평면도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 국도항

- (기본 방향) 남해동부 영해관리의 전략적 요충항¹⁴⁾으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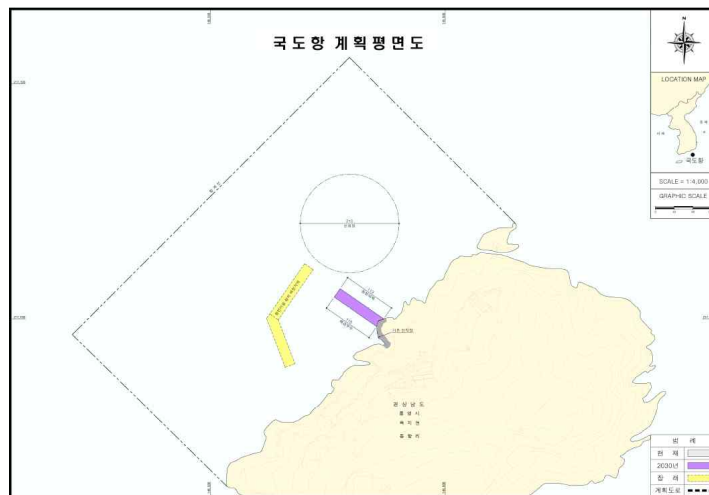
〈표 2-37〉 진해항 항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육지면 동항리 • 항종: 연안항(국가관리항) • 항만구역 : 현면적 386천㎡ (수상 : 386천㎡, 육상 : -)
선착장(m)
3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안·하역능력 : 없음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 항만 기능 재정립 : 항내정온도를 확보, 해경선이 접안할 수 있는 외곽시설 신설
- 항만 운영 및 관리
 - 시설규모 축소 및 단계적 개발을 통해 국가관리연안항 개발 정상화
 - 해경부두(1,000톤급) 1선석 우선 개발을 통한 해경함정 접안여건 확보
 - 단계별로 해경부두 2선석(3,000톤급, 500톤급)을 추가로 개발하여 영해관리 기능 강화
- 항만 환경개선
 - 체계적이고 단계적 시설 개발을 통해 해경의 원활한 해상활동 지원이 가능한 환경 제공

〈그림 2-16〉 국도항 계획 평면도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14)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2014~2020)'에 따라 해양영토 끝단에 있는 11개 국가관리 연안항을 국가안보 및 영해관리 등의 목적으로 개발계획 수립. 11개 국가관리 연안항은 핵심거점항과 전략적 요충항으로 구분하고, 국도항은 전략적 요충항만에 해당함.

□ 중화항

- (기본 방향) 남해중동부 지역 여객, 화물, 어업의 복합기능 항만으로 육성

〈표 2-38〉 중화항 항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 항종: 연안항(지방관리항) • 항만구역 : 현면적 950천㎡ (수상 : 950천㎡) 	
소형선 부두(m)	선착장(m)
153	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안·하역능력 : 없음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 항만 기능 재정립
 - 여객, 화물, 어업 복합기능 항만으로 육성지원
 - 항내정온도 확보를 위한 외곽시설 신설로 이용선박 항만시설 이용성 및 안전성 확보
- 항만 운영 및 관리
 - 항계선 축소 및 평면 재배치를 통해 어업권 보상 문제해결 및 시설 개발 촉진
 - 신규 차도선부두 및 여객터미널 개발을 통한 인근 도서와의 여객 및 화물수송 여건 제고
 - 소형선 부두 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민 어업활동 지원
- 항만 환경개선
 - 기존시설 활용 극대화 및 환경영향 최소화

〈그림 2-17〉 중화항 계획 평면도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 하동항

- (기본 방향) 하동화력발전 연료공급 지원 항만으로 특화

〈표 2-39〉 하동항 항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전면수역 • 항종: 무역항(지방관리항) • 항만구역 : 현면적 9,586천㎡ (수상 : 9,586천㎡) 					
안벽(m)	소형선 부두(m)	잔교(기)	방파제(m)	상옥(동)	야적장(천㎡)
582	120	-	-	-	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안능력 : 3선석/ 하역능력 : 10,768천RT/년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 항만 기능 재정립
 - 기존 석탄화물부두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항만이용도 제고
- 항만 운영 및 관리
 - 항로준설 및 진입도로 확대로 대형선 통항 안전성 향상과 부두의 안정적 운영 도모
- 항만 환경개선
 - 해양환경 개선 및 생태계 보전·복원을 통한 환경 친화적인 친수 공간 조성
 - 분진방지시설 및 대기오염 저감시설 추가 도입으로 항만 내 대기배출 관리 역량 강화
 - 해양폐기물 수거 등 하동항 주변해역 정화사업 지속 및 해양쓰레기 저감활동 추진
 - 발전용수의 철저한 관리로 청정해역 유지

〈그림 2-18〉 하동항 계획평면도



자료 : 해양수산부, 2020,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2) 항로

□ 경남연안에는 10개 지정항로와 1개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지정되어 있음

- 거제시, 창원시, 남해군, 고성군 등 인근 연안에는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특정해역 및 지정항로가 분포
 - 남해군 연안에는 여수광양항 출입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해사안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2, 별표4에 따라 지정된 교통안전 특정해역이 1개소(광양만 출입항로)가 존재함
 - 같은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54조 별표15에 따라 지정된 통항분리 적용수역 지정항로인 홍도 항로가 존재
 - 부산신항 건설에 따라 선박의 입출항 증가에 따라 거제시 인근 해역에 부산신항 출입항로 및 주의해역을 지정
 - 거제-삼천포를 운항하는 소형선박의 운항 안전을 위하여 거제-삼천포 내해수로 추천항로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15)에 따라 지정
 - 진해만 및 부근수역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마산항로, 진해항로, 고현항로, 원전항로, 안정항로, 장좌항로, 내산항로와 같은 연안통항로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16)에 따라 지정

〈그림 2-19〉 경남연안 항로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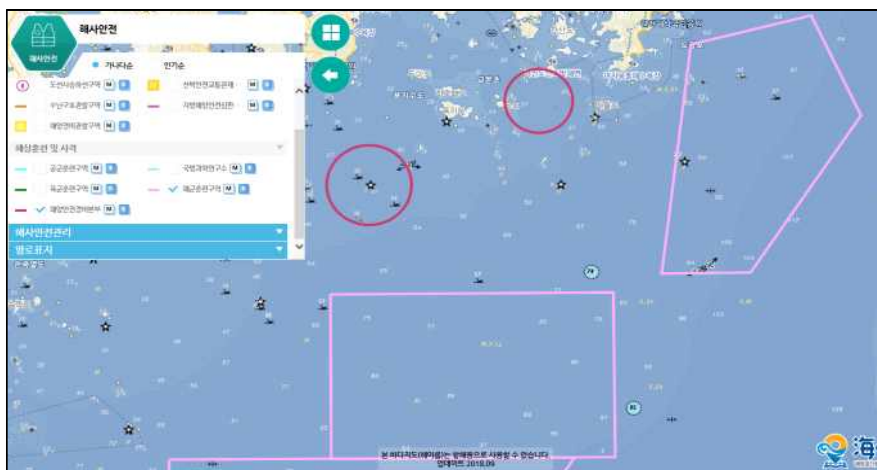
자료 : 국가해양정보마켓센터(<http://www.khoa.go.kr/komc/>) 내 항로표지 설치해역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

15)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11,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고시 2011-22호
 16) 마산지방해양수산청, 2019,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19-4호

7) 군사활동

- 경남 해역에는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상사격 훈련구역, 군사기지,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등이 존재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임.
 - 이 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됨.
 - *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 *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 국방부 진해기지 사령부 관할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창원시와 거제시 연안에 걸쳐 분포
 - 군사시설보호구역¹⁷⁾은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일대(4.5km²)에 해군기지 및 군항 보호구역을 위해 지정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임.
- 해상사격 훈련구역으로 해군 훈련구역 2개소, 해양경찰청 훈련구역 2개소 총 4개소 지정
 - 해군 훈련구역이 육지도 남방 근해와 거제도 남동연안에 각 1개소씩 지정되어 있음.
 - 해양경찰청 훈련구역이 소지도 인근에 1개소, 세존도 인근에 1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훈련 시 사용고도는 300FT 이하

〈그림 2-20〉 경남연안 해상사격 훈련구역 지정 현황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개방해(<http://www.khoa.go.kr/oceanmap>)의 해상훈련/사격구역 공간정보

1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별표 1(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

〈표 2-40〉 경남 연안 해군훈련구역 및 해양경찰청훈련구역 지정 개요

구분	사격장 명	구역 (좌표WGS-84)
해군훈련구역	R-72 대한해협 육지도남방근해 (Korea Strait ~ South of Yokjido)	아래 4개 지점 선내해면 34-18-00.0N, 128-00-00.0E 34-18-00.0N, 128-35-00.0E 34-00-00.0N, 128-35-00.0E 34-00-00.0N, 128-00-00.0E
	R-99 대한해협 거제도남동연안 (Korea Strait ~ SE of Geojedo)	아래 5개 지점 선내해면 34-45-00.0N, 128-45-00.0E 34-18-00.0N, 129-00-00.0E 34-37-00.0N, 129-06-00.0E 34-20-00.0N, 128-52-00.0E 34-20-00.0N, 128-41-00.0E
해양경찰청훈련구역	R-144 남해안 소지도부근 (Korea Strait ~ Sojido)	34-39-00.0N, 128-26-00.0E를 중심으로 반경 4마일
	R-145 남해안 세존도부근 (South Coast ~ Sejondo)	34-29-56.0N, 128-04-52.0E를 중심으로 반경 5마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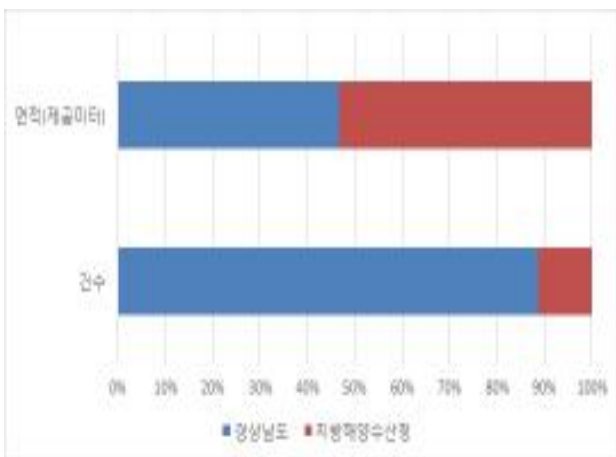
자료 : 국립해양조사원, 2018, 항행통보연보

8) 공유수면 점용·사용

□ 경남연안에서 허가된 점용·사용은 총 4,117건으로 면적은 58.35km²에 달함.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허가된 점용·사용은 총 463건으로 면적은 31.05km²로이고 경상남도에서 허가된 점용·사용은 3,654건으로 면적은 27.30km²로 대부분이 경상남도 허가해역에서 발생하였음.

〈그림 2-21〉 경남연안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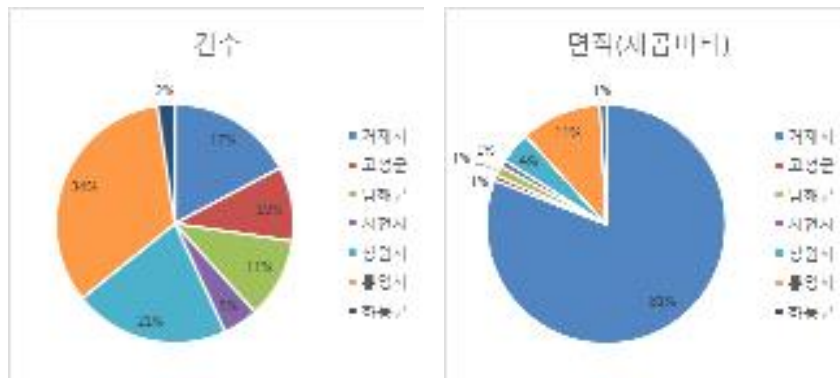


〈표 2-41〉 지역별 점용·사용 분포 현황

시군구	건수	면적(m ²)
거제시	711	47,254,602
고성군	415	425,725
남해군	451	762,544
사천시	196	560,103
창원시	871	2,490,873
통영시	1,376	6,396,903
하동군	97	458,920
총합계	4,117	58,349,672

자료 : 해양수산부, 2017년,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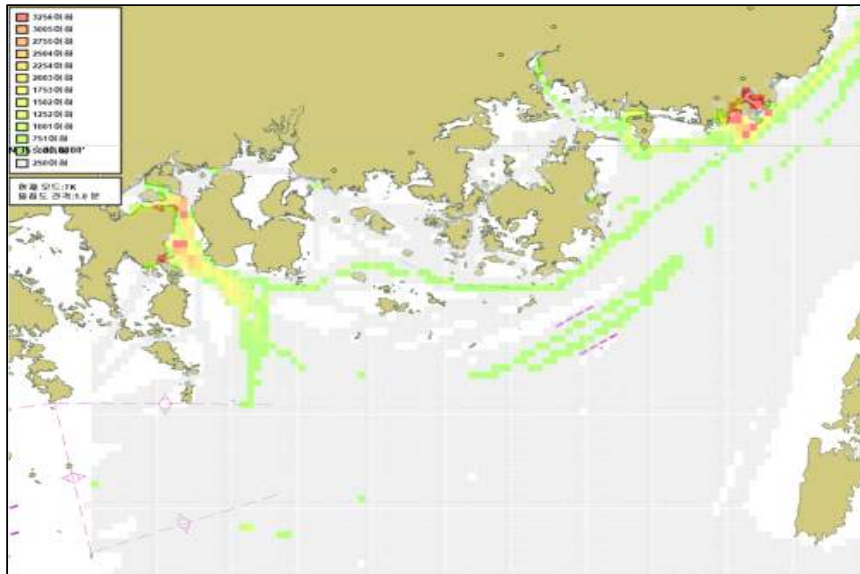
〈그림 2-22〉 지역별 점용·사용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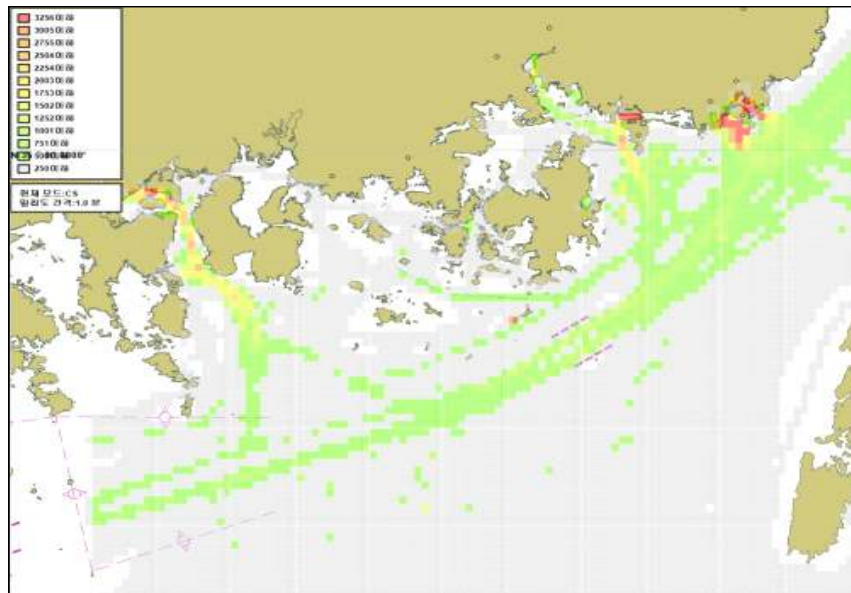
9) 안전관리

- 경남 해역에서는 어선, 화물선, 기타 선박의 통항량이 많으며, 대형선박(화물선, 탱커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에서는 소형 선박과의 사고 발생 우려
- 경남의 여객선은 주로 욕지도, 연화도, 우도와 통영을 오가며 운항하며, 이 항로는 광양항으로 향하는 화물선과 탱커선의 통항로와 일부 중첩

〈그림 2-23〉 경남 해역 화물선·탱커선 밀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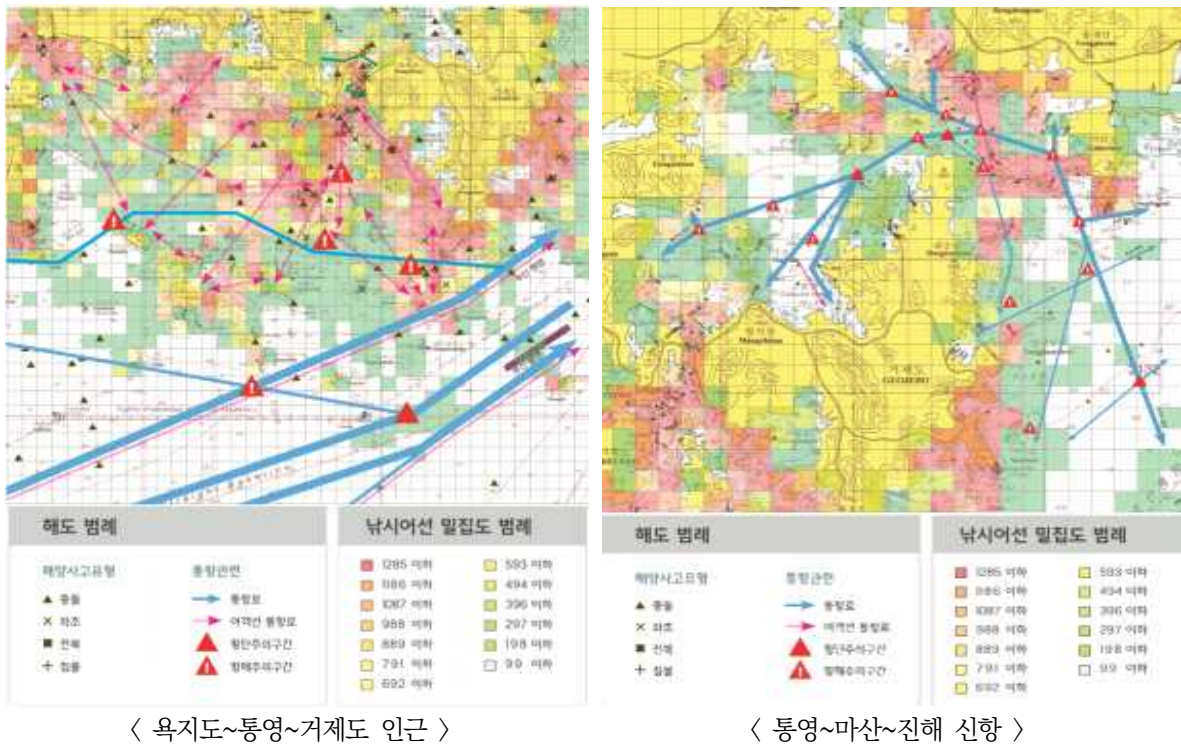
〈탱커선 밀집도〉



〈화물선 밀집도〉

- 또한, 옥지도~통영~거제 인근 및 통영~마산~진해 신항 사이에 낚시어선 밀집도가 높은 해역과 대형선박의 통항로가 중첩되는 해역이 존재

〈그림 2-24〉 경남 안전관리 필요 해역



- 해양·수상레저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및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을 지정하여 관리 중
 -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통영해양경찰서는 경남연안의 해수욕장 및 유원지 인근 해역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3개소를 지정고시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거제시 해수욕장 인근에 가장 많이 지정(총 9개소)되어 있으며, 통영시와 남해시 해수욕장 인근에 각 4개소 지정
 - 항로 및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항만 또는 어항 등 수역에서는 해양·수상레저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창원해양경찰서 및 통영해양경찰서는 일부 해역을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 통영항, 장승포항, 삼천포항, 옥포항, 고현항 등 경남지역 10개 항에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거제시에 가장 많이 분포(5개소)

〈표 2-42〉 경남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지정 현황

구분	지정대상	금지기간
통영시	(해수욕장) 도남, 비진도, 봉암, 사랑도대항	해수욕장 개장기간
거제시	(해수욕장) 죽림, 명사, 학동, 구조라, 외현, 덕포, 흥남, 농소, 물안(옆개),	해수욕장 개장기간
	(유원지) 망치마을, 사곡만	7.1~8.31
사천시	(해수욕장) 남일대	해수욕장 개장기간
남해군	(해수욕장) 사촌, 상주, 송정, 두곡·월포	해수욕장 개장기간
고성군	(재전마을) 하이면	7.1~8.31
	(유원지) 상죽암, 당항포	연중

자료 : 통영해양경찰서공고 제2017-4호

〈표 2-43〉 경남 해양레저활동 허가 대상수역 지정 현황

구분	항만명
통영시	통영항, 옥지항
거제시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외포항, 성포항,
사천시	삼천포항
남해군	미조항
하동군	노량항

자료 : 창원해양경비안전서고시 제2015-3호, 통영해양경비안전서고시 제2014-2호

3.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1) 분석 개요

(1) 분석 방법 및 절차

-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한 계획(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을 대상으로 대상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과 수요 조사
 - 국가계획 : 국토종합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 충무, 삼천포 등 마리나항만예정구역(8개소) 지정개발과 부산신항만건설,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색있는 관광섬 개발, 거점형 마리나 조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통영시 육지면 해양풍력단지 건설, 기르는어업 육성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연안바다목장조성 등이 해당함
 - 광역시 및 도 계획 : 광역시 및 도 종합계획,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등
 - 향후 5년간 법정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수요 중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사업만 선별
 - 공유수면매립, 점용사용 등을 기반으로 해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를 확인
 - 도서관광개발사업은 직접적인 이용 대상을 해양공간으로 하지는 않지만, 도서로 접근하기 위해서 해양공간을 활용하게 되므로 해양공간 이용·개발 수요로 반영
 - 다수의 계획에 중복적으로 반영된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는 가장 최근 수립된 계획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

〈표 2-44〉 국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 연안·해양 이용·개발 관련 주요 계획

기관명	계획명	근거법령
국가계획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2010-2019)	연안관리법 제21조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연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및 제6조
	제3차 기르는어업 발전 기본계획(2014-2018)	수산업법 제50조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항만법 제5조
	제1차(2015-2019) 마리아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마리아항만법 제4조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8)	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
경상남도	권역계획	관광진흥법 제51조
	도서개발사업계획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도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
	지역에너지계획	에너지법제7조
	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
기초 자치단체	도시·군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어장이용개발계획	수산업법제4조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7조의2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 제5조
	연안관리지역계획	연안관리법
	지난 3년간(2016~2018) 업무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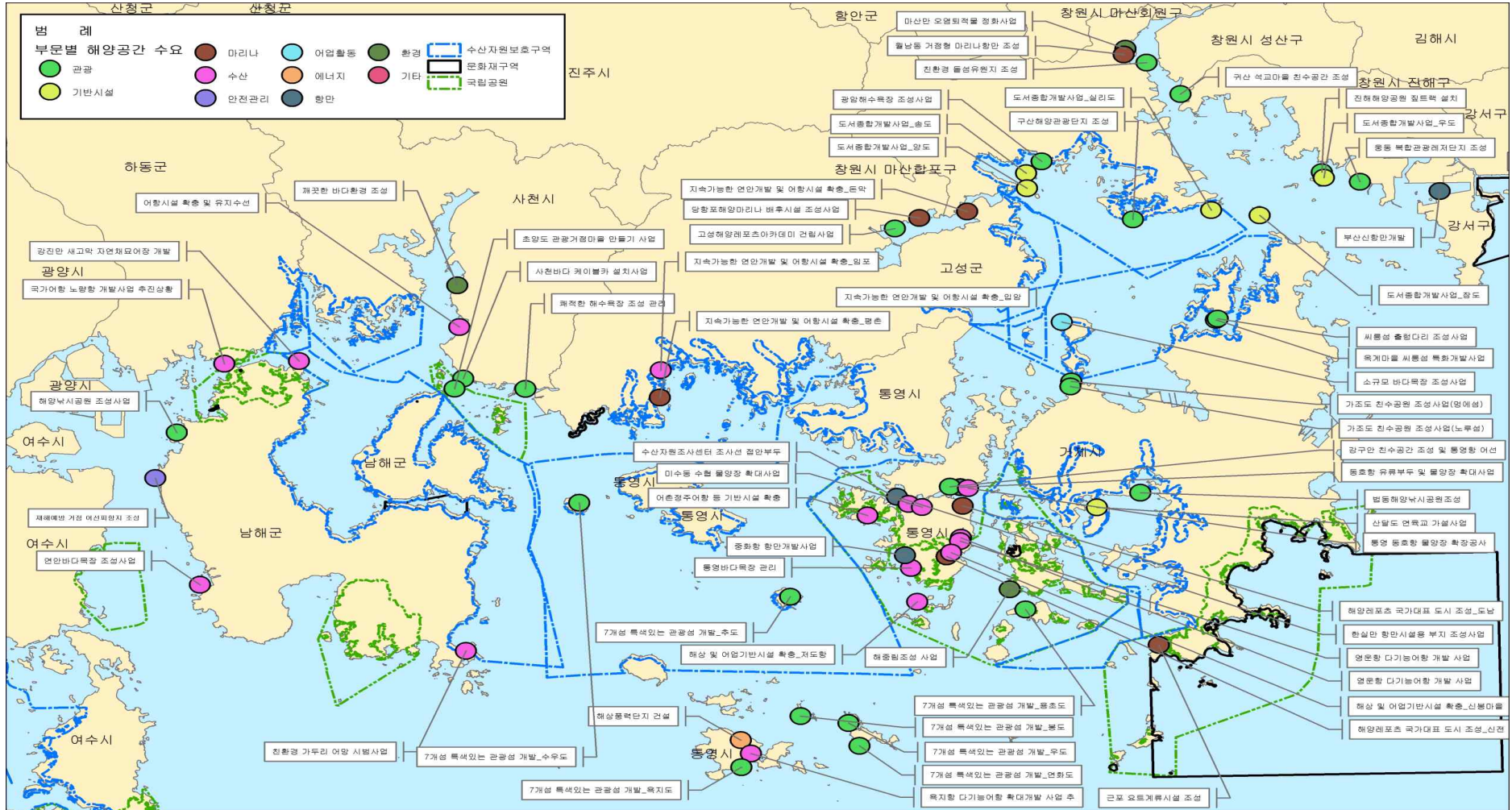
(2) 수요 분석 결과

- 수산 및 관광 해양공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가 전체 46건 중 각각 16건으로 가장 많고, 소요예산 측면에서는 에너지 수요가 1조 5,596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
- 면적을 기준으로 관광개발 계획면적이 5.37km²로 가장 넓고, 예산을 기준으로는 에너지 개발이 대부분을 차지

〈표 2-45〉 경남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사업성격)

구분	해양관광	기반시설	마리나	수산	에너지개발	항만개발	환경관리	안전관리	총합계	
사업 특성	개수	16	2	4	16	1	4	2	1	46
	면적(m ²)	5,372,081	450	9,946	248,080	불명	17,505	120,000	불명	5,768,062
	예산(백만원)	952,794	69,523	278,657	165,773	1,559,600	62,320	5,700	40,000	3,134,367

〈그림 2-25〉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위치도(성격)



2) 분야별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1) 연안관리

- 7개 연안 시군구 전 지역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이 완료됨

〈표 2-46〉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현황

시군구	미착수	용역	협의완료	수립완료	비고
창원시	-	-	-	○	고시완료
사천시	-	-	-	○	고시완료
거제시	-	-	-	○	고시완료
통영시	-	-	-	○	고시완료
고성군	-	-	-	○	고시완료
남해군	-	-	-	○	고시완료
하동군	-	-	-	○	조치계획 작성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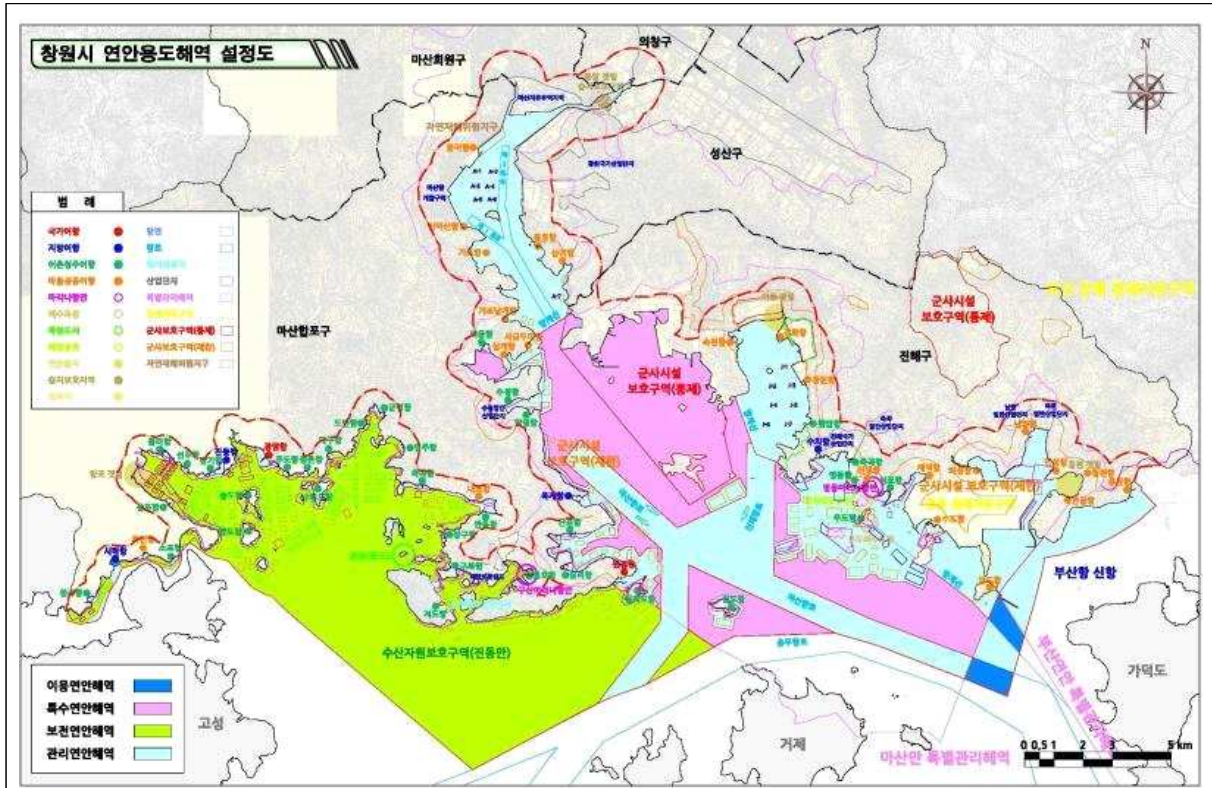
-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연안용도해역 지정은 관리해역이 1,718.62km²로 가장 많고 보전연안해역이 1,421.83km² 상당으로 두 해역이 경남 연안용도해역의 대부분을 차지
 - 연안해역기능구는 수산생물자원보호구가 986.84km²로 가장 많은 면적이 지정되어 있음

〈표 2-47〉 연안용도해역 및 기능구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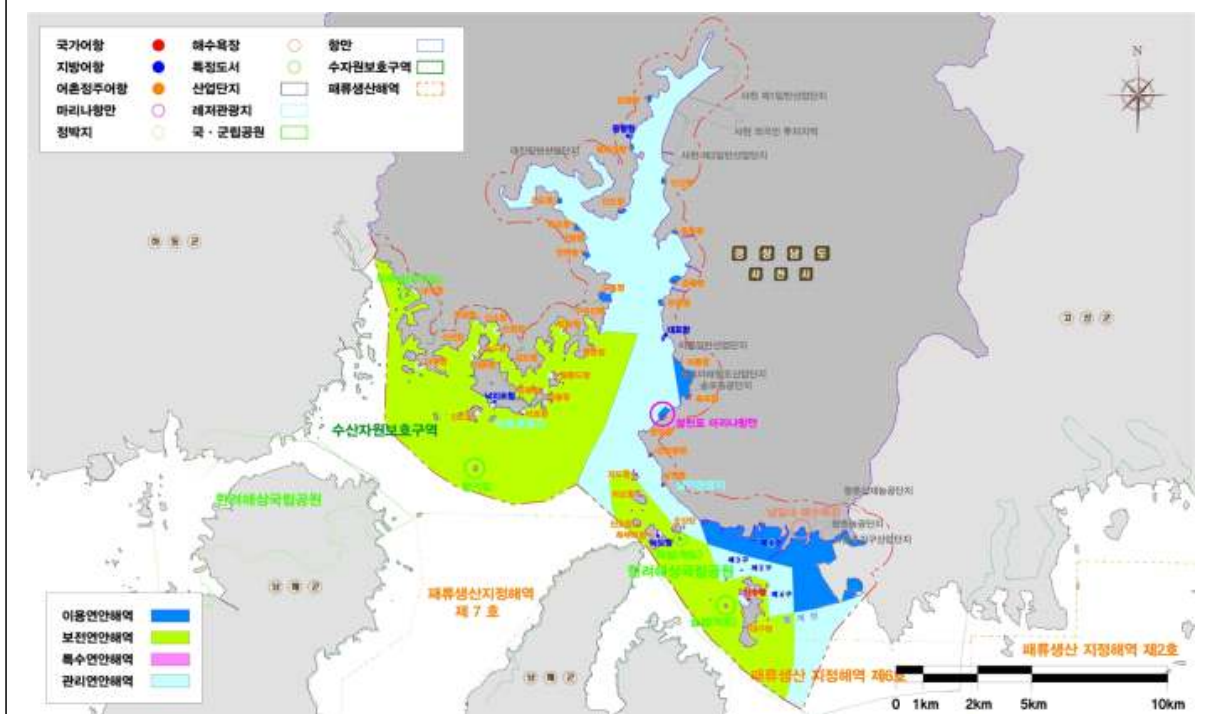
연안용도해역		기능구	면적(km ²)
이용연안해역	114.00	항만구	44.38
		어항구	218.26
		항로구	135.51
		해수욕장구	1.47
		레저관광구	1.07
		광물자원구	-
		해중문화시설구	5.82
보전연안해역	1,421.83	수산생물자원보호구	986.84
		해양생태계보호구	316.76
		경관보호구	64.64
		공원구	792.45
		어장구	98.63
특수연안해역	216.86	해양수질관리구	47.62
		군사시설구	319.38
		산업시설구	11.53
관리연안해역	1,718.62	-	-

주 : 기능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하고 기능구가 지정되지 않은 해역이 있어 기능구 면적 합과 연안용도해역 면적 합이 일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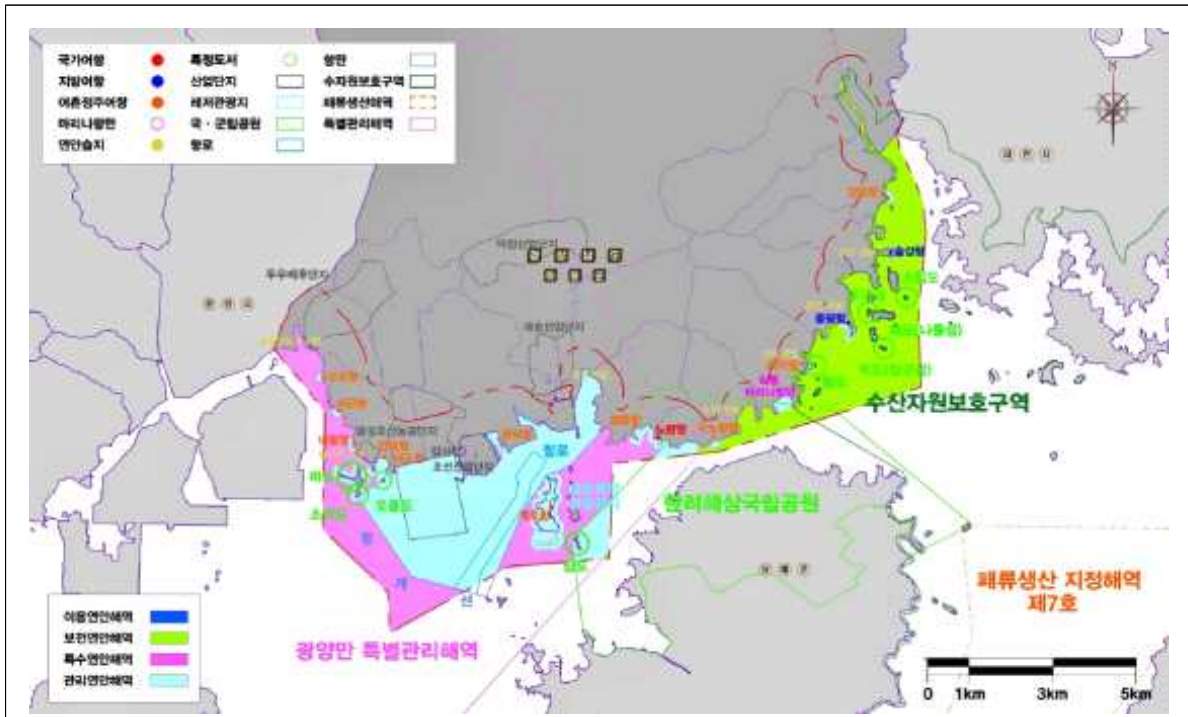
〈그림 2-26〉 경상남도 연안용도해역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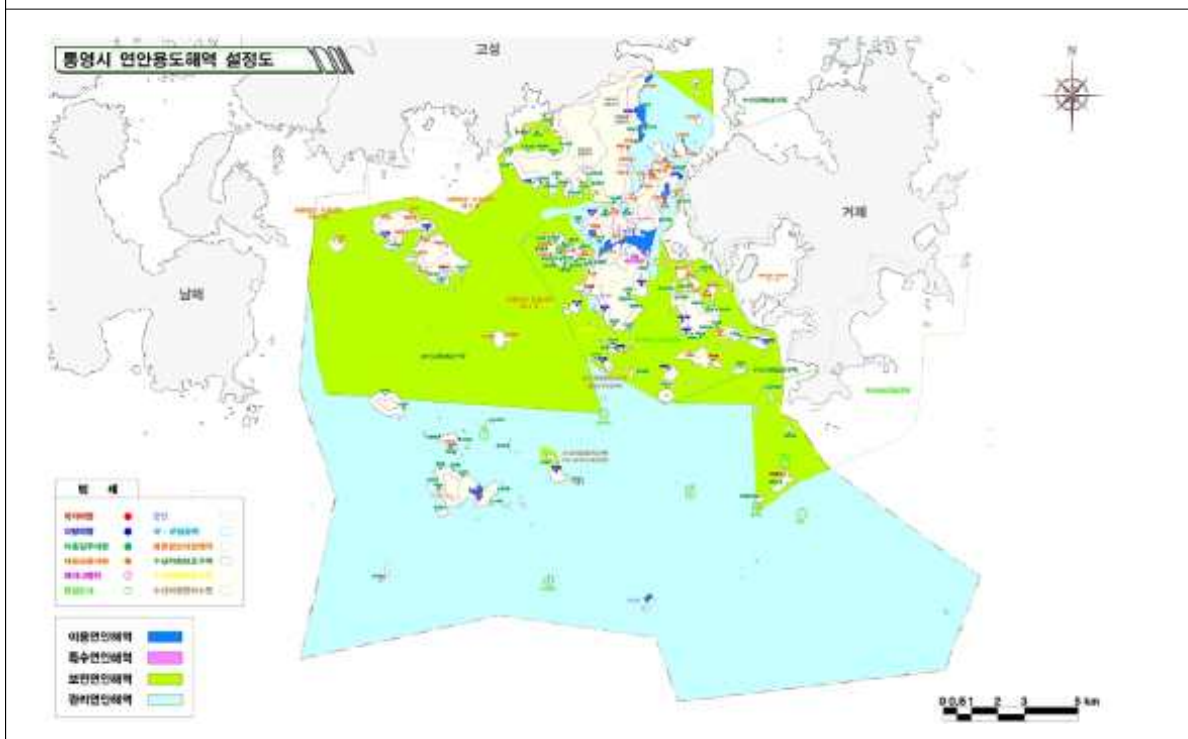
(창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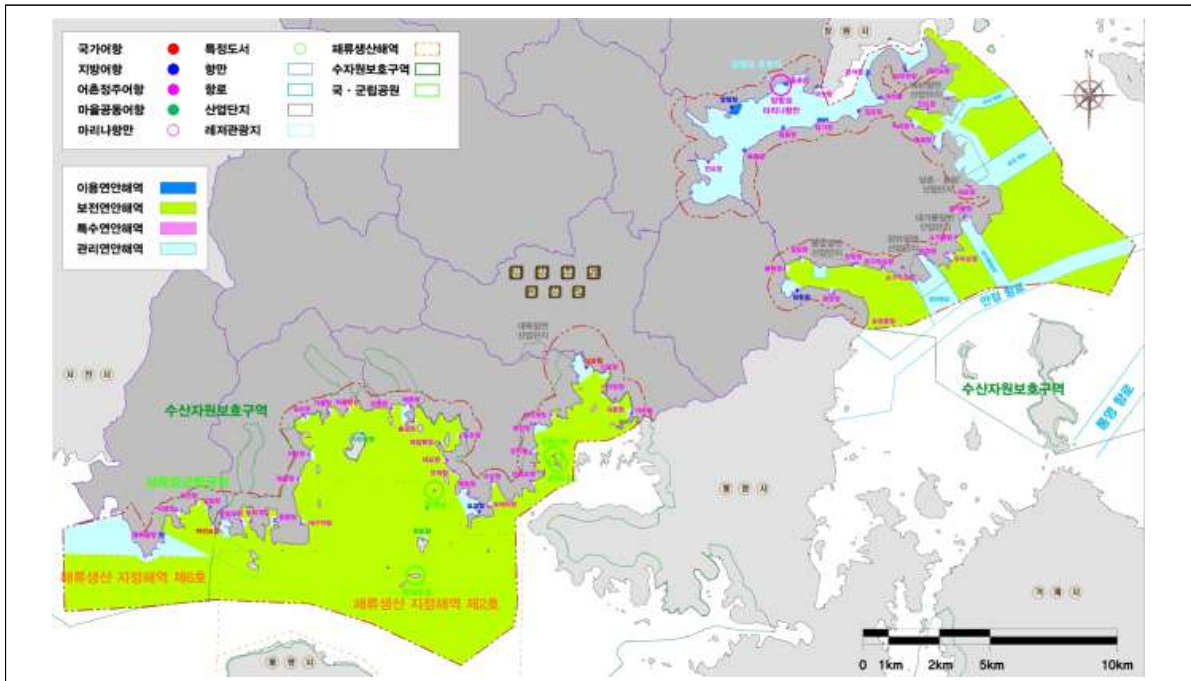
(사천시)



(하동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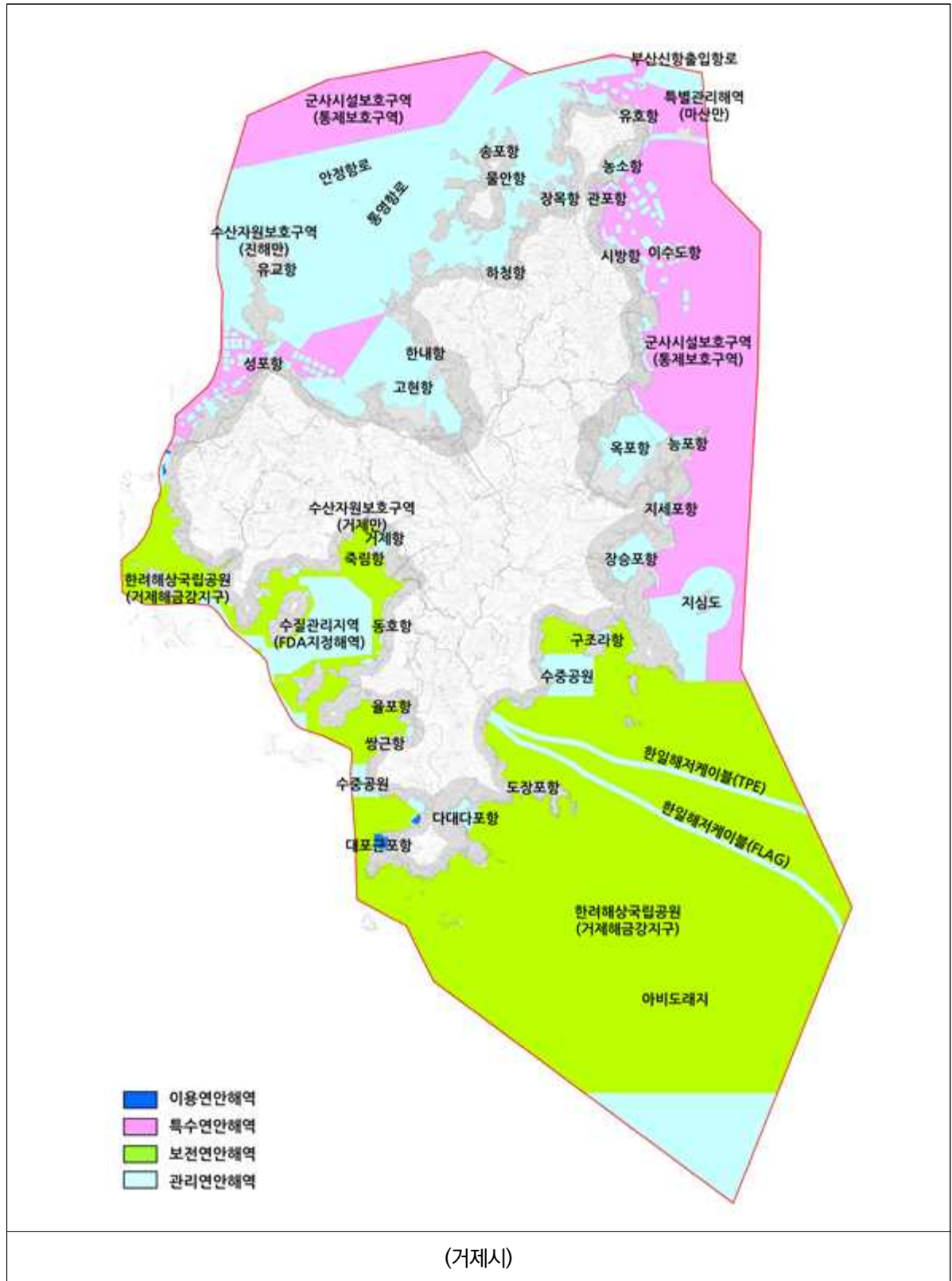
(통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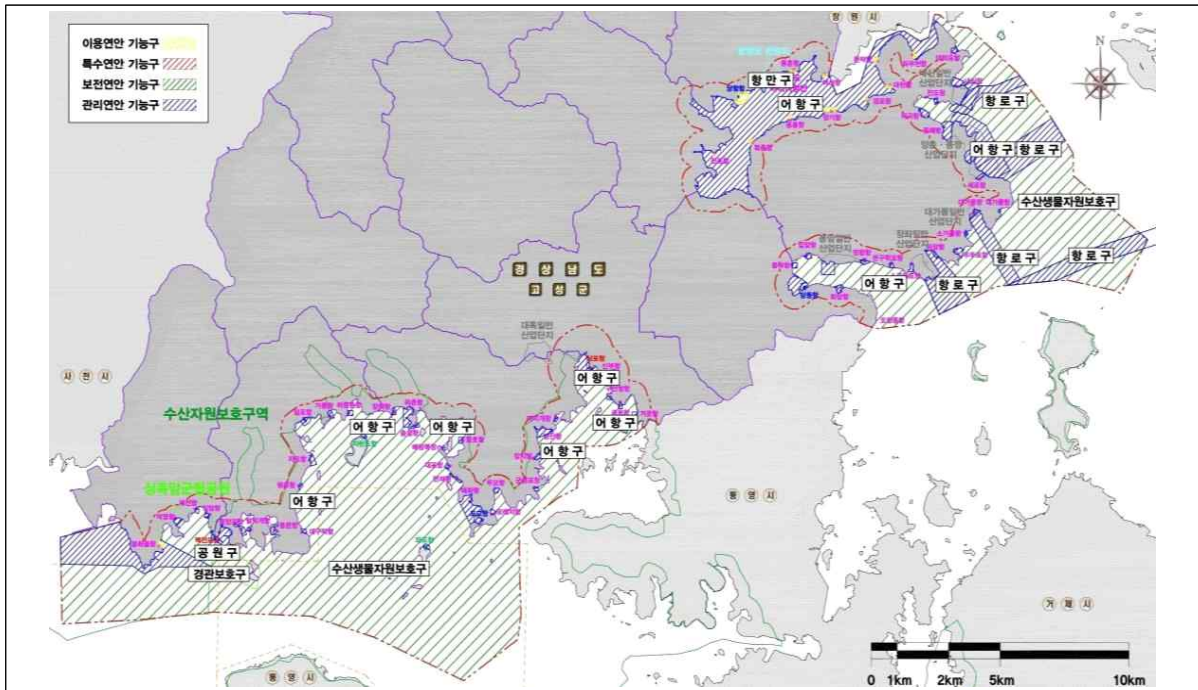
(고성군)



(남해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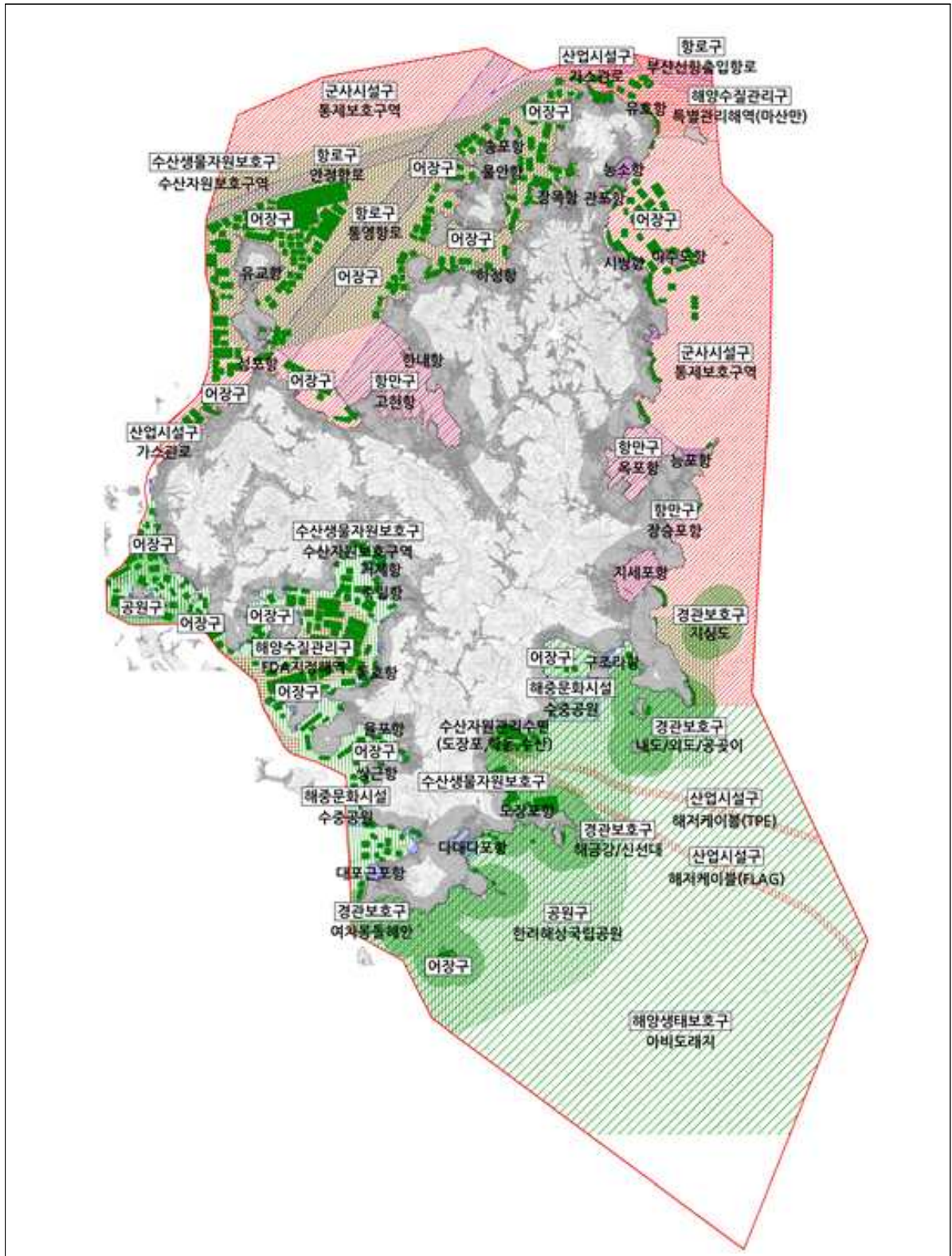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거제시)

(2) 공유수면 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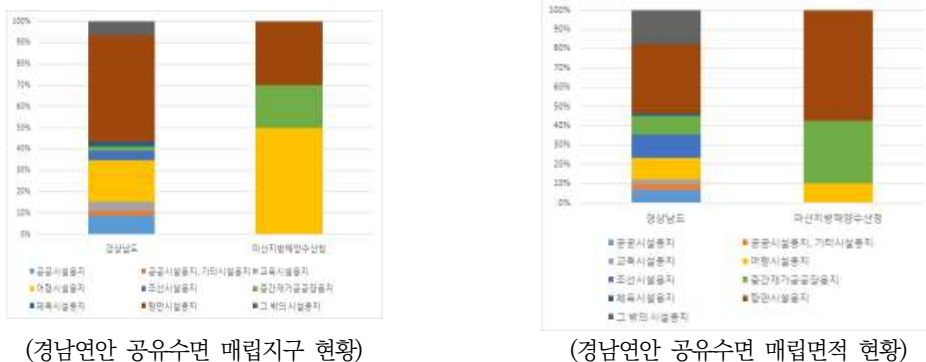
- 경남연안에 예정되어 있는 공유수면 매립수요는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11~'21)에 따른 매립예정지구 19개소를 포함, 총 56개소이며 총 매립예정면적은 1.8km²에 달함
 - 56개소 중 기본계획 반영지구는 19개소, 0.70km²에 불과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37개소, 1.12km²가 타 법 의제에 따른 매립사업임
 -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매립면허를 관리하는 항만구역 내 매립예정지구는 총 10개소이며 그 면적이 1.01km²로 경남 전체 매립예정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구역 외 매립수요 46건(0.81km²)만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음

〈표 2-48〉 경남연안 공유수면매립수요 현황

매립목적	면허관청					
	경상남도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합계	
	개소	면적(m ²)	개소	면적(m ²)	개소	면적(m ²)
공공시설용지	4	52,677	-	-	4	52,677
공공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1	25,250	-	-	1	25,250
교육시설용지	2	21,756	-	-	2	21,756
어항시설용지	9	88,753	5	101,876	14	190,629
조선시설용지	2	97,760	-	-	2	97,760
중간재가공공장용지	1	77,364	2	326,913	3	404,277
체육시설용지	1	11,300	-	-	1	11,300
항만시설용지	23	289,520	3	580,328	26	869,848
그 밖의 시설용지	3	142,887	-	-	3	142,887
총합계	46	807,267	10	1,009,117	56	1,816,384

자료 : 해양수산부, 2018년, 내부자료

〈그림 2-28〉 경남연안 공유수면 매립수요 현황



(3) 해역이용협의

- 2013년 이후 경남연안에서 이루어진 해역이용협의는 총 227건으로 이중 약 30%에 해당하는 68건이 항만구역에 해당
 - 전체 227건 중 일반이용협의는 177건이고 간이협의는 50건으로 대부분은 일반이용협 의에 해당함.
 - 일반해역이용협의 177건 중 항만구역내에서 이루어진 협의는 60건이고 8건은 항만구역 외에 해당함.
 - 간이해역이용협의 50건 중 항만구역내에서 이루어진 협의는 8건이고 대부분인 42건이 항만구역외에 해당함.
 - 항만구역외에서 이루어지는 해역이용협의는 점증하는 형상을 보이는 반면 항만구역내 해역이용협의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표 2-49〉 경남연안 해역이용협의 실적 현황

행 레이블		항만구역	항만구역외	총합계
2013년		22	16	38
2014년		15	13	28
2015년		11	18	29
2016년		12	40	52
2017년		8	72	80
합계	소계	68	159	227
	간이	8	42	50
	일반	60	117	177

자료 : 해양수산부, 2018, 내부자료

(4) 항만 개발

- 경남연안에는 무역항 8개소, 연안항 2개소, 마리나항 3개소 등 총 13개소에서 항만개발이 추진 중
 - 경남연안에는 국가관리 무역항인 마산항 1개소와 지방관리 무역항인 삼천포항, 통영 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하동항 등 7개소를 포함해 총 8개소의 무역항 과 국가관리 연안항인 국도항, 지방관리 연안항인 중화항 등 연안항 2개소가 입지
 - 운영 중인 마리나항만으로 충무, 공공, 삼천포, 지세포, 물건 등 5개소가 분포하고 대포근포, 당항포, 창원 명동(거점마리나) 등 3개 마리나항만은 개발이 진행 중에 있음.

〈표 2-50〉 경남연안에 위치하는 항만개발수요

항 구분	항명	개발규모(㎡)		
		합계	해상	육상
무역항	하동항	8,756,000	8,756,000	0
	마산항	14,057,000	12,582,000	1,475,000
	삼천포항	10,405,000	9,901,000	486,000
	통영항	4,308,000	4,174,000	134,000
	장승포항	776,000	708,000	68,000
	옥포항	6,016,000	6,001,000	15,000
	고현항	12,136,000	12,116,000	20,000
	진해항	8,429,000	8,217,000	212,000
연안항	국도항	386,000	386,000	0
	중화항	950,000	950,000	0
마리나항	대포근포항*	246,755	218,000	28,755
	당항포항	40,000	15,250	24,750
	창원 명동	110,400	60,700	49,700
합계		66,616,155	64,084,950	2,513,205

주 : 대포근포항 항만규모는 어항구역면적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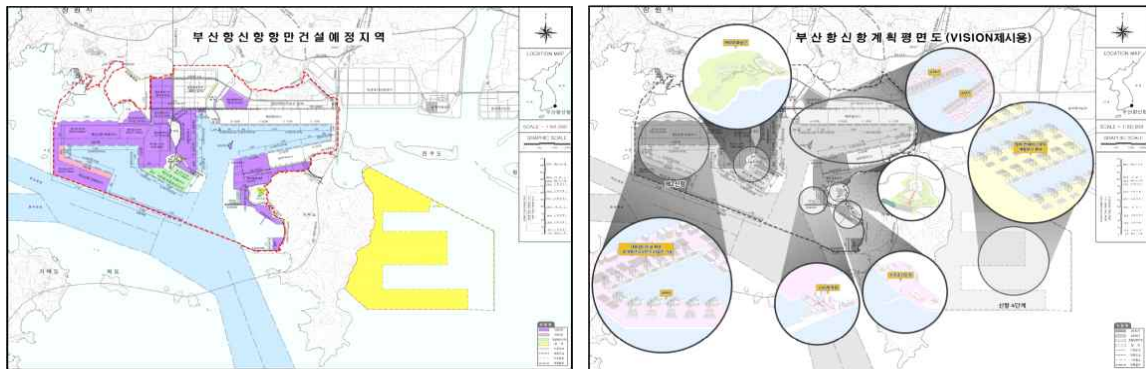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9호, 제2016-95호(전국 항만별 육상항만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 제2016-122호(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제2017-85(전국 육상항만구역 지정 변경고시)

□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 일원에 부산항 제2신항 건설 예정

○ 부산항 제2신항은 21선석 규모로서 25,000TEU급 초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한 메가포트(Mega-Port)로 개발할 계획임

- 2019년 5월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제2신항 개발·운영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그림 2-29〉 제2신항 현황 개요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2019-2040)

(5) 어항 개발

- 경남연안에 위치하는 어항은 총 567개소로 이중 완공된 어항은 173개소이고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393개소로 대부분이 완공되지 못한 상태
- 국가어항의 경우 19곳 중 2곳만 완공되지 못한 상태이고 지방어항은 68곳 중 26곳, 어촌정주어항은 337곳 중 222곳에서 어항 개발이 진행 중임.

〈표 2-51〉 어항 개발

경남	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어항
지정	567	19	68	337	143
완공	173	17	42	114	-
미완공	393	2	26	222	143

자료 : 해양수산부, 2017, 전국 어항현황; 해양수산부, 2017, 국가어항 기본시설 완공현황

(6) 해양관광 및 레저

-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수립된 해양관광 및 레저관련 계획은 총 18건이 있으며, 거제시 4건, 고성군 1건, 남해군 1건, 사천시 3건, 창원시 7건, 통영시 2건으로 창원시의 개발수요가 가장 많음.
- 전체 18건의 개발 수요 중 지역적으로는 창원시가 7건으로 가장 많고 사업비 역시 1,039,143백만원으로 타 지역의 예산 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를 보임. 개발사업 유형은 섬관광관련 개발 수요가 6건으로 가장 많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레저관광 유형이 346,100백만원으로 가장 많음.

〈표 2-52〉 경남연안 해양관광 및 레저 개발 수요

구분	구분	낙시관광	레저관광	마리나	섬관광	해수욕장	해양관광	전체
거제시	개소	1	-	-	3	-	-	4
	금액(백만원)	4,910	-	-	16,932	-	-	21,842
고성군	개소	-	1	-	-	-	-	1
	금액(백만원)	-	18,200	-	-	-	-	18,200
남해군	개소	1	-	-	-	-	-	1
	금액(백만원)	7,180	-	-	-	-	-	7,180
사천시	개소	-	-	-	1	1	1	3
	금액(백만원)	-	-	-	4,850	179	60,000	65,029
통영시	개소	-	-	1	1	-	-	2
	금액(백만원)	-	-	-	61,400	-	-	61,400
창원시	개소	-	1	1	1	1	3	7
	금액(백만원)	-	346,100	260,000	143	1,800	431,100	1,039,143
합계	개소	2	2	2	6	2	4	18
	금액(백만원)	12,090	364,300	260,000	83,325	1,979	491,100	1,212,794

자료 : 각 시군 주요업무계획, 2016~2018

〈표 2-53〉 경남연안 해양관광 및 레저 개발계획

사업명	사업계획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기간
옥계마을 씨름섬 특화개발사업 (거제시)	- 사업위치 : 하청면 연구리 옥계마을 (씨름섬) - 사업내용 : 해안산책로 L=1.5km, 해안광장128㎡ 등 친수공원 조성	3,232	2018-2020
씨름섬 출렁다리 조성사업 (거제시)	- 사업위치 : 하청면 연구리 옥계마을 (씨름섬) - 사업내용 : 출렁다리 조성 1식	3,900	2019-2022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사업 (거제시)	- 사업위치 : 사등면 창호리 일원 (노루섬, 멩예섬) - 사업내용 : 출렁다리 230m, 스카이버이크 1,500m	9,800	2018-2020
법동해양낚시공원 조성 (거제시)	- 위 치 : 거제면 법동만 일원 - 사업규모 : 해수면14.5ha, 바다가 1.4km - 주요내용 : 복합낚시공원 기반조성 - 해상가두리 2개소, 해상펜션 4동, 진입도교 17m, 진입 데크 92m, 진입도로 406m, 관리사무소, 파고라 등	4,910	2018-2020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건립사업 (고성군)	- 사업내용 : 생활동(3,840㎡), 훈련동(1,520㎡), 해상계 류장(50척)	18,200	2018-2020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남해군)	- 위치 : 남해군 고현면 갈화 ~ 화전지선 - 사업내용 : 해양낚시공원 조성 1개소	7,180	2017-2019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사천시)	- 위 치 : 사천시 동서동(초양도 ~ 각산) - 사 업 량 : 삭도 L=2.43km, 상·중·하부정류장 각 1개소 - 시공사/감리사 : (주)대명건설 외 1개사 / (주)도화엔지니어링 외 3개사	60,000	2015-2018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사업 (사천시)	- 위 치 : 동서동 초양도 일원 - 사 업 량 · 물양장확장 및 부둣가 도막형포장 A=3,500㎡ · 초양쉼터1식, 섬꽃 장미원1식, 전망시설 1식 - 사업기간 : 2015. 6. 25 ~ 2018. 6. 23	4,850	2015-2018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관리 (사천시)	- 위 치 : 향촌동 남일대해수욕장 일원 - 사업내용 및 사업량 ·백사장 정비, 시설물 개·보수 등 : 110백만원 ·수영한계선 및 해파리 방지막 설치·관리 : 30백만원 ·환경정비 인력 및 해상안전요원 채용 : 8명/39백만원 ·주기적 수질검사 실시 : 개장 전·후 1회, 개장기간 2 주마다 1회 이상	179	2017-2017
친환경 돌섬유원지 조성 (창원시)	- 위치 : 마산합포구 돌섬1길(월영동 625) 일원 - 사업내용 : 112,000㎡	143	2018-2018
진해해양공원	- 출발지 : 음지도(99m타워)	8,500	2018-2018

사업명	사업계획	소요예산 (백만원)	사업기간
“짚트랙”설치(민자유치) (창원시)	- 도 착 지 : 소쿠리섬(15m타워) - 총 연 장 : 1,200m(국내 최장거리), 6개 라인 - 이동속도 : 60 ~ 80km/h(약 55 ~ 70초 소요) - 환송시설 : 제트보트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창원시)	- 위치 :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원(준설토 투기장) - 사업면적 : 2,258,692㎡(68만평) / 시36%(24만평), 공사 64%(44만평) - 시행자 :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 민간사업자 : ㈜진해오션리조트 - 주요시설 : 골프장36홀, 숙박시설, 오수처리장, 휴양문화시설, 스포츠파크, 외국인 학교 등	346,100	2009-2018
광암해수욕장 조성사업 (창원시)	- 위치 :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154-13번지 일원 - 규 모 : A=9,288㎡(2,800평), 해안선 220m, 폭 30m ■ 백사장 6,667㎡(2,000평), 편의(휴게)시설 2,621㎡(800평) - 사업내용 : 종합상황실, 가족휴양시설 및 편의시설(피크닉장, 모래찜질장, 샤워실, 화장실 등), 안전시설 등 설치	1,800	2017-2018
귀산 석교마을 친수공간 조성 (창원시)	- 위치 : 성산구 귀산동 627번지 일원 - 공사개요 : 전망대, 주차장, 파고라, 벤치, 경관조명 등 설치 - 공사면적 : A=839㎡[국유지 743㎡(기재부 692㎡, 창원시 51㎡), 사유지 96㎡]	800	2018-2018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창원시)	- 위치 :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 심리 일원 - 사 업 량 : 2,842,634㎡(86만평) - 사업내용 : 공공 -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시설 등 - 사업내용 : 민자 - 기업연수지구, 건강휴양숙박지구, 모험체험지구, 골프레저지구	421,800	2009-2022
월남동 거점형 마리아항만 조성 (창원시)	- 위치 : 마산합포구 월남동 일원 - 사업방식 : 스페인 IPM Group 참여 민간투자 개발 - 사업내용 : 마리아 계류시설 1식, 클럽하우스, 문화집회시설 등	260,000	2016-2027
특색 있는 7개 관광섬 개발 (통영시)	- 위치 : 봉도, 수우도, 추도, 연화도, 우도, 욕지도, 용초도 - 주요시설 : 도서별 기반시설, 관광모노레일 및 보도교, 특화식물 개발 등	61,400	2014-
해양레포츠 국가대표 도시 조성 (통영시)	- 사업위치 : 통영시 도남동, 산양읍 일원 - 사업규모 : 신전지구(신규마리아항 200척 규모), 영운지구(피셔리아항 70척 규모), 도남지구(요트특구조성)	불명	2017-2021

□ 어촌 및 어항을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 추진

- 2019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경남 어항 15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020년에 추가로 23개소가 선정됨

〈표 2-54〉 경남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구분	2019년	2020년
거제시	이수도항, 학동항	도장포항, 산전항, 예구항, 저구항
고성군	입암항 등	당동항, 당항항, 동문항
남해군	동갈화항, 설리항	상주항, 장포항, 지족항
사천시	영북마을	낙지포항, 중촌항
창원시	명동항 등, 주도항	삼포항, 시락항, 안성항, 진동항
통영시	산등항 등, 진두항 등, 가오치항, 연화항 등, 진촌항	내지항, 달아항, 봉암항, 영운항, 학림항
하동군	술상항, 증평항	구노량항, 대도항
계	15개소	23개소

자료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8, 2019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9,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7) 신재생에너지 개발

□ 경남 옥지도 해상을 대상으로 해상풍력단지 발굴 및 설계를 위한 R&D 사업 추진

- 정부는 풍력발전 자원조사를 통해 22개 전략적 단지개발대상 후보지 선정
- 경남의 삼천포와 옥지도 인근 해역이 전략적 단지개발 대상 후보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 R&D 사업을 추진하는 5개 후보지에 옥지도 인근 해상이 포함됨

〈표 2-55〉 경남 해상 풍력발전 개발계획

구분	시군구	발전소명	용량(MW)
전략적 단지개발 후보지	사천시	삼천포해상풍력	60
	통영시	경남옥지해상풍력	350
R&D사업	통영시	경남옥지해상풍력	100MW(기술개발) → 400~500MW(확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산업화 전략 포럼, 3020 Project 목표달성을 위한 해양풍력과 조선해양산업 융합 추진전략 발표자료(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경남테크노파크, 경남통영 100MW이상 해상풍력단지 설계 및 해상풍력자원 평가기술 개발 발표자료

- 통영 옥지도 해상풍력 대상 후보지는 평균 풍속 약 7.2m/s로 주풍향은 북풍임
 - 옥지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계획은 ‘실증단지 설계 및 평가기술 개발단계’에서 500MW 후보지역을 확보하고 단지설계용량은 100MW 용량으로 개발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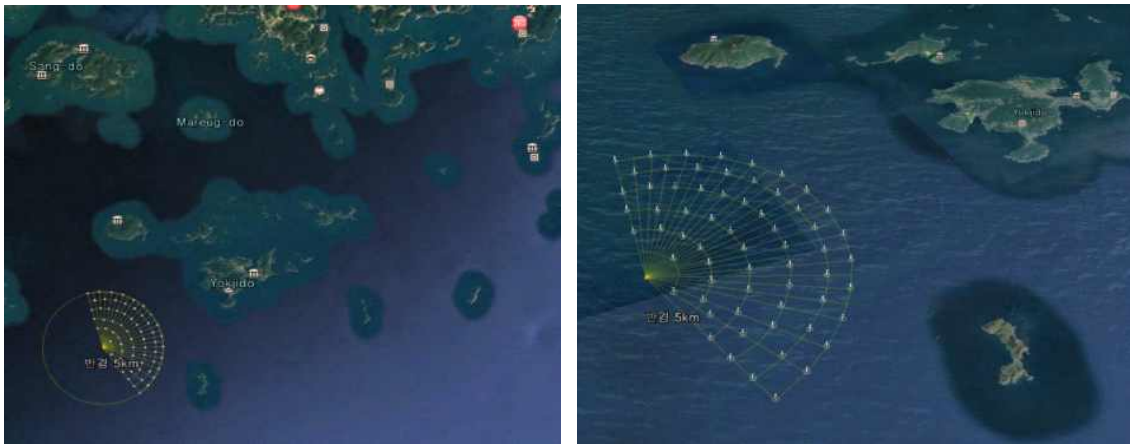
〈그림 2-30〉 통영 옥지도 해상풍력발전 대상 후보지 및 사업 최종 목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8, 해상풍력 산업화 전략 포럼 및 사업설명회 발표자료

- 2018년 4월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350M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계획 발표
 - 경남 통영시 욕지면 서산리 이안거리 4km 해상에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9년 발전사업 허가신청이 승인되었으며, 이후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2025년 상업운전 개시 계획
 - 설비용량 350MW 발전단지(5.5~6MW 풍력터빈 64기)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약 15,000억 원(약 43억/MW) 소요 예상
 - 사업자는 `11년 사업계획에 착수하여 풍향 계측 및 배후전력망 연계 협의,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등 추진하여 `19년 발전사업 허가 취득

〈그림 2-31〉 욕지 해상풍력 발전단지 배치 계획



욕지 해상풍력 발전 배치도

조감도

자료 : 욕지풍력(주), 2018.12,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면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1차 350MW) 사업현황 및 효과

- 이외에 경남 연안에 352MW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허가된 해역이 존재
 - 2017년 2월 27일 경남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및 서항리 외항 3km 해상의 소초 풍력발전사업소(352MW)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함
 - 소초 풍력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은 허가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임
-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따라 인근 주민 및 어업인과의 갈등 우려
 - 욕지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계획 발표 이후 인근 어민 등은 욕지도 조성반대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음.

(8)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 수요

- 갯벌복원 대상지는 전국에 20개소 6.89km²*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경상남도에는 유일하게 남해군 당저지구가 해당됨

* 갯벌복원사업은 폐염전, 축제식양식장을 대상으로 기존 인공구조물을 철거하여 갯벌로 복원하는 내용을 전제로 전국 연안지역에서 후보지역을 조사하였음.

- 경남 남해 당저리 대상 갯벌 복원대상지의 면적은 0.22km²으로 창선도 남측의 추도를 연결하는 두 개 방조제 중 일부를 제거하여 해수순환 회복을 도모

〈표 2-56〉 갯벌복원 대상지 상세 현황

지역	면적 (km ²)	출현 종수	방식	효과	총비용 (백만원)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0.22	137	폐방조제철거	관광/어업	4,860

자료 : 해양수산부, 2016, 갯벌 생태자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거제시와 남해군, 통영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1,653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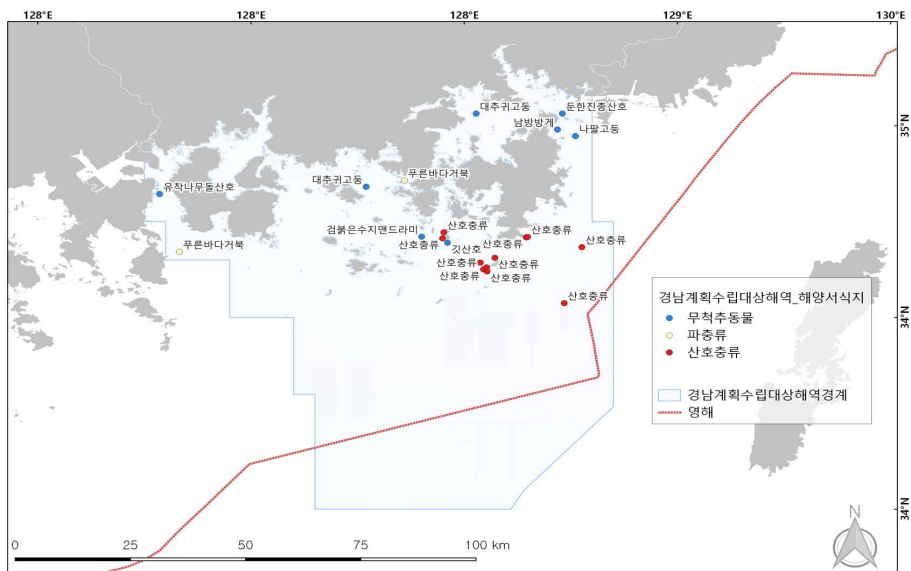
* 거제시와 남해군 사업은 신규 바다목장 조성사업이고 통영시는 이미 조정되어 있는 바다목장을 관리하는 사업임

〈표 2-57〉 바다목장 조성 및 관리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시군구	예산(백만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인공어초 시설, 해조류 이식, 패류 및 어류 방류(100ha)	2017~2021	거제시	400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패조류용 어초시설, 해조류 보식 및 구제동물 제거, 방류사업, 독살시설, 경제성 분석, 어획 조사 및 잠수 조사	2014~2018	남해군	1,000
통영바다목장 관리	- 바다목장 자원조성 관리 및 불법어업 지도, 단속(2,000ha) - 어초 주변 불법어구 및 페어망 철거 - 경계표지 시설물 관리 및 자율관리위원회 활동 지원	2018	통영시	253

- 경남 해역에는 푸른바다거북, 대추귀고둥, 남방방게, 갯산호 등 여러 종류의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가 분포하며, 산호충류도 다수 분포
- 경남 해역에는 유착나무돌산호, 대추귀고둥, 검붉은수지맨드라미, 남방방게, 둔한진충산호와 같은 무척추 동물 및 푸른바다거북이 분포하고 있으며, 매물도, 소매물도, 다포도 인근에 보호대상 산호충류가 다수 분포함

〈그림 2-32〉 경남 해역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분포



- 마산만 환경개선을 위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 특별관리해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 해양환경 현안, 관리대상물질, 환경관리 여건 및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로 확대
 - 제2차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시 적조 발생 저감, 관리대상물질에 인(隣) 추가
 -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기본방침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2017년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제3차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17~'21)을 수립
 - 기본계획에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이하 “관리구역”)의 관리목표를 COD 2.1mg/L, TP 0.032mg/L로 설정
 - 마산만 관리구역*을 창원시의 배출부하량 및 할당부하량 이하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통해 삭감사업 및 재원 투자계획을 수립
- * 마산만 관리구역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2호에 따라 고시된 관리해역과 관리해역의 해양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육상부의 관리구역으로 구성

-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연안·해양보호구역 확대 추진
 - 2022년까지 연안습지보호지역 확대 추진(235.8km²(2017) → 600km²(2022))
 - 내륙-하천-연안을 연계한 습지보호지역을 2022년까지 2개소 이상 지정 추진
 - 2017년 사천시 광포만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근거 발굴을 위한 습지보호지역 긴급조사 실시¹⁸⁾
 - 광포만은 대형저서동물의 서식지이자 철새 도래지로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20개 정점을 대상으로 대형저서동물, 염생식물, 물새 등 3개의 항목에 대하여 생물학적 특성 조사를 시행

18) 해양수산부·해양환경관리공단, 2017,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긴급조사)

4. 해양공간관리 현안

1) 일반주민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 경남 해양공간활동 및 해양공간관리 인식조사

○ 조사 대상 : 경남 지역주민 및 공무원을 포함 총 670명

* 경남 중 해양을 접하고 있는 시·군의 지역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 (지역주민 : 648명, 공무원 : 22명)

○ 조사 기간 : 2018년 10월~11월(1개월)

○ 조사 방법

- 지역주민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개별 면접 조사
- 공무원 :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2)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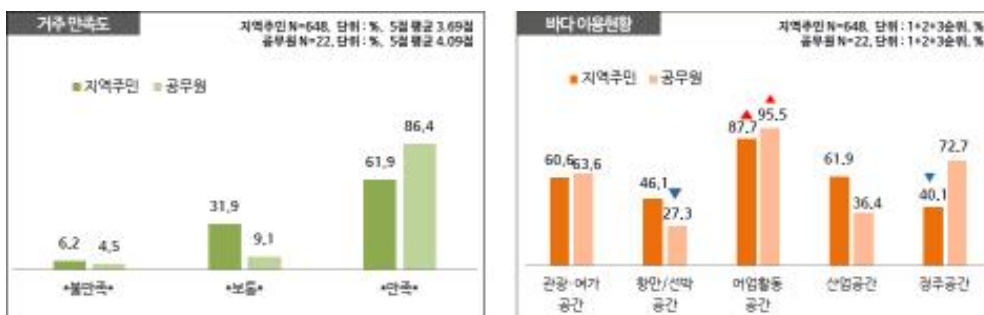
가. 해양공간인식

□ 거주 만족도 및 경남 바다 이용현황

○ 경남지역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거주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3.69점, 4.09점으로 나타남

○ 바다 이용현황은 ‘어업활동 공간’이 지역주민 87.7%, 공무원 9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장 낮은 응답은 지역주민의 경우 ‘정주공간’이 40.1%로 가장 낮았고, 공무원의 경우 ‘항만/선박 공간’이 27.3%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2-33〉 경남 주민 거주만족도 및 바다 이용현황



□ 경남 바다 고유 자원 및 바다 공간 지역주민 도움 여부

- 경남 바다 고유 자원에 대한 의견은, ‘풍부한 수산자원’이 지역주민 67.1%, 공무원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해양역사 문화자원’은 지역주민 25.5%, 공무원 18.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경남 바다 공간 혜택 인식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지역주민 3.66점, 공무원 4.14점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은 ‘긍정’ 59.4% > ‘보통’ 33.8% > ‘부정’ 6.8%로,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무원은 ‘긍정’ 90.9% > ‘부정’ 9.1%로, 거의 대다수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34〉 경남 바다 고유 자원의 유형 및 바다 공간 혜택 인식도



□ 경남 바다와의 유대감 및 이용·개발을 통한 생태계 변화 의견

- 경남 바다와의 유대감은 5점 만점 기준으로, 지역주민은 3.12점, 공무원은 4.27점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은 ‘유관’ 38.7% > ‘보통’ 30.4% > ‘무관’ 30.9%로, ‘유관’이 ‘무관’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더 높았고, 공무원의 경우 ‘유관’ 90.9% > ‘보통’ 및 ‘무관’ 4.5%로 지역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바다와의 유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용 및 개발을 통한 생태계 변화 의견은 ‘변화함’이 지역주민 60.0%, 공무원 72.7%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다수가 이용 및 개발을 통해 생태계가 변화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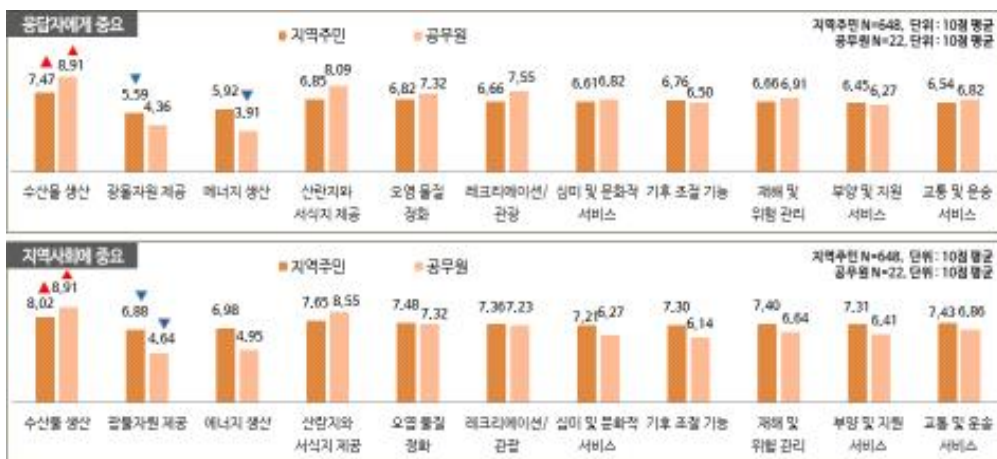
〈그림 2-35〉 경남 바다와의 유대 정도 및 이용·개발을 통한 생태계 변화에 대한 의견



□ 바다로부터의 혜택

- 지역주민에게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은 ‘수산물 생산’이 7.47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물자원 제공’이 5.5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공무원에게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은 ‘수산물 생산’이 8.91점으로 가장 높았고, ‘에너지 생산’이 3.9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지역사회에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 또한 ‘수산물 생산’이 지역주민 8.02점, 공무원 8.9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36〉 응답자 및 지역사회에 중요한 바다로부터의 혜택



나. 해양활동 간 갈등

□ 과거 10년 전 대비 경남 바다 이용 변화 및 이용방식 복잡화

-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 변화 정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3.54점, 4.41점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경우 ‘이용 증가’가 각각 61.6%, 95.5%로 가장 높게 나타나, 10년 전보다 이용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 복잡화 정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3.55점, 4.55점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은 ‘복잡해짐’ 56.0% > ‘변화 없음’ 32.7% > ‘단순해짐’ 11.3%로 나타났고, 공무원은 ‘복잡해짐’ 100.0%로 나타나, 바다 이용방식이 10년 전보다 다양해졌다는 의견이 주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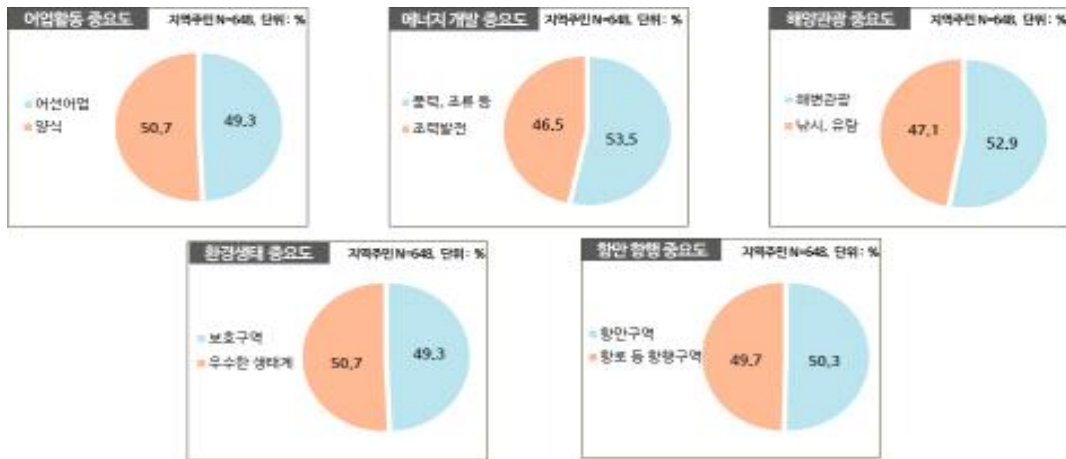
〈그림 2-37〉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 변화 정도 및 이용방식 복잡화 정도



□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 지역주민

- 지역주민의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를 알아보면, 어업활동 부문은 ‘양식’ 50.7%, ‘어선어업’ 49.3%로 나타났고, 에너지 개발 부문은 ‘풍력, 조류 등’ 53.5% , ‘조력발전’ 46.5%, 해양관광 부문은 ‘해변관광’ 52.9%, ‘낚시, 유람’ 47.1%, 환경생태 부문은 ‘우수한 생태계’ 50.7%, ‘보호구역’ 49.3%, 항만항행 부문은 ‘항만구역’ 50.3%, ‘항로 등 항행구역’ 49.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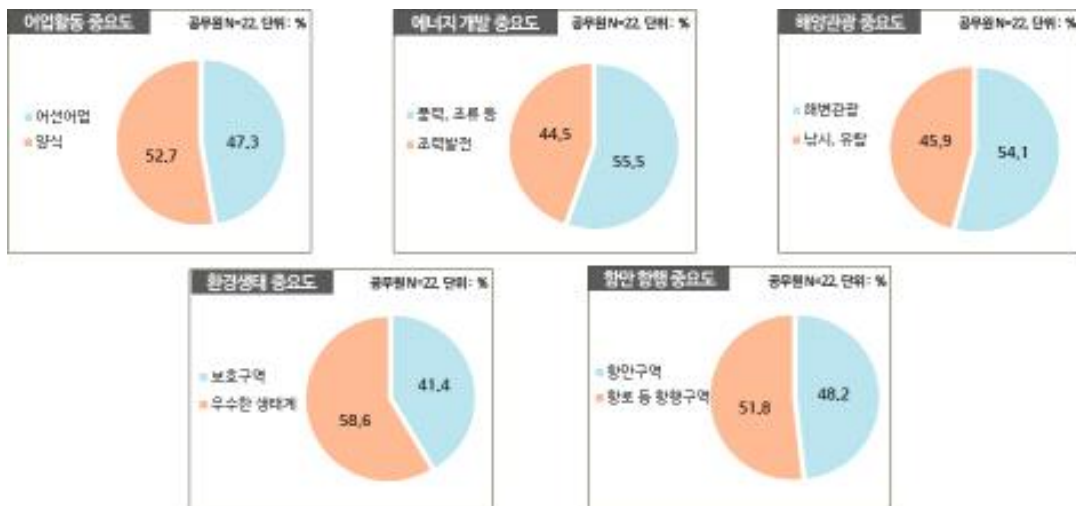
〈그림 2-38〉 지역주민의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



□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 공무원

- 공무원의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어업활동 부문은 ‘양식’ 52.7%, ‘어선 어업’ 47.3%로 나타났고, 에너지 개발 부문은 ‘풍력, 조류 등’ 55.5%, ‘조력발전’ 44.5% 해양관광 부문은 ‘해변관광’ 54.1%, ‘낚시, 유람’ 45.9%, 환경생태 부문은 ‘우수한 생태계’ 58.6%, ‘보호구역’ 41.4%, 항만 항행 부문은 ‘항로 등 항행구역’ 51.8%, ‘항만구역’ 48.2%로 나타남

〈그림 2-39〉 지역 공무원의 바다 이용 활동별 중요도



□ 해양공간 이용 갈등 : 지역주민

- 지역주민에게 해양 공간 활동들이 서로 얼마나 갈등이 있을지 알아본 결과, 어업활동의 경우 ‘골재·광물’(3.45점), ‘에너지 개발’(3.17점), ‘군사활동’(3.25점)과 갈등이 예상됨
 - 골재·광물 활동은 ‘환경·생태’(3.11점) 활동과 갈등이 예상됨
 - 에너지 개발 활동은 ‘환경·생태’(3.10점) 활동과 갈등이 예상됨
 - 해양관광 활동의 경우 ‘군사활동’(3.10점) 활동과 갈등이 예상됨

〈표 2-58〉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해양공간 활동간 갈등 예상 정도

해양공간 용도	어업 활동	골재·광물	에너지 개발	해양 관광	환경·생태	연구·교육	항만·항행	군사 활동
(1) 어업활동								
(2) 골재·광물	3.45점							
(3) 에너지개발	3.17점	2.77점						
(4) 해양관광	2.93점	2.88점	2.81점					
(5) 환경·생태	2.82점	3.11점	3.10점	2.79점				
(6) 연구·교육	2.20점	2.34점	2.30점	2.39점	2.26점			
(7) 항만·항행	2.83점	2.69점	2.67점	2.62점	2.75점	2.44점		
(8) 군사활동	3.25점	2.92점	2.86점	3.10점	2.86점	2.62점	2.82점	
(9) 안전관리	2.69점	2.68점	2.72점	2.63점	2.46점	2.28점	2.60점	2.81점

* 주) 1점에 가까울 수록 '갈등없음', 5점에 가까울 수록 '갈등클것' 응답으로, 3점 이상인 경우 '갈등예상'으로 분류

□ 해양공간 이용 갈등 : 공무원

- 공무원에게 해양 공간 활동들이 서로 얼마나 갈등이 있을지 알아본 결과, 어업활동의 경우 ‘골재·광물’(3.73점), ‘에너지 개발’(3.55점) 등의 활동과 갈등이 예상되었고, 골재·광물 활동은 ‘환경·생태’(3.86점), ‘해양관광’(3.36점) 활동과 갈등이 예상됨
 - 에너지 개발 활동은 ‘환경·생태’(3.36점), ‘군사활동’(3.00점)과 갈등이 예상되었고, 해양관광 활동의 경우 ‘군사활동’(3.36점), ‘안전관리’(3.05점), ‘환경·생태’(3.00점) 활동과 갈등이 예상됨
 - 환경·생태 활동은 ‘항만·항행’(3.00점) 활동과 갈등이 예상되었고, 항만·항행 활동은 ‘군사활동’(3.45점)과 갈등이 예상됨

〈표 2-59〉 지역 공무원이 인식하는 해양공간 활동간 갈등 예상 정도

해양공간 용도	어업 활동	골재·광물	에너지 개발	해양 관광	환경·생태	연구·교육	항만·항행	군사 활동
(1) 어업활동								
(2) 골재·광물	3.73점							
(3) 에너지개발	3.55점	2.00점						
(4) 해양관광	3.14점	3.36점	2.77점					
(5) 환경·생태	3.18점	3.86점	3.36점	3.00점				
(6) 연구·교육	2.00점	2.27점	2.18점	2.59점	2.05점			
(7) 항만·항행	3.64점	2.73점	2.59점	2.86점	3.00점	2.36점		
(8) 군사활동	3.73점	2.95점	3.00점	3.36점	2.59점	2.59점	3.45점	
(9) 안전관리	2.64점	2.82점	2.68점	3.05점	2.14점	2.05점	2.95점	2.9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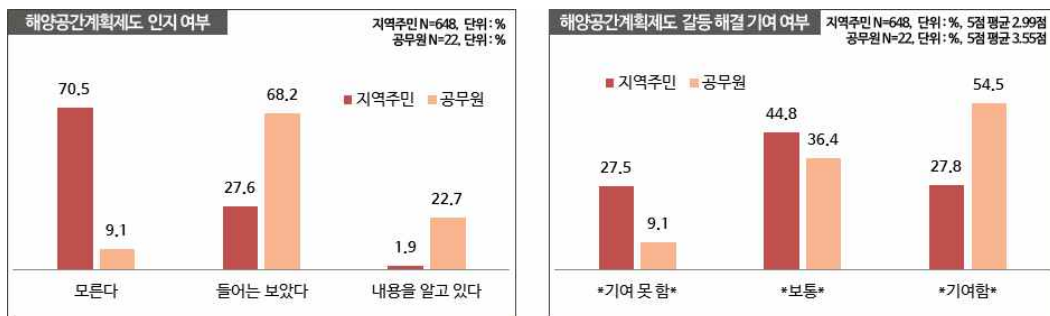
* 주) 1점에 가까울수록 '갈등 없음', 5점에 가까울수록 '갈등 클 것' 응답으로, 3점 이상인 경우 '갈등 예상'으로 분류

다. 해양공간계획제도 및 해양공간관리 방향

□ 해양공간계획제도 인지 여부 및 갈등 해결 기여 여부

- 해양공간계획제도에 대해서 지역주민은 '모른다' 70.5%가 가장 높게 나타나 대부분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공무원의 경우 '들어는 보았다' 68.2% > '내용을 알고 있다' 22.7% > '모른다' 9.1% 순으로 나타남
- 한편, 해양공간계획제도가 해양활동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기여하는지 묻은 결과,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지역주민은 2.99점, 공무원은 3.55점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은 '보통' 44.8% > '기여함' 27.8% > '기여 못함' 27.5%로 나타났고, 공무원의 경우 '기여함' 54.5% > '보통' 36.4% > '기여 못함' 9.1%로 나타남

〈그림 2-40〉 해양공간계획제도 인지 여부 및 갈등해결 기여 여부



□ 해양공간계획제도 이행 위한 필요요소 중요도

-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해양공간계획제도 이행을 위한 필요요소별 중요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 참여’가 3.93점으로 가장 높았고, ‘행정조직’이 3.6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공무원이 생각하는 해양공간계획제도 이행을 위한 필요요소별 중요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 참여’가 4.50점으로 가장 높았고, ‘행정조직’이 3.8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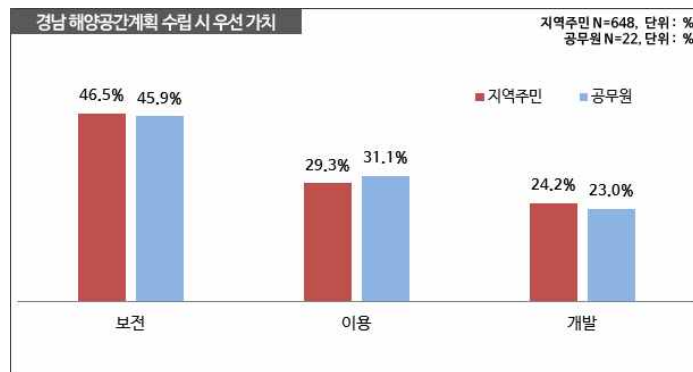
〈그림 2-41〉 해양공간계획제도 이행을 위한 필요요소의 중요도



□ 경남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우선 가치

- 경남의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우선 가치에 대한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의견은 대체로 유사
- 지역주민은 보전(46.5%) > 이용(29.3%) > 개발(24.2%)로 중시하고, 공무원은 보전(45.9%) > 이용(31.1%) > 개발(23.0%)로 중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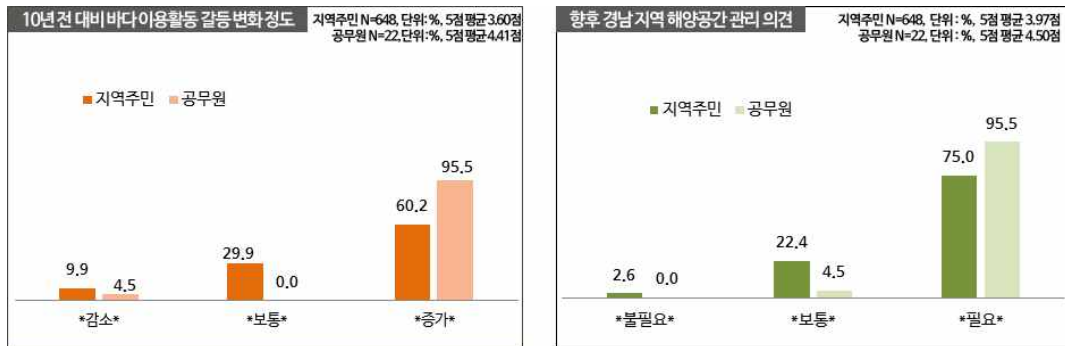
〈그림 2-42〉 경남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우선 가치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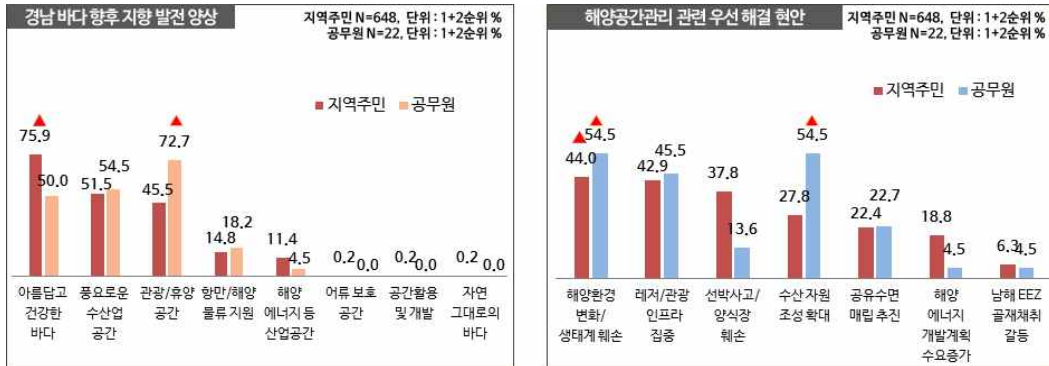
- 과거 10년 전 대비 경남 바다 이용활동 갈등 변화 정도 및 향후 경남 지역 해양공간 관리 의견
 - 지역주민 및 공무원의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활동 간의 갈등 변화 정도는 5점 만점 기준으로 각각 3.60점, 4.41점으로 나타나, 갈등이 증가했다는 의견이 많았음.
 -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경우 '증가'가 각각 60.2%, 95.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향후 경남 지역 해양공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지역주민은 3.97점, 공무원은 4.50점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은 '필요' 75.0% > '보통' 22.4% > '불필요' 2.6%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경우 '필요' 95.5%로 대다수의 지역주민과 공무원은 향후 해양공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그림 2-43〉 과거 10년 전 대비 바다 이용활동 갈등변화 정도 및 관리 필요성



- 경남 바다 향후 발전 양상 및 경남 해양공간계획 수립 위한 우선 해결 현안
 - 경남 바다의 향후 발전 양상에 대해서 지역주민은 '아름답고 건강한 바다'가 7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풍요로운 수산업 공간'(5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공무원의 경우 '관광/휴양 공간'이 72.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풍요로운 수산업 공간'(5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해양공간관리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 지역주민은 '해양환경변화/생태계 훼손'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레저/관광인프라 집중'(42.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공무원의 경우 '해양환경변화/생태계 훼손'과 '수산 자원 조성확대'가 54.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레저/관광인프라 집중'(45.5%), '공유수면 매립 추진'(2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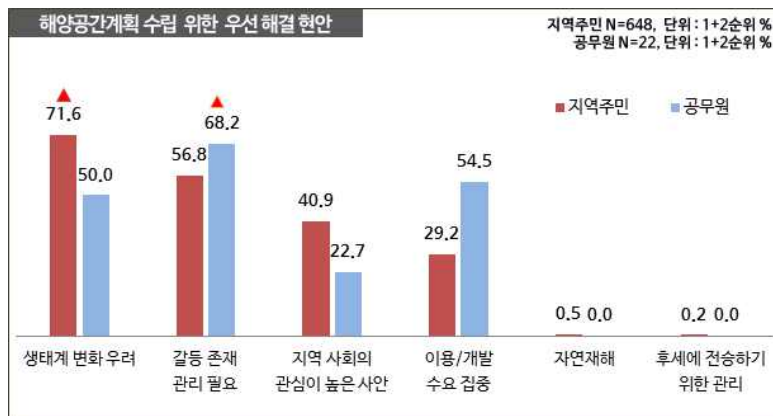
〈그림 2-44〉 경남 바다 향후 지향 발전양상 및 해양공간관리 관련 우선 해결 현안



□ 경남 해양공간계획 수립 위한 우선 해결 현안

-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지역주민은 ‘생태계에 변화를 줄 우려’가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갈등이 존재하여 관리가 필요’(56.8%),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은 사안’(4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경우 ‘갈등이 존재하여 관리가 필요’가 6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이용 및 개발 수요 집중’(54.5%), ‘생태계 변화 우려’(5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5〉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우선 해결 현안



2) 해양공간관리 현안

- 유·무인도서 및 자연해안을 중심으로 해양관광 개발계획 집중
 - 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마리나 어항·항만 개발, 해수욕장 정비, 해상케이블카 설치 등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추진
 - 남해안 해양관광 특별권역 설정으로 해양관광벨트 조성 사업 추진
 - * 거제해양관광테마파크, 섬길 조성, 거제해양특구, 남시·해중공원, 산달도 연육교·국지도 58호선 등 교통 인프라 증진 사업 예정
- 무동력 레저선박을 이용하거나 수중 잠수를 즐기는 해양레저 활동 확대
 - 다양한 레저 목적의 연안 및 해양활동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요트, 윈드서핑, 카누, 카약, 노보트 등 무동력 레저선박을 이용한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 공간 확보뿐만 아니라 관련 인프라 시설 확충 필요
 - 최근 경남 해역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중 생물 및 서식지의 아열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스쿠버 다이빙 활동 장소로 가치가 클 것으로 전망
- 바다목장, 바다숲 등 수산생물 서식지 조성 확대, 기 조성 해역의 적극적 관리 강화
 - 그동안 어업행위 제한 등 규제적용에 따른 어업인의 반발로 지자체에서는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지정 등에 소극적
 - 바다목장, 바다숲 등의 체계적 사후관리 미흡으로 객관적 효과 분석의 어려움이 존재
 - 최근에는 인공어초 및 바다목장 조성 해역의 합리적 이용·관리를 위해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후 적극적 관리
 - 보호수면 및 관리수면에 체계적인 관리 기준, 효과 및 가치 분석을 위한 과학적 수단 마련 필요
- 경남 통영 100MW 이상 모델 해상풍력단지 구상 및 적지 발굴 추진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보급 확대추진
 - 산업부는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가 발굴·제안한 입지 위주로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8년 6월 경남 통영 육지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

- 통영해역 대상 후보지는 멸치 생산량이 높은 공간으로 향후 어업 활동과 상충 예상되므로,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공간 경쟁·상호 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연근해 어선 안전 사고, 선박 통항에 따른 어업 활동 피해, 어선과 레저선박 충돌 사고 증가
 - 경남 해역은 연안어선의 조업밀도가 높고, 엔진출력이 향상되고 있어 어선 간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경남해역에서 해양레저선박의 수와 항해빈도가 증가하면서 해양레저선박과 어선의 충돌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
 - 경남 해양공간은 섬이 많고, 좁은 해역이 다양한 이용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용자 간 충돌 사고가 발생
 - 통항안전을 위한 항로 지정에 따라 어업과 갈등 발생
 - ※ 광양항 추가 항로 지정 추진 시 남해군 어민 반발 : 기선권 현망, 근해통발, 근해연승, 연안어업의 공동조업구역으로 활용되는 어장(2016년 11월)
- 항만 재건을 위한 대규모 산단 및 공유수면 매립 추진 예상
 -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매립면적 약 3.2km²), 고현항 항만재개발계획(매립면적 약 570천m²) 등은 기존 매립 사업 보다 큰 규모로 추진
 - 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11~2020)에 반영된 매립지구는 총 389개 지구(의제협의 포함)로 매립면적은 51,158,421m²로 지구당 평균면적은 131,513m²에 불과함.
 - 우수한 자연경관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조선 산단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입지가 인접하거나 영향권 내에 중첩되어 있어 보전-이용 간 갈등 존재
 - 수산자원보호구역 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연안에서 추진된 공유수면매립사업은 34개소 11.77km²임

〈표 2-60〉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인접 해역 내 공유수면 매립사업 현황

신청지구	신청인	위치	반영시기	매립목적	면적(㎡)	공유수면법 의제여부
옥포 I	대우조선해양	거제시	1991	중간재가공공장용지	400,000	
도남II	통영시장	통영시	1991	공업용지	37,000	
죽도	거제시장	거제시	1993	중간재가공공장용지	392,000	
한내	노수용	거제시	1993	조선시설용지	20,000	
사곡	(주)혁신기업	거제시	1996	공업용지	25,000	
고현	삼성중공업(주)	거제시	1997	도시 및 공업용지	1,240,000	
오비	거제시장	거제시	2001	도시용지(항만,조선시설)	194,000	
장평	경상남도지사	통영시	2001	공업용지(지방산단)	356,000	
한내	임천공업(주)	거제시	2002	조선시설용지	96,843	
동해	(주)금오산업기계	고성군	2005	중간재가공공장용지	40,770	
안정국가산업 단지	성동조선,SPP조선	통영시	2005	조선시설용지	2,413	의제
연초	삼성중공업(주)	거제시	2006	중간재가공공장용지	24,696	
성포	(주)신우조선해양(주)건화	거제시	2006	조선시설용지	106,100	
안정	성동공업	통영시	2006	조선시설용지	290,894	
연초	임천공업(주)	거제시	2007	중간재가공공장용지	160,000	
장평	삼성중공업(주)	거제시	2007	조선시설용지	9,000	
한내2	삼성중공업(주)	거제시	2007	조선시설용지	247,378	의제
사곡	혁신기업(주)	거제시	2007	조선시설용지	79,200	
옥포국가산단	대우조선해양(주)	거제시	2007	조선시설용지	163,512	
내산	삼강엠엔티	고성군	2007	조선시설용지	133,660	
양촌-용정	삼호컨소시엄	고성군	2007	조선시설용지	937,237	
장좌	혁신기업(주)	고성군	2007	조선시설용지	297,415	
한신추봉	통영시장	통영시	2007	그 밖의 시설용지	4,000	
장평	신풍해양산업(주)	통영시	2007	중간재가공공장용지	179,000	
덕포일반산단	SPP조선(주)외 1	통영시	2008	조선시설용지	810,000	의제
안정일반산단	(주)가야중공업외 1	통영시	2008	조선시설용지	920,804	
청포일반산업 단지	신해중공업(주)	거제시	2009	중간재가공 공장용지	334,402	의제
죽도국가산업 단지	삼성중공업	거제시	2009	조선시설용지	258,934	의제
한내일반산업 단지	삼성중공업	거제시	2009	중간재가공 공장용지	422,076	의제
안정국가산단	성동조선해양(주),(주)가야중 공업	통영시	2011	조선시설용지	26,827	

신청지구	신청인	위치	반영시기	매립목적	면적(㎡)	공유수면법 의제여부
내산	삼강엠펜티	고성군	2014	중간재가공공장용지	77,364	의제
장좌	고성조선해양(주)	고성군	2014	중간재가공공장용지	129,413	
모사	(주)건화	거제시	2015	중간재가공공장용지	197,500	
거제 해양플랜트산 단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거제시	2017	그 밖의 시설용지	3,160,000	의제
합계		계	34개소		11,773,438	
		거제시	19개소		7,530,641	
		통영시	9개소		2,626,938	
		고성군	6개소		1,615,859	

자료 : 해양수산부, 2018, 공유수면매립통계 중 선별

□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수산 활동 갈등 지속

- 2008년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 이후 지정연장을 통해 바닷모래를 지속 채취
 - 육지도 앞바다는 난류와 냉수대가 만나고, 적당한 수심과 발달한 해저 사면 등으로 다양한 해양서식처(멸치, 고등어) 제공
- 건설용 모래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골재가격 상승 등으로 바닷모래채취 허가가 수차례 연장되었고, 이를 반대하는 어업인 및 환경단체 간 갈등 심화
 - 환경단체 및 어민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바닷모래 채취 해역이 멸치의 산란장과 고등어·전갱이 등 회유성 어종의 주요업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바닷모래 채취에 따른 해저 지형 변화, 부유사 확산 등에 기인하여 어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
 - 국토교통부는 어획량 감소와 골재채취간의 상관성이 미미하고, 안정적 골재 수급, 골재확보 다변화의 어려움에 따라 해사 채취 중단이 불합리함을 주장
- 갈등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 협의, 골재채취-해양생태 및 수산자원의 영향에 관한 연구·조사, 채취량 축소 방안(채취금지구역 설정, 채취 깊이 제한, 채취 해역 원상복구 의무화, 제도 재정비 등) 검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건설업계와 수산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이슈로 발전되고 있으므로 갈등 해소와 대립의 완화 방안 모색 필요

5. 해양공간관리 정책방향

□ 정책방향의 성격

- 해양공간계획은 공간에 분포하는 자원과 환경을 관리하는 제도적 수단이지만, 특정 자원 또는 환경에 특화된 계획이 아닌, 다양한 해양수요가 조화롭게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임.
- 즉, 다양한 해양수요가 조화를 이루어 각 수요별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통합적 계획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해양공간계획에 반영된 각 수요별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음.
- 즉 해양공간계획은 현재의 공간관리구조를 파악하여 기능을 배분하고 조정하여 해양용 도구역으로 설정하므로, 정량적 정책목표 설정이 불가능하지만 행위주체들의 행동을 결정할 정책방향 설정은 필요함.
- 따라서 해양공간계획은 ‘정책방향’을 통해 각 행위주체들의 용도구역별 공간할당 결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최소상충과 조화의 원칙’을 기초로 해양공간이용을 재배치함으로써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성격을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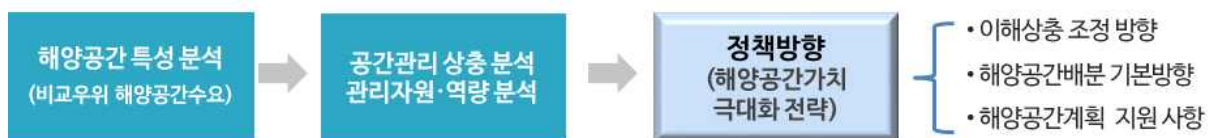
□ 정책방향의 성격

- 행위주체들의 공간할당에 대한 인식증진 및 최소 상충과 조화의 원칙을 기초로 현재의 해양공간이용을 재배치함으로써 가치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 정책방향 도출 과정과 구성요소

-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과 정책방향에 포함될 사항은 아래와 같음.

〈그림 2-46〉 해양공간계획 정책방향 도출 과정



- 가치창출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틀로서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대상 공간의 특성을 분석해야 함. 계획대상 공간특성 분석 대상은 자연환경 특성, 사회경제 이용특성, 국가정책 및 계획 수요 등임.
- 다음단계는 공간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각 수요별 상충현황(상충내용과 수준)과 현재의 관리자원·역량(자료, 정보, 인력, 기술수준 등)을 분석하는 과정임.
- 마지막으로 공간특성, 상충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해상충 조정방향, 해양공간배분', 관리자원·역량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제시함.

□ 경남 해양공간계획 정책방향

- 상기의 과정을 거쳐 도출한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정책방향은 아래와 같음.

① 해양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확대

- 경남 해역은 섬이 발달하고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하천이 많아 해양생물의 산란과 생육에 적합
 - 특정도서 및 절대보전 무인도서의 경우 주변 해역 1km까지 범위를 해양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 이러한 해양생태계의 수산물 생산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습지와 하구 등 주요 서식지 뿐만 아니라 해저지형을 포함한 해중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 유·무인도서, 갯벌 등 해양생태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 활동 지원
 - 도서 주변해역과 해양보호생물종(잘피 등) 서식지 등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기반 마련

② 지속가능한 수산활동을 위한 중첩 활동간 상호작용 점검 및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

-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다양한 보전·이용 수요의 상충 예방을 위한 활동 간 관리 우선순위 설정
 - 어업생산량을 극대화하고 환경영향·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양식어장 배치
 - 보전적 성격의 구역 내 수산활동의 주기적 점검

-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지 조사와 조업활동 모니터링·위협 요인 파악
 - 산란, 시·공간적 가변성,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여 어류 번식의 핵심공간 관리

③ 수려한 해양(해중)경관과 해양문화 지역을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 수산자원보호구역과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해수욕장, 어촌체험휴양마을, 수중테마공원 등을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경관·문화자원의 이용·관리체계 강화
 - * 마리나 항만과 해상국립공원이 중복되는 공간은 마리나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을 고려하여 해양관광 구역으로 지정
 - 해양레저·관광은 양호한 해양생태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과 개발이 이루어져야함. 해양레저·관광 개발이 해양생태계의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점검하고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관리
- 어항 내 해양레저·관광개발이 지역민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용·개발 유도
 - 선점식·경쟁적 해양관광자원 개발을 지양하고 상호보완적 해양공간 이용 (어항-마리나, 다기능 어항 등)

④ 항만구역의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해 생태계 기반 공간관리 강화

- 항만구역 내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무인도서(절대보전) 등 주요 생태계·서식지를 해양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 * 마산항 내 봉암 갯벌 습지보호지역, 하동항 내 특정도서(소마도, 오동도) 등
- 항만구역 내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해안 및 해양생태계의 주기적인 모니터링 추진

⑤ 해양레저 선박 및 항행 빈도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강화

- 경남 해양공간의 레저 선박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구역으로 중첩하여 지정
 - * 경남 낚시어선 척수는 1,202척으로 전국의 약 27%를 차지하며, 낚시어선 이용객수 최근 급격히 증가('09 39만 명 → '19 132만 명)
 - * 낚시어선 밀집 공간과 대형 화물선 및 탱크선 등이 조우하는 공간(거제 남단 해역, 가덕도 서측 해역 등)을 파악하여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
- 어선·선박·레저선박 등 선종별 집중 공간 분석 체계 구축 및 지속적 관리·점검 체계 마련
 - * 해양수산정보 플랫폼을 통해 선박, 어선, 레저선박 등의 위치 정보를 원활히 수집과 배포

⑥ 해양공간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한 행위 간 상호작용·영향평가 및 이해상충 조정 체계 강화

○ 보전 용도의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과 개발 입지가 인접하거나 영향권 내에 있는 경우 해양공간특성에 기반한 해양용도구역 지정으로 공간경쟁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조정

○ 지역협의회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협의하도록 유도

* 양식-레저, 항행-어업, 수산-바닷모래, 수산-해상풍력 등 행위 간 갈등의 유형이 다양하고, 레저선 박(낚시어선)의 수와 항해빈도 증가에 따른 어선, 선박, 레저 관련 갈등 증가



제3장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1. 해양공간특성평가
2.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및 구획 방법
3.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제3장 /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1. 해양공간특성평가

1) 해양공간특성평가 개요

□ 해양공간특성평가

- 해양공간특성평가(이하, “특성평가”)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임

* 「해양공간계획법」제2조제7항 :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 개발,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데 필요한 평가를 말함.

- 해양공간의 환경·생태, 자원, 이용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해양의 핵심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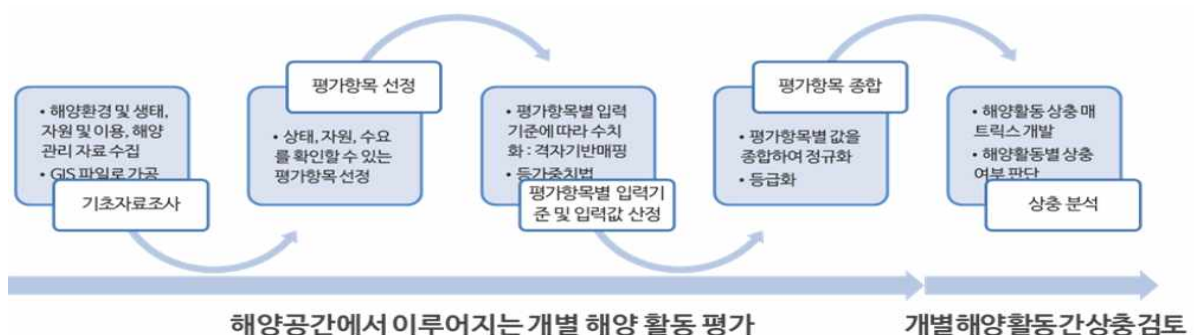
- 특성평가는 핵심 해양활동을 자료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과정임

- 특성평가를 통해 해양활동을 대표하는 해양공간정보를 지리정보체계(GIS)를 활용하여 평가단위인 격자형태로 가공하고, 이를 중첩 분석(overlay analysis)하여 해양공간 특성을 등급화하고 핵심 활동 공간을 식별

- 특성평가 결과는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 용도구역 간 상충 여부와 정도를 파악하는데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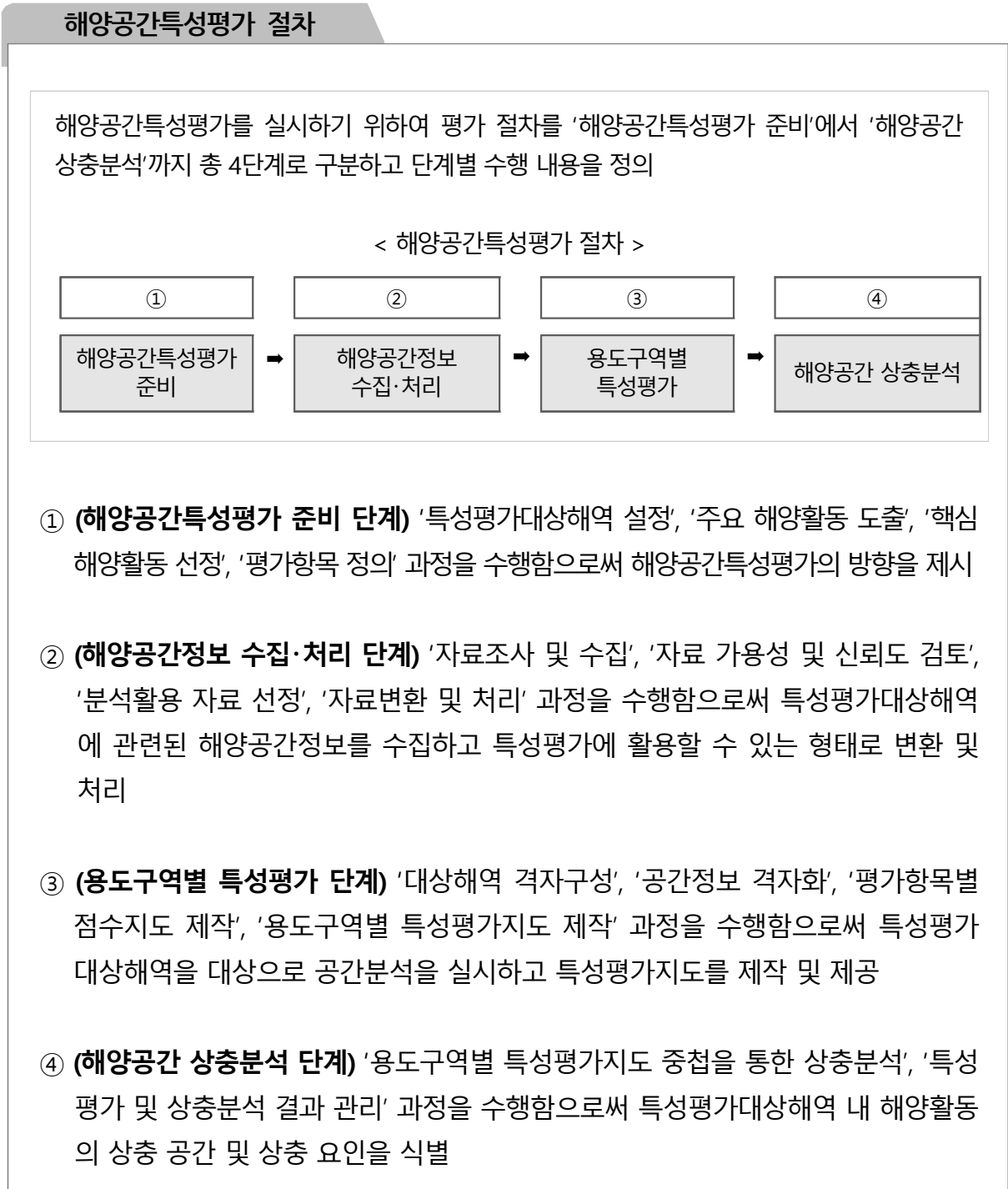
* 「해양공간계획법」제5조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제12조에 따라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위해서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제13조 제2항에서는 해양공간특성 평가에 대한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으로 정하도록 함

〈그림 3-1〉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 및 방법



- 특성평가의 절차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준비’에서 ‘해양공간 상층분석’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수행 내용을 정의

〈그림 3-2〉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



자료 :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6호)

2) 기초자료 조사·수집

-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 목록의 자료를 우선하여 조사·수집
-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관련 법정조사, 연구보고서, 해양공간정보, 행정통계 등을 검토

〈표 3-1〉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목록

구분	자료 및 정보	관련 기관
1. 기본 해양공간정보	가. 해도(海圖)	국립해양조사원
	나. 수심	
	다. 조위(潮位: 조수에 의한 해수면 높이) 변화	
	라. 조류·해류	
	마. 해역 경계	
	바. 인공·자연해안선	
	사. 약취저지조선	
	아. 지적 경계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 무인도서	해양수산부
	차. 해양환경관측 지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카. 배타적 경제수역 해역조사 자료	국립해양조사원	
2. 해양환경·생태	가. 수온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공단
	나. 염분	
	다. 갯벌	
	라.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마. 해양보호생물종	
	바. 해양생태도	
	사. 이상해역환경 정보	국립수산과학원
	아. 적조출현속보	
	자. 해파리출현 정보	
	차. 해역이용협의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지방해양수산청
	카. 해역이용영향평가서	
	타. 해양환경영향조사서	
	파. 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
	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너. 문화재 정보, 문화재유존정보 등		
3. 어업활동	가. 어항시설	해양수산부
	나. 어항개발계획	
	다.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허가·관리 자료	
	라.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마. 산란·서식지 조사 자료	
	바. 수출패류생산해역위생조사 자료	
	사. 바다숲·바다목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당 지방자치단체
아. 인공어초		

구분	자료 및 정보	관련 기관
	자. 천연해조장·잘피(해수에 완전히 잠겨서 자라는 식물) 조사 자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차. 연근해어획실적(소해구별·조업위치별)	해양수산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카. 선박패스(V-PASS) 장치 동적정보	해양경찰청
	타. 어선등록정보	해양수산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파. 양식장 시설 자료(위성영상판독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하. 수산자원관리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 면허어업권(양식장 등)	해양수산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4. 골재·광물	가. 골재자원 조사자료(부존량(賦存量) 등)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나. 골재유망단지분할도	
	다. 바다골재채취예정지	
	라. 해저광물개발구역	산업통상자원부
	마. 광업권(채굴권·탐사권)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바. 바다골재채취허가		
5. 해양에너지	가. 조류에너지	해양수산부
	나. 조력에너지	
	다. 파력에너지	
	라. 온도차에너지	
	마. 해상풍력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기상청
	바. 석유·천연가스·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자원 조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및 전원개발사업구역	
아. 전기사업허가구역		
6. 해양관광	가. 해수욕장	해당 지방자치단체
	나. 마리나 시설	해양수산부
	다. 낚시 활동 및 신고 정보	한국어촌어항공단, 해당 지방자치단체
	라. 어촌체험휴양마을	
	마. 여객선 항로 및 이용 자료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바.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구역	해양경찰청
	사. 동·서·남해안권 개발구역	국토교통부
	아. 해양관광진흥지구	
7. 항만·항행	가. 항만시설	해양수산부
	나. 항만기본계획	
	다. 선박운항정보	
8. 군사활동	해상사격 훈련구역 등	국방부, 국립해양조사원
9. 해양안전·관리	가. 해양시설 자료	해양수산부
	나. 해상교통 안전진단 등 정보	
	다. 공유수면매립 예정지	
	라. 바닷가실태조사 자료	
	마. 해양사고 자료	해양경찰청
	바.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해양수산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 : 위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바다와 바닷가에 설정된 이용·개발 및 보전·보호 구역 정보 등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특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음.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6호)

3) 평가항목

□ 평가항목 선정

- 특성평가의 평가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해양용도구역 분류와 연관성을 고려하여 구역별 해양활동을 확인하였음.
- 주요 해양활동을 확인하고, 개별 해양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해양자원의 부존 현황 및 가치, 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성,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현황, 해양공간의 미래 활용 수요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
 - (해양자원 분포·가치 및 미래 잠재 수요) 현재 관련 해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해양활동을 유인하는 자원이 분포하거나 가치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혹은 정보 확인
 - (해양공간 이용 및 활동 상태·수준) 조업 활동, 낚시 활동, 선박 이동 등 핵심 해양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 확인
 - (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성)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법정조사 혹은 공공기관 등의 자료를 토대로 검토
- 평가항목의 특성을 검토하여 해양공간정보 수집·조사의 대상과 가공의 방향을 정함.
 - 평가항목별 평가격자별 입력기준은 해당 자료의 연속성, 주기성 등을 고려
- 이에 따른 공간특성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3-2〉 특성평가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격자별 입력기준	용도별 종합점수
어업활동	• 연근해 어획량(1분단위)	5년 산술평균값, (0~1)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한 후 ③ 5점 척도로 등급화 함
	• 연근해 어선밀집도(1분단위)	5년 산술평균값, (0~1)	
	• 단위노력당 어획량 ¹⁹⁾ (평균 연도별 CPUE)	5개 등급(상위 2개)	
	• 어업 관련 보호구역	존재유무(유=1, 무=0)	
	• 양식장(면허어업권)	존재유무(유=1, 무=0)	
	• 어항	존재유무(유=1, 무=0)	
골재·광물 자원개발	• 광업권 등록(광업권 채굴권 탐사권)	존재유무(유=1, 무=0)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한 후 ③ 5점 척도로 등급화 함
	• EEZ 바다골재채취허가	존재유무(유=1, 무=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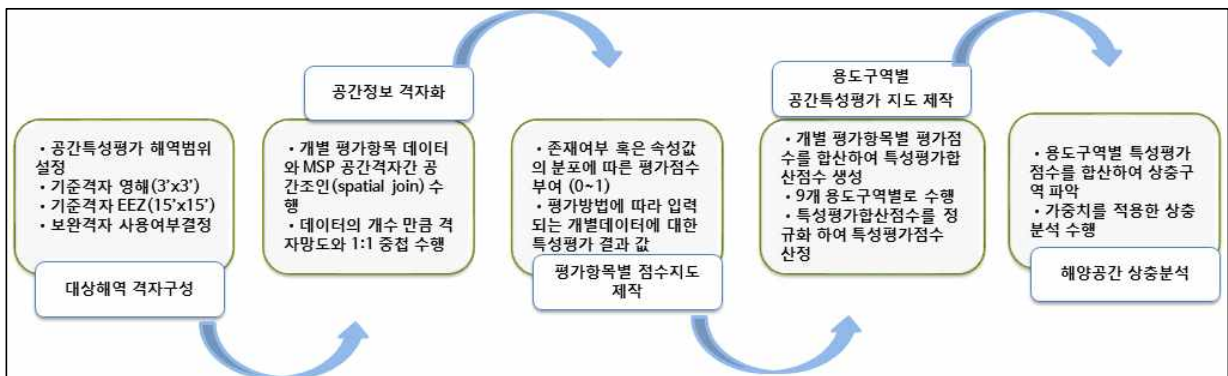
구분	평가항목	격자별 입력기준	용도별 종합점수
	• 골재유망단지 (유망단지 및 부존량)	존재유무(유=1, 무=0)	
	• EEZ 광물자원	존재유무(유=1, 무=0)	
에너지개발	• 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 등의 자원량	자원량 표준화(0~1)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
	• 발전단지 예정구역·사업 허가 구역	존재유무(유=1, 무=0)	
항만·항행	• 항만구역(무역항, 연안항)	존재유무(유=1, 무=0)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 ※ 항만 및 항행 활동과 관련한 평가항목은 법제도상 지정된 구역을 토대로 설정
	• 항로(항로 및 통항분리제도 등)	존재유무(유=1, 무=0)	
	• 정박지(정박지, 묘박지)	존재유무(유=1, 무=0)	
	• 교통안전특정해역	존재유무(유=1, 무=0)	
	• GICOMS 통항밀집구역	5개 등급(상위 2개)	
해양관광	• 해수욕장(해안)	존재유무(유=1, 무=0)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한 후 ③ 5점 척도로 등급화 함
	• 어촌체험마을(해안)	존재유무(유=1, 무=0)	
	• 마리나항만(해안)	존재유무(유=1, 무=0)	
	• 갯바위 낚시포인트(해안)	존재유무(유=1, 무=0)	
	• 선상 낚시포인트(해양)	존재유무(유=1, 무=0)	
	• 유어장	존재유무(유=1, 무=0)	
	• 레저구역	존재유무(유=1, 무=0)	
• V-PASS 기반 낚시어선 활동	5개 등급(상위 2개)		
환경·생태계 관리	• 갯벌	존재유무(유=1, 무=0)	① 격자별 입력기준에 따라 각각의 평가항목 점수를 주고 ② 이를 합산한 값을 표준화한 후 ③ 5점 척도로 등급화 함
	• 해조류, 해초류	존재유무(유=1, 무=0)	
	• 해양생물 출현 정보	존재유무(유=1, 무=0)	
	• 해양보호생물	존재유무(유=1, 무=0)	
	• 해양생태도	1등급=1/2등급=0.5	
	• 해양생물다양성지수(Delta+)	Good, Excellent, Moderate=1/ Bad, Poor, =0	
	• 연안·해양보호구역	존재유무(유=1, 무=0)	
	• 국립공원	존재유무(유=1, 무=0)	
연구·교육	• 영해기점 무인도서	존재유무(유=1, 무=0)	
	• 해양관측 부이 등	존재유무(유=1, 무=0)	
군사활동	• 군사 관련 법정구역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해상 사격훈련구역 등)	존재유무(유=1, 무=0)	
	• 군항의 보호수역	존재유무(유=1, 무=0)	
안전관리	•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존재유무(유=1, 무=0)	
	• 대형선박 및 낚시활동 상충구역	5개 등급(상위 2개)	

4) 해양공간특성평가

□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 특성평가대상해역에 대한 공간분석을 실시하고 특성평가지도를 제작 및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해역 격자구성’, ‘공간정보 격자화’, ‘평가항목별 점수지도 제작’, ‘용도구역별 특성평가지도 제작’ 과정을 수행하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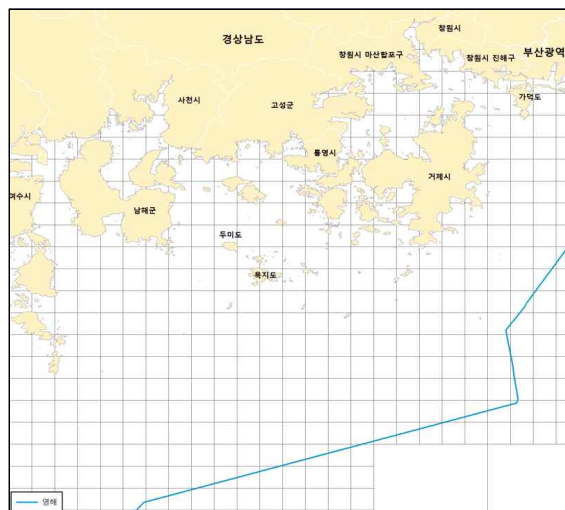
〈그림 3-3〉 용도구역별 특성평가



자료 :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6호)

- (대상해역 격자 구성) 공간분석 및 특성평가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영해기선 내측은 3'×3'(약 5km) 격자, 영해기선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까지는 15'×15'(약 25km) 격자인 일반 격자를 적용한 격자망도 제작

〈그림 3-4〉 일반격자(영해내측: 3'×3', 영해외측: 15'×15')만 적용한 격자 구성



19) 단위노력당 어획량은 총어획량을 총어획 노력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자원량 지수로서 사용됨

- (공간정보 격자화) 평가항목에 관련된 해양공간정보를 개별 격자의 속성정보로 입력하는 공간정보 격자화 과정을 수행
 - (평가항목별 점수지도 제작) 공간정보 격자화 결과로 입력된 속성정보의 통계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점수산정 기준을 정하되, 개별 평가항목별 점수는 0부터 1까지의 점수 이내에서 부여
 - (용도구역별 특성평가지도 제작) 각 용도구역별로 관련된 모든 평가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통합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격자망도 공간정보의 속성정보로 입력
- 특성평가를 위한 GIS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음.
- 평가 대상 자료를 대상 해양공간의 영역으로 데이터를 자르기
 - 평가 대상 항목의 속성 정보를 정의하고 편집
 - 격자망도와 해양공간정보 조인을 수행하고 개별 데이터에 대한 특성평가 결과값(H-Value)을 0과 1사이의 정규값으로 산정 후 평가항목별 점수지도 제작
 - 개별 데이터에 대한 특성평가 결과값(H-value)를 모두 합산하여 통합점수(T-value)를 산정
 - Min-Max 정규화 방법을 통해 통합점수(T-value)를 0과 1사이의 값으로 산정하여 최종값(G-value) 도출

* 최종값(G-value)을 5등급으로 구분 가능하며, 등급이 클수록 해당 핵심활동의 수준이 높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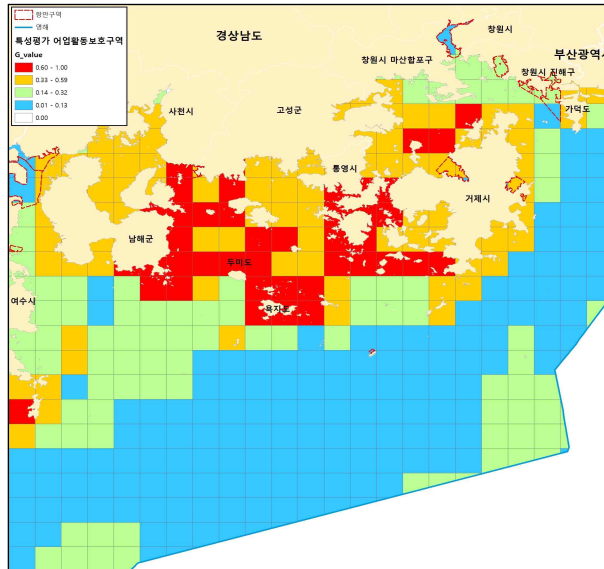
〈그림 3-5〉 특성평가를 위한 GIS 분석 과정



□ 어업활동보호구역 특성평가 결과

- 어업활동보호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연근해 어획량, 연근해 어선밀집도, 단위 노력당 어획량, 양식장(면허어업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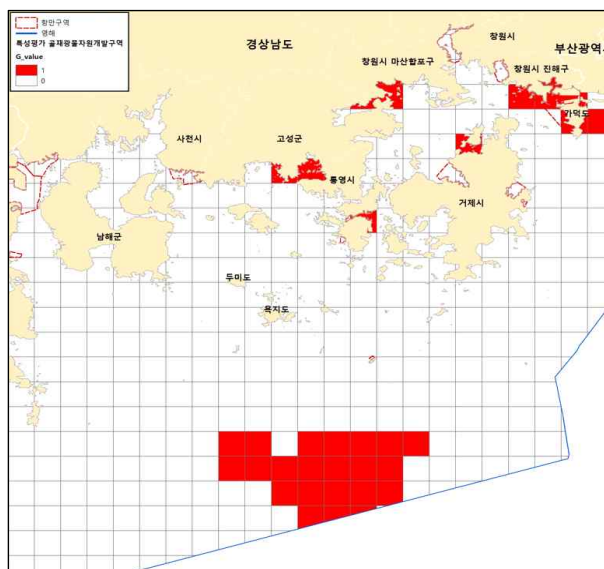
〈그림 3-6〉 경남 어업활동보호구역 특성평가 결과



□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광업지적단위광구(광업권, 채굴권, 탐사권), 골재채취단지, 바다골재 부존량 등

〈그림 3-7〉 경남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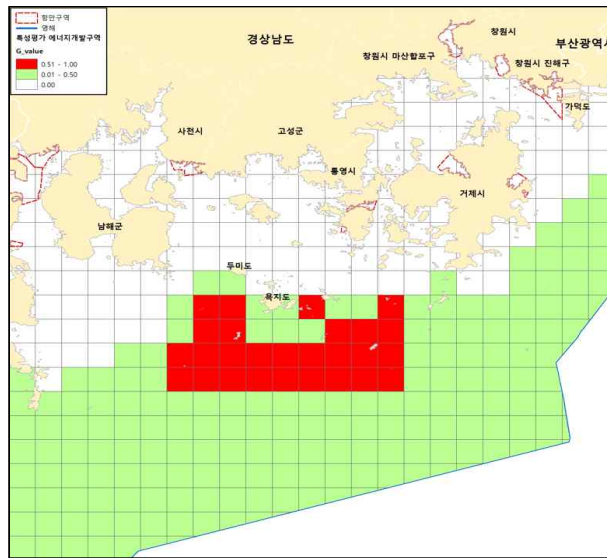


□ 에너지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 에너지개발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수요(통영 해상풍력 실증단지, 육지해상풍력등)
- 에너지자원 부존량(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풍속 6m/s 이상) 등의 자원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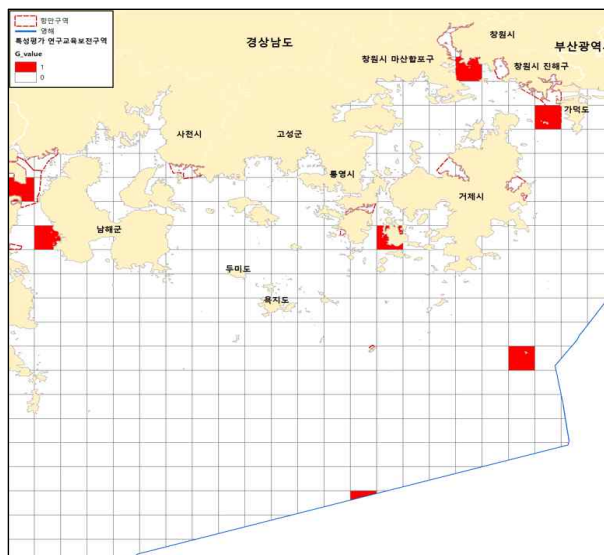
〈그림 3-8〉 경남 에너지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 연구·교육보전구역 특성평가 결과

- 연구·교육보전구역 공간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목록 : 해양관측 부이(국립해양조사원), 영해기점 무인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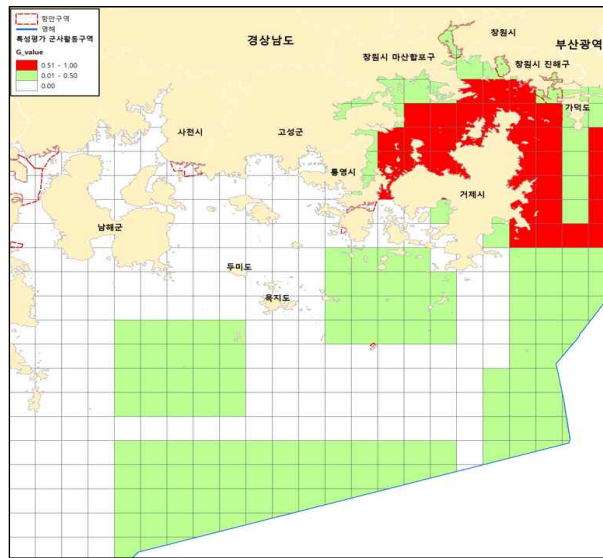
〈그림 3-9〉 경남 연구·교육보전 구역 특성평가 결과



□ 군사활동구역 특성평가 결과

- 군사활동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해상사격 훈련구역, 군항의 보호구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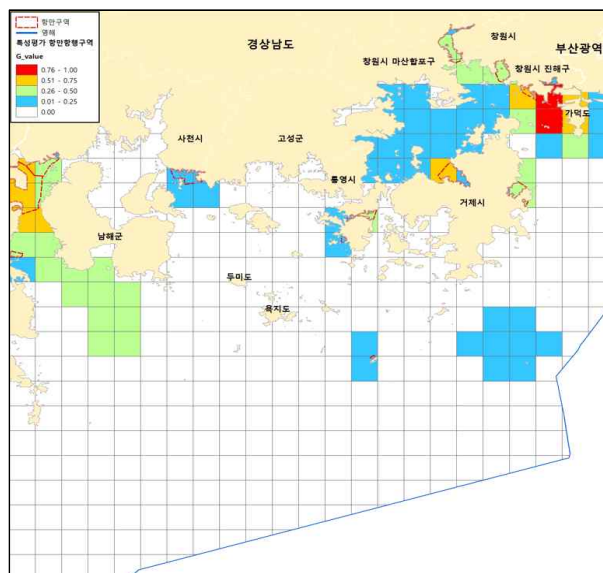
〈그림 3-10〉 경남 군사활동구역 특성평가 결과



□ 항만·항행구역 특성평가 결과

- 항만·항행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무역항 및 연안항 항만구역, 항로, 교통안전 특정해역, 통항분리제도, 정박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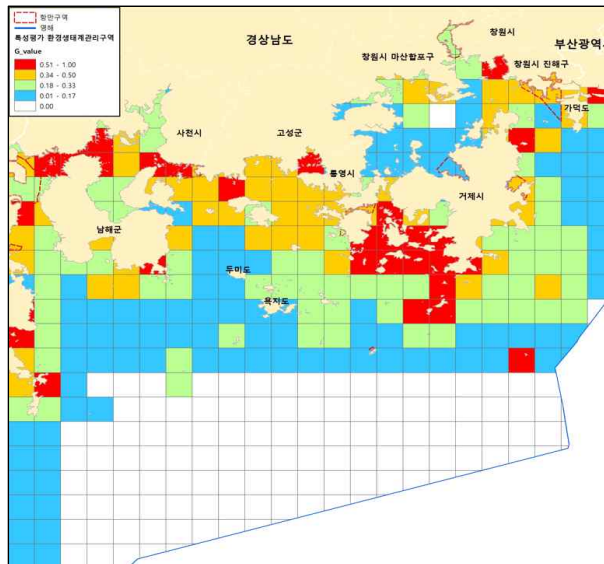
〈그림 3-11〉 경남 항만·항행구역 특성평가 결과



□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갯벌, 잔피, 해양보호생물 출현 정보, 해양 생태도, 해양생물다양성지수(DeltaPlus), 연안·해양보호구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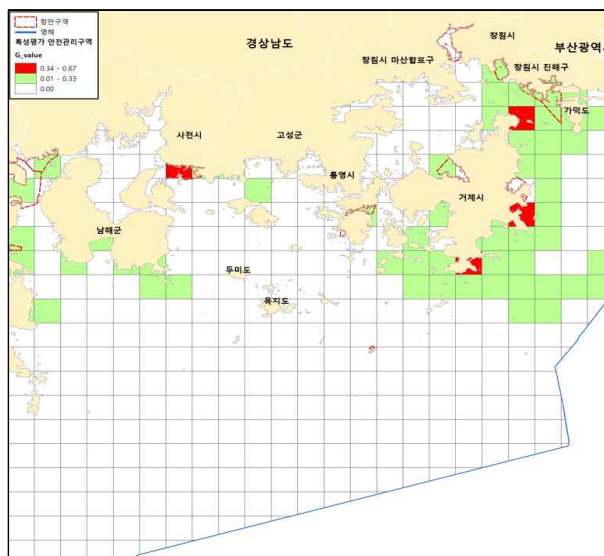
〈그림 3-12〉 경남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 안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 안전관리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대형선박 및 낚시활동상충 구역, 해수욕장 주변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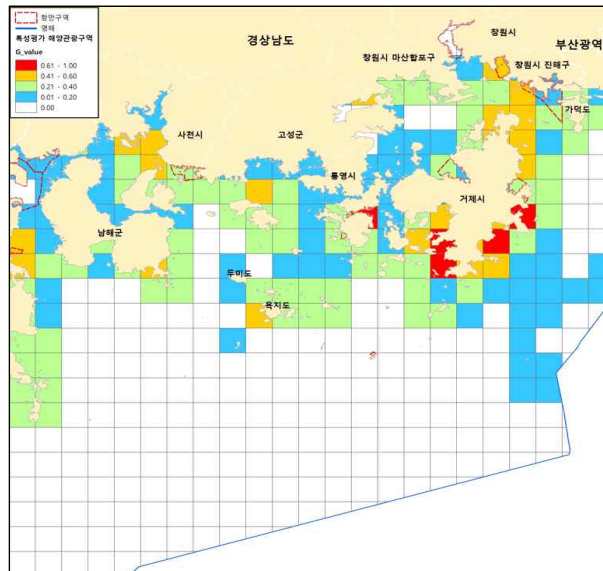
〈그림 3-13〉 경남 안전관리구역 특성평가 결과



□ 해양관광구역 특성평가 결과

- 해양관광구역 특성평가를 위한 데이터 : 해수욕장, 어촌체험마을, 마리나항만 및 시설, 갯바위 혹은 선상 낚시포인트, V-PASS 기반 낚시활동 분석 정보 등

〈그림 3-14〉 경남 해양관광구역 특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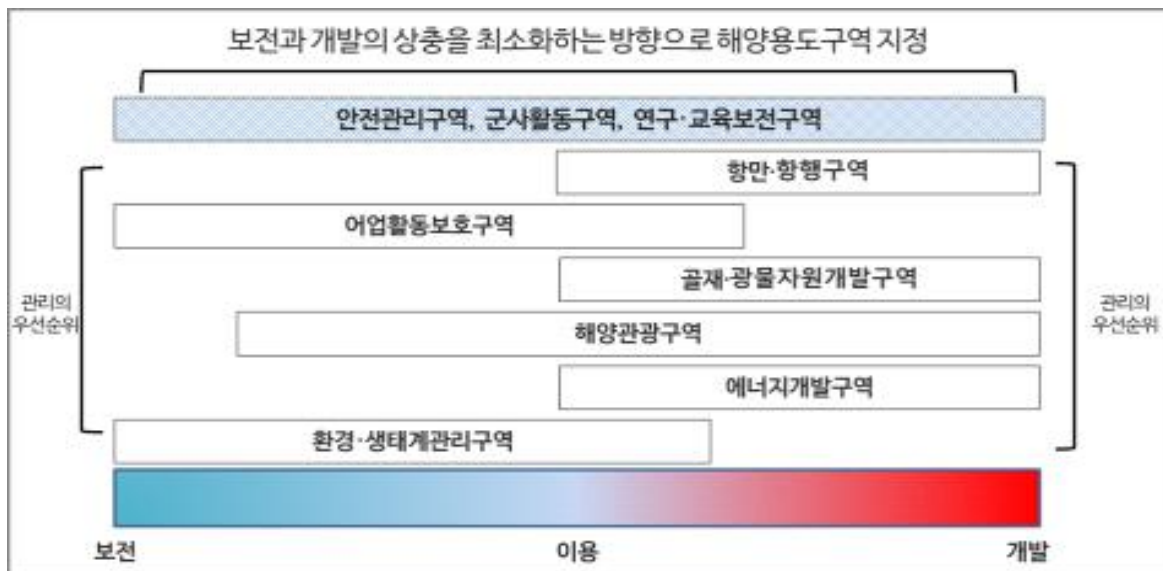


2.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및 구획 방법

□ 해양용도구역 개요

- (해양용도구역)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구역
 - 해양에서 지속가능한 인간활동을 위해 외부 영향에 대응하고, 해양자원의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한 구역
 - 해양에서의 인간 활동 간 이해상충·갈등을 완화하고, 이용과 가치의 우선순위를 규명
- (해양용도구역 구획·지정) 다양한 핵심가치가 존재하는 공간에 대해서 해양공간특성 분석, 상충 분석 및 비교(생태연결성, 정책수요 및 계획 등)를 통해 구획
 - 9개 해양용도구역은 중복되지 아니하게 지정하나, 3차원적이고 유동적인 해양의 특성 상 안전관리구역, 군사활동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은 중복되어 지정할 수 있음.
 - *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 (해양용도구역 관리) 지정된 개별 용도구역의 용도를 우선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관리
 - 해당 용도구역에서는 지정된 용도와 상충되지 않고 개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해양활동을 허용
 - 용도가 중첩되는 경우 자연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및 주변 해역의 이용·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
 - * 「해양공간계획법」 제12조제2항

〈그림 3-15〉 해양활동 별 보전·이용·개발 특성 개념도



□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 해양용도구역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현황(기존 구역 및 권한 설정), 해양생태특성 및 해양자원 분포, 현재 이용·활동 상태, 미래 이용 수요 등을 검토하여 설정
 - 이를 위해 가용한 데이터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해양공간의 상태 및 여건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 (특성평가) 특성평가 결과는 해양용도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정보임.
- (기존 구역 및 권한 설정) 현재 해양에서 일어나 이용·개발·보전 활동은 관련 개별 법률·제도에 따른 구역에서 이루어기 때문에 관련 설정 내용 검토
 - 기존 구역과 상호 호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 지정 혹은 고시된 구역을 고려
- (해양환경 및 생태계 특성) 지속가능한 해양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근간이 되는 생물학적, 생태적 특성 파악이 중요
 - 해양생물·생태적 특성²⁰⁾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서식지와 관련 프로세스를 식별하기 위한 해양학적 및 물리적 특성(수심, 해류, 퇴적물 등)을 함께 고려 가능
- (해양자원 분포)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자원,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하며, 이러한 자원이 위치한 공간과 분포를 확인
- (현재 이용·활동 상태) 어업, 항만·항행, 에너지 개발, 광물자원개발, 해양관광·레저, 군사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시·공간적 분포, 이용 강도, 환경영향 특성을 확인
- (미래 이용 수요 및 상황 예측) 용도구역 설정을 미래지향적 활동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향후 미래의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정 개입 없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때 미래 예측, 대안적 공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공간 변화예측 시나리오 분석 기술이 필요

20) CBD EBSA 선정 기준 : 고유성 및 희귀성, 생물종 생애주기에 있어서 중요성, 멸종위기종·감소종·서식지 중요성, 취약성·민감성·낮은 회복력, 생물학적 생산성, 생물학적 다양성, 자연성

〈표 3-3〉 해양용도구역 설정 시 고려사항

고려사항	의미
해양공간 특성평가	해양공간 및 자원을 활용하는 특성을 파악하고, 해양을 이용·보전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핵심 가치에 대해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용도구역 지정, 해양공간계획 수립 등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시 * (예) 어업활동, 해양레저·관광, 에너지 개발 등
법제적 현황	기존 법 체계와의 상호 호환성 및 해양공간계획법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 구역 고려 * (예) 각종 연안·해양보호구역, 법 시행 당시 법적 권한 설정이 이루어진 구역(「해양공간계획법」부칙 제3~4조) 등
해양생태계 특성	생태적 가치와 특정 생태학적 특성 고려 * (예) 해조류·조류 등 서식지, 산란지, 하구, 생물다양성이 높은 해양공간(Delta+) 등
현재 이용·활동	현재 이용과 활동을 토대로 경제적 기회를 유지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계 설정 * (예) 어선 어업, 양식, 해사채취, 항행, 관광 등
미래 이용 수요	법률에 근거하여 확정하였거나 확정가능성이 높은 해양이용·개발계획,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의 용도와 위치 및 규모 등 구체적 계획 등이 마련된 사업, 잠재적 수요와 활동을 평가하여 미래 이용기회를 식별 * (예) 항만·어항 개발계획, 해양에너지 관련 입지, 관광·레저 관련계획 등

○ (지정기준)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은 각 용도별 특성에 따라 필수적 고려사항*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 지정기준**에 의한 지정 또는 준하는 구역으로 구분

* 해당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요소, 현재 데이터가 미비하거나 미흡한 항목 이더라도(수산자원 분포, 해양에너지 분포 등) 향후 지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포함.

** 「법 부칙 경과조치에 따른 연안해양기능구(부칙 3조) 및 관련 개별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부칙 4조), 해당 용도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구역 등

- 現 수준에서의 과학적,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과정 반영(지역협의회 등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표 3-4〉 해양용도구역 지정기준

해양용도구역	해역 특성 및 이용현황	법정구역
어업활동 보호구역	가. 수산자원량 및 분포 나. 수산자원 산란지 및 서식지 다. 어업생산량 라. 면허어업구역 마. 인공어초 바. 조업 특성 및 분포	가. 「어촌·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나. 「수산업법」에 따른 기르는 어업(해조류양식어업, 패류 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 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종묘생산어업)에 해당하는 어장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라. 「수산자원관리법」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및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마. 그 밖에 어업활동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골재·광물 자원 개발 구역	가. 골재채취허가 지역 및 광물자원개발 지역 나. 골재채취 및 광물자원개발로 인한 해저 지형의 변화 및 해양생태계의 영향 다. 골재자원의 부존량 및 분포	가. 「골재채취법」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및 같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나. 「해저광물자원개발법」제14조에 따른 채취권 설정 구역 다. 「광업법」제3조제3호의 광업권(법률 제9982호 광업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이전에 설정된 것을 말한다) 또는 「광업법」제3조 및 제15조

해양용도구역	해역 특성 및 이용현황	법정구역
		<p>에 따른 채굴권 설정 구역 라. 그 밖에 골재채취 및 광물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p>
에너지 개발구역	<p>가. 에너지의 탐사·개발 활동을 위해 설치한 시설의 위치 및 범위 나. 조류, 조력, 파력, 해상풍력 등 해양에너지의 자원량과 분포 다.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 중 해양공간의 발전사업 허가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현황 라. 전력망의 송·배전 등 개발이용의 현황 및 여건</p>	<p>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에 정구역 나.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라. 그 밖에 에너지 탐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p>
해양관광 구역	<p>가. 자연자원 : 경승지, 해수욕장 등 나. 문화자원 : 지역축제, 어촌체험마을, 유원지 등 다. 휴양·레저자원 : 캠핑장, 유람선터미널, 수상레저사업장, 바다 낚시공원 등</p>	<p>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와 제2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나. 「어촌·어항법」 제18조에 따른 어촌관광구역 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8조에 따른 유선 영업구역 마.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영업구역 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해수욕장 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 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2에 따른 해양관광진흥지구 자. 그 밖에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p>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p>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 현황 및 분포 나. 갯벌, 하구, 해중경관 등 해양서식지 및 경관 다.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 라. 바닷새의 서식 현황 및 분포 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생태도 바. 해양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해양문화유산 및 해저유물 분포</p>	<p>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지역, 습지개선지역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복원사업 지역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및 제23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 무인도서 또는 준보전 무인도서의 그 주변해역 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갯벌관리구역 사.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의 주변해역 아.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중경관지구</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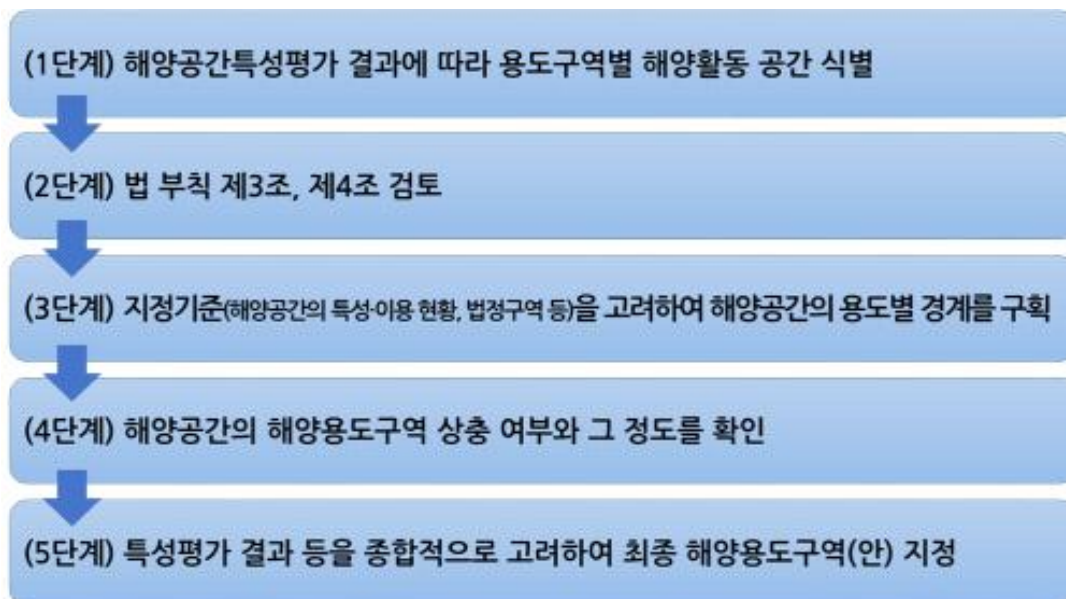
해양용도구역	해역 특성 및 이용현황	법정구역
		자.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학술적 가치가 높은 기념물(보호구역 포함)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카. 그 밖에 환경 및 생태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연구·교육 보전구역	가. 해양과학기지 및 관측부이의 위치 및 분포 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해양기상관측 등 연구·교육활동 다. 영해기점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 등 영토 관리 현황 라. 해양보호생물의 이동경로, 기후변화 등에 관한 연구·교육활동 마.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양자원 조사가 필요한 해역	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 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해역 다. 그 밖에 연구 및 교육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항만·항행 구역	가. 지정 항로의 위치 나. 어선·선박의 통항 특성 다. 선박 항행의 안전성	가.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나.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 예정구역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박지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항로 라. 「해사안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로, 제68조제1항에 따른 통항분리수역 마. 「해운법」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 바.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8조에 따른 도선 영업구역 사. 그 밖에 항만의 기능 유지 및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군사활동 구역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설치·운영 현황 나. 해상사격 등 군사 훈련 활동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해군기지 및 항공작전기지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구역 다. 그 밖에 군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안전관리 구역	가. 과거 지진·폭풍·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越流)하여 침수,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연안침식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바닷가 및 간석지 다. 항해 또는 정박 중 다른 선박·시설과 부딪히거나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해역 라. 조력 및 화력발전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이 설치된 해역 및 그 주변 해역 마. 석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 및 최근거리로 인접한 바닷가	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 다. 「전원개발촉진법」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라. 「수상레저안전법」제25조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마. 그 밖에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1-64호)

□ 해양용도구역 구획 및 지정

- 해양용도구역 지정은 구획과 상충·조정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해양용도구역의 구획은 해양공간의 특성 및 이용 현황, 법정구역(타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 등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해양공간의 용도별 경계를 확인하는 것임.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은 해양용도구역을 구획한 이후 해양용도구역 상호 간의 양립가능성 및 상충여부 등을 비교·분석하고, 조정 과정을 거쳐 구역을 정하는 것임.
-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

〈그림 3-16〉 해양용도구역 지정 절차



- (1단계) 특성평가 결과에 따라 용도구역별 해양활동 공간 식별
- (2단계) 「해양공간계획법」 부칙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구역을 우선적으로 검토
 - 법 시행 시점에 「연안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기 지정 구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나, 개별 법률에 따른 구역이 해제되거나 구역에서 활동 허가 기간이 지나면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특성평가 등을 토대로 해양용도구역으로 변경
- (3단계) 해양공간의 특성 및 이용 현황, 법정구역(타 법률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 등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대상 해양공간의 용도별 경계를 확인
- (4단계) 해양공간의 해양용도구역 상충 여부와 그 정도를 확인²¹⁾

- 둘 이상의 용도구역에 해당되거나 해양활동이 중첩된 경우, 특성평가 결과값이 높은 용도를 다른 용도에 우선하여 정할 수 있음.
 - 다만, 각 특성평가 결과값이 동일하여 해양용도구역 선택이 곤란한 경우 주변 해양공간의 보전 및 이용·개발 현황, 해양 활동 지속가능성, 지역협의회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할 수 있음.
- (5단계) 특성평가 결과와 대상 해양공간의 특성·현황 및 현안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해양용도구역(안) 지정

〈표 3-5〉 「해양공간계획법」의 해양용도구역과 「연안관리법」의 연안해역기능구 비교

근거	해양용도구역	연안해역기능구
「해양공간계획법」 부칙 제3조 (연안해역기능구에 관한 경과조치)	어업활동보호구역	어항구, 어장구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광물자원구
	에너지개발구역	산업시설구
	해양관광구역	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수질관리구, 해양환경복원구,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해양문화자원보존구, 재해관리구
	연구·교육보전구역	해양조사구
	항만·항행구역	항만구, 항로구
	군사활동구역	군사시설구

〈표 3-6〉 해양공간계획법 시행 시 기존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의 경과조치

근거	해양용도구역	기존 법률에 따른 구역, 지역 등
「해양공간계획법」 부칙 제4조 (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굴권 설정 구역(「광업법」 제9조의2제2호) • 골재채취 예정지(「골재채취법」 제21조의2제1항) • 골재채취단지(「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 • 채취권 설정 구역(「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환경·생태계관리구역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보호구역(「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습지보호지역(「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항만·항행구역 (7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구역(「항만법」 제2조제4호) • 신항만건설예정지역(「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제1항) • 정박지·항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제11호) • 교통안전특정해역·항로·통항분리수역(「해사안전법」 제1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68조제1항)
	군사활동구역(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

21)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해양용도구역의 상충 및 조정)

□ 용도구역 조정의 기본방향

- 둘 이상의 용도구역에 해당되어 중첩되는 경우, 특성평가 결과, 법·제도적 기준(법률에 따른 규제 및 조장 사항 포함), 해양환경·생태 특성, 주변해역의 이용·개발 현황과 미래 보전·이용·개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를 선택
 - 용도를 선택하기 곤란한 경우, 지역협의회, 전문가 자문,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 등을 활용 가능
 - *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 방법과 절차는 정부에서 R&D 사업으로 연구 중에 있음.
- 유보 해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해양공간에 보전, 이용, 개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밀 특성평가와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
- 안전관리구역, 군사활동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복되어 지정될 수 있음. 이 3개 용도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첩 시 조정이 필요 없음.
 - 안전관리구역은 해양활동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개별 해양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타 용도구역과 중복되어 지정할 수 있음.
 - 군사활동구역은 국가의 안보, 군사시설·중요시설의 보호, 군사 훈련을 위하여 설정한 해역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타 용도구역과 중복되어 지정할 수 있음.
 - 연구·교육보전구역은 보전 가치와 생태적 가치가 높은 환경으로 시험, 관찰, 샘플링 등 연구를 진행하며 향후 해양교육 측면에서 보전이 필요한 구역을 말함. 주로 해양 관측시설, 해양보호생물종의 이동경로 및 회유 경로, 산란지, 서식지 등이 이에 해당함.
- 9개 해양용도구역 중 3개 해양용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중복 용도구역에 해당하는 공간의 조정 방향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7〉 항만·항행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항만·항행구역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항만·항행구역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항만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 연안해역기능구 (어항구, 어장구)	특성평가 (3등급 이상), 정밀어획량분석정보	항로(지정항로, 통항 분리제도 등), 교통 안전특정해역,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			○	어업활동 ²

항만·항행구역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항만·항행구역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항만구역	
		○		○	항만항행
환경·생태계관리 구역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문화재관리구역, 특정도서, 무인도서(절대보전), 연안해역기능구	특성평가 (3등급 ¹ 이상)	항로(지정항로, 통항 분리제도 등), 교통 안전특정해역, 정박 지	무역항, 연안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			○	환경생태
		○		○	항만항행
해양관광구역	해수욕장, 마리나항만 및 시설, 연안해역기능구(레저 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어촌관광구역	특성평가(2등급), 낚시활동구역	항로(지정항로, 통항분 리제도 등), 교통안전 특정해역,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			○	해양관광
		○		○	항만항행
골재·광물자원개 발구역	광업권,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예정지, 골재채취 설정구역 등	특성평가 (부존량), 기 채취해역	항로(지정항로, 통항 분리제도 등), 교통안 전특정해역,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	○		항만항행
	○			○	골재광물
		○		○	항만항행
에너지개발구역	연안해역기능구(산업시설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등	특성평가(해양 에너지자원 부존 량 등), 발전사업 허가현황 등	항로(지정항로, 통항 분리제도 등), 교통안 전특정해역, 정박지	무역항, 연안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항만항행 ³
		○	○		항만항행
	○			○	에너지
		○		○	항만항행

주 : 1) 3등급 이상의 해양공간은 특성평가 결과 최종값을 5등급으로 구분 시 3, 4, 5 등급에 해당하는 격자임.
 2) 한정 면허어업의 경우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면허기간종료 후 항만·항행구역으로 용도변경이 필요.
 3) 법정구역이 중첩된 경우 해양공간의 특성, 핵심활동 여부 및 정도, 관리 여건, 주변 활동 등을 고려하여 최종 용도를 설정

〈표 3-8〉 환경·생태계관리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환경·생태계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어업활동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 연안해역기능구(어항구, 어장구)	특성평가(3등급 이상), 정밀어획량분석 정보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문화재관리구역, 특정도서, 무인도서(절대보전), 연안해역기능구	특성평가(3등급 이상)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어업활동
		○	○		환경생태
	○			○	어업활동
		○		○	환경생태
해양관광구역	해수욕장, 마리나항만 및 운영시설, 연안해역기능구(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어촌관광구역	특성평가(2등급), 낚시활동 구역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문화재관리구역, 특정도서, 무인도서(절대보전), 연안해역기능구	특성평가(3등급 이상)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해양관광
		○	○		환경생태
	○			○	해양관광
		○		○	환경생태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광업권,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예정지, 골재채취 설정구역	특성평가(부존량), 기 채취해역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문화재관리구역, 특정도서, 무인도서(절대보전), 연안해역기능구	특성평가(3등급 이상)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정밀용도구획 필요
		○	○		환경생태
	○			○	골재광물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에너지개발구역	연안해역기능구(산업시설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등	특성평가(해양 에너지자원 부존량 등), 발전사업 허가현황 등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문화재관리구역, 특정도서, 무인도서(절대보전), 연안해역기능구	특성평가(3등급 이상)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환경생태 ¹
		○	○		환경생태
	○			○	에너지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주 : 에너지 활동이 주변해역에 인접해역에 미치는 영향 및 상호작용 면밀히 검토 필요

〈표 3-9〉 어업활동보호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어업활동보호구역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어업활동 구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해양관광구역	해수욕장, 마리나항만 및 운영시설, 연안해역기능구 (레저관광구, 해중문화 시설구, 해수욕장구), 어촌관광구역	특성평가(2등급), 낚시활동구역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 연안해역기능구 (어항구, 어장구)	특성평가 (3등급 이상), 정밀어획량분 석정보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어업활동
		○	○		어업활동
	○			○	해양관광
		○		○	어업활동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광업권,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예정지, 골재채취 설정구역	특성평가 (부존량), 기 채취해역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 연안해역기능구 (어항구, 어장구)	특성평가 (3등급 이상), 정밀어획량분 석정보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어업활동 ¹
		○	○		어업활동
	○			○	골재광물
		○		○	특성평가결 과비교검토
에너지개발구역	연안해역기능구(산업시설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등	특성평가(해양 에너지자원 부존량 등), 발전사업 허가현황 등	수산자원관리수면, 보호수면, 면허어업, 연안해역기능구 (어항구, 어장구)	특성평가 (3등급 이상), 정밀어획량분 석정보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어업활동 ²
		○	○		어업활동
	○			○	에너지
		○		○	특성평가결 과비교검토

주 : 1) 법정구역이 중첩된 경우 각 구역의 핵심활동 여부 및 정도, 관리 여건, 주변 활동 등을 고려하여 최종 용도를 설정함. 경남의 경우 채굴권 설정 광구 내 면허를 받은 어장이 있는 경우, 해양공간에서 채굴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첩된 공간의 최종 용도를 어업활동으로 하였음.

2) 에너지 활동이 주변해역에 인접해역에 미치는 영향 및 상호작용 면밀히 검토 필요

〈표 3-10〉 해양관광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해양관광구역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해양관광 기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골재·광 물자원개 발구역	광업권,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예정지, 골재채취 설정구역	특성평가 (부존량), 기채취해역	해수욕장, 마리나항만 및 운영시설, 연안해역기능구 (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어촌관광구역	특성평가 (2등급), 낚시활동구역	
중복 용도구역 의 특성	○		○		골재광물 ¹
		○	○		해양관광
	○			○	골재광물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문화서비스)
에너지 개발구역	연안해역기능구(산업시설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등	특성평가(해양 에너지 자원 부존량 등), 발 전사업 허가현황 등	해수욕장, 마리나항만 및 운영시설, 연안해역기능구 (레저관광구, 해중문화시설구, 해수욕장구), 어촌관광구역	특성평가 (2등급), 낚시활동구역	
중복 용도구역 의 특성	○		○		에너지 ¹
		○	○		해양관광
	○			○	에너지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생태계서비스)

주 : 법정구역이 중첩된 경우 각 구역의 핵심활동 여부 및 정도, 관리 여건, 주변 활동 등을 고려하여 최종 용도를 설정함. 또한 해당 해양공간을 관리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표 3-11〉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과 중복하는 경우 조정 방향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중복 용도구역	중복 용도구역 특성		골재·광물 기획 기준		최종용도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법·제적 기준	특성평가 결과	
에너지개발 구역	연안해역기능구(산업시설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등	특성평가(해양에너지 자원 부존량 등), 발전사업 허가현황 등	광업권,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예정지, 골재채취 설정구역	특성평가 (부존량), 기채취해역	
중복 용도구역의 특성	○		○		에너지 ¹
		○	○		골재광물
	○			○	에너지
		○		○	특성평가결과 비교검토 (생태계서비스)

주 : 법정구역이 중첩된 경우 각 구역의 핵심활동 여부 및 정도, 관리 여건, 주변 활동 등을 고려하여 최종 용도를 설정함. 또한 해당 해양공간을 관리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 용도구역 관리

- 용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내용은 개별 용도구역에서 시·공간적으로 적절한 활동을 명시하거나 용도구역에 적합한 활동에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조정·관리할 수 있는 방안 및 조치 사항을 제시
 - 용도구역 설정 이후에는 용도를 우선 증진시키는 방안 및 조치 사항
 - 해양용도구역 내 인간 활동의 수용 가능성 수준과 관리 조치 등
 - 해양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활동(해양시설²²) 설치 및 고정적 활동)과 그 외 활동은 용도구역별 특성에 따라 관리 방식을 달리 적용
 - 각 용도구역에서는 지정된 용도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해양활동을 허용하되, 용도 중첩 시 관리의 우선순위를 두어 관리할 것
 - 해당공간은 별도의 관리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주변 해역의 이용 및 보전 현황, 해양공간 이용 밀집도, 해양공간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 *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28조(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용도 중첩 시 중첩공간 도출 및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음.
 - (1단계 : 중첩 공간 확인) 용도구역 자료 특성별 분류 구분, 용도구역별 1:1 중첩 분석을 통한 중첩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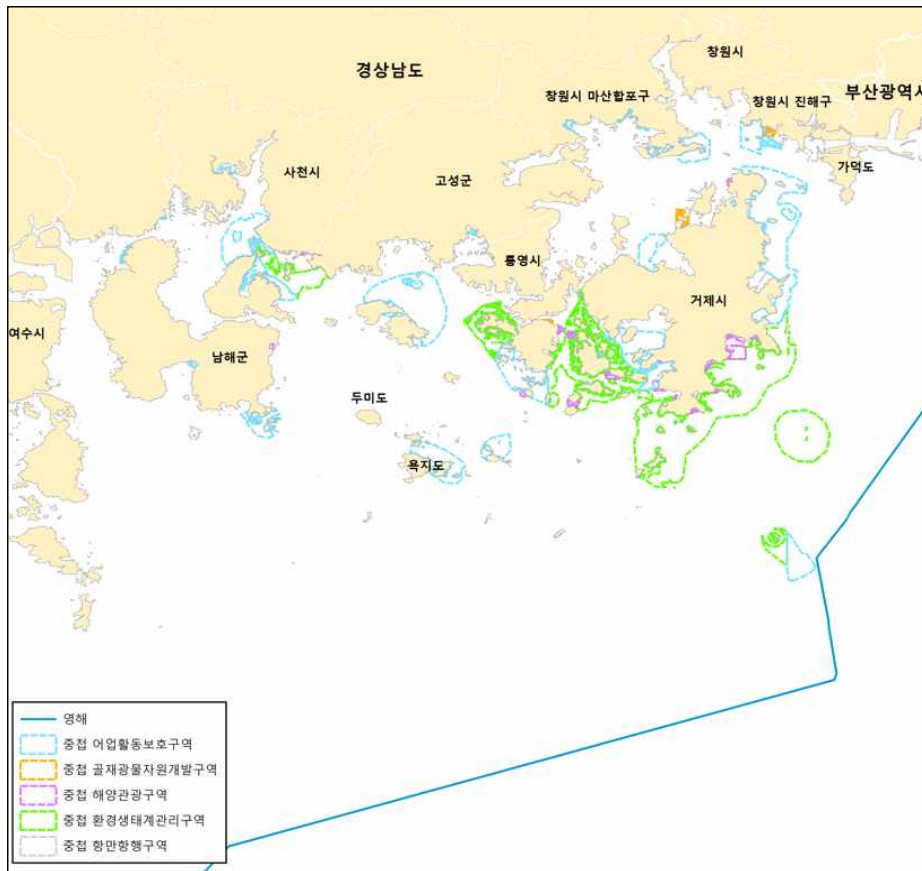
〈그림 3-17〉 용도구역별 1:1 공간분석을 통한 중첩 공간



22) 「해사안전법」제2조 15. “해양시설”이란 자원의 탐사·개발,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계류·수리·하역, 해상주거·관광·레저 등의 목적으로 해저에 고착된 교량·터널·케이블·인공섬·시설물이거나 해상부유 구조물로서 선박이 아닌 것을 말함.

- (2단계 : 중첩 공간 중 관리가 필요한 공간 선정) 관리구역 도출
 - ① 공간의 지역성 : 해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대상구역의 최종 결과를 도출함
 - ② 관리의 실효성 :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코드 부여
 - ③ 정보의 신뢰성 : 데이터 해상도 및 기술력

〈그림 3-18〉 용도구역별 관리구역 도출 결과



- (3단계 : 중첩 공간의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
 - ① 주변 해역의 이용 및 보전 현황
 - ② 공간 이용의 밀집도 : 특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우세한 용도를 우선하여 관리
 - ③ 공간관리의 효율성 : 용도구역 중 보전과 이용의 공간특성평가 값이 동일한 수준일 경우 보전의 용도를 우선하여 관리
- * 예) 환경·생태계관리구역과 어업활동보호구역의 특성평가 값이 동일한 수준일 경우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이 우선함.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 서식지의 유지가 우선이 되어야 어업활동 등 해양활동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임.

3.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 해양용도구역 지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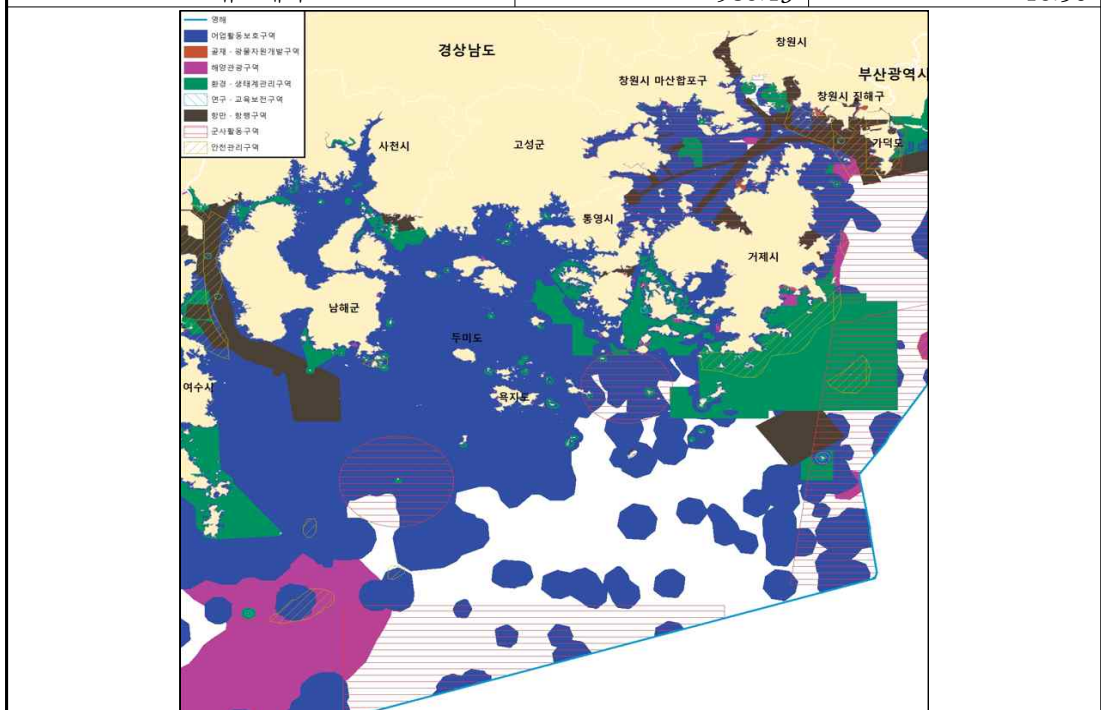
○ 대상 해양공간의 면적은 총 5,975.52km²

*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항만구역 등에 대한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변경하고, 그 외 해양공간 (영해 내)은 시·도지사가 수립·변경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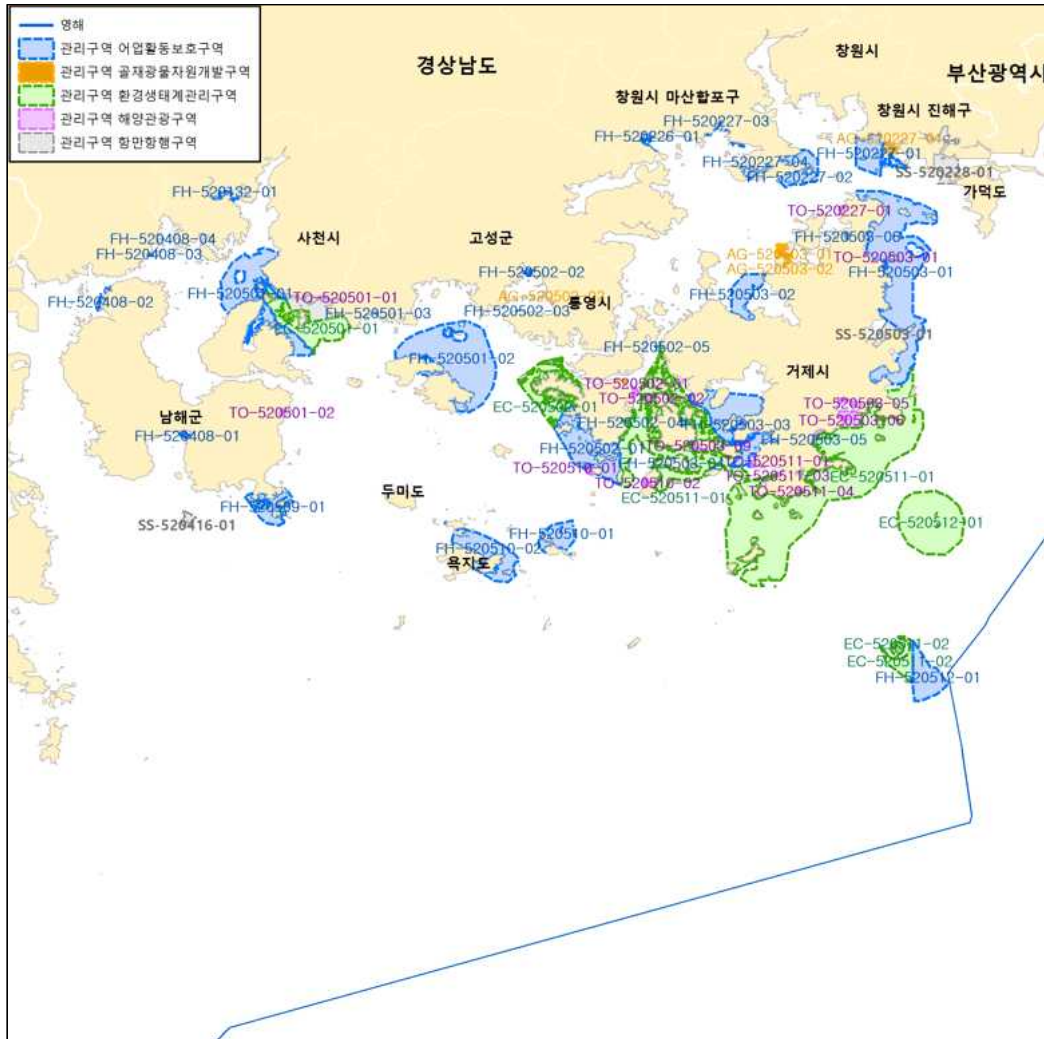
○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등 8개 용도구역으로 구분(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공간 없음)

* 유보해역 : 특성평가를 수행한 지역이라도 특정 해양이용 행위의 활동 밀도가 낮거나, 해양환경, 생태, 사회, 경제 데이터의 양이 적어 해양용도구역 설정의 실익이 없는 공간(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제2조제7호)

경남		면적(km ²)	비중(%)	
합 계		5,975.52	100.00	
해양 용도 구역	어업활동보호구역	3118.24	52.18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4.44	0.07	
	에너지개발구역	-	-	
	해양관광구역	38.93	0.65	
	환경·생태계관리구역	791.94	13.25	
	항만·항행구역	416.79	6.97	
	용도 중첩 가능	연구·교육보전구역	6.83	0.11
		군사활동구역	1,991.51	33.33
		안전관리구역	225.19	3.77
	(중첩)		(1,604.48)	(26.85)
소계		4,989.39	83.50	
유보해역		986.13	16.50	



〈그림 3-19〉 해양용도구역 별 관리구역 현황



1) 어업활동보호구역

□ (정의)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을 보호·육성하여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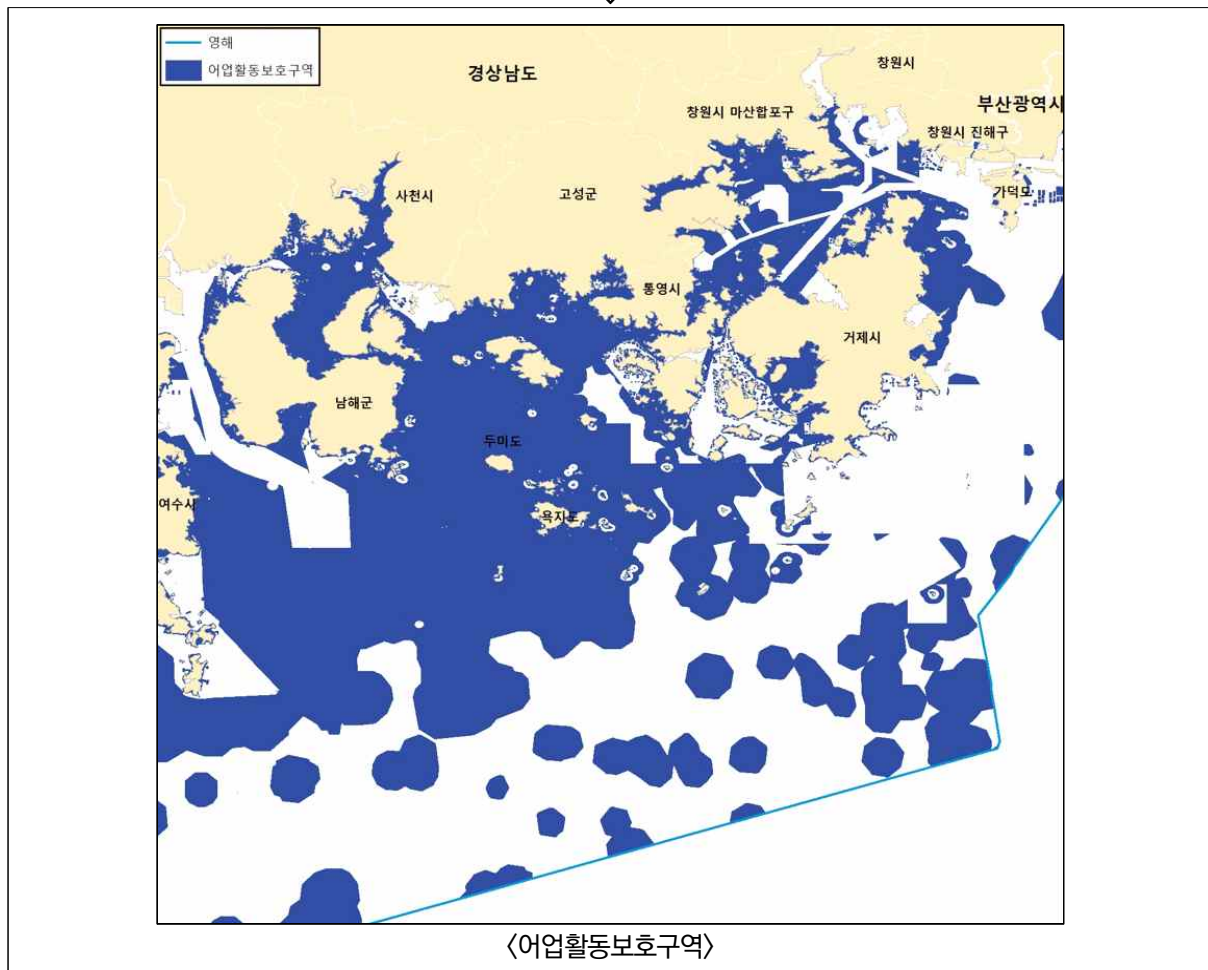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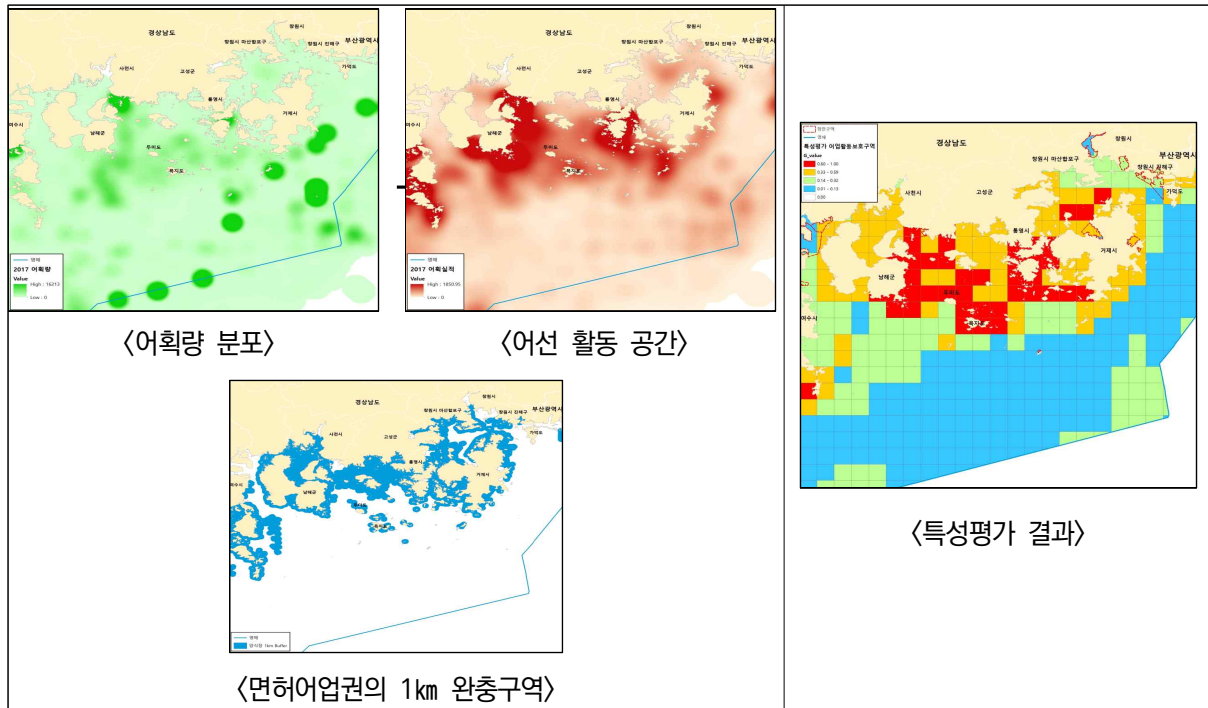
- 마을어업, 양식업 등을 위한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역
- 어업생산량이 높거나, 조업 활동이 활발하여 어업활동의 관리가 필요한 해역
- 수산자원 조성, 수산생물의 산란지 혹은 서식지의 보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해역
- 어항 건설과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해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수산자원의 과학적 관리방법을 적용하여 수산자원 조성 및 산란지·서식지 보호에 따른 생산량 지속으로 지역 경제적 이익 증진
-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보장하되, 수산자원의 고갈을 유발할 수 있는 어업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 조업활동의 분포와 어획량을 확인할 수 있는 조업 위치 기반 연근해 어획량, 어업 밀집도(V-PASS) 정보와 마을어장 및 양식장(면허어업)을 고려하여 설정
 - 특성평가 결과 3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격자를 우선적으로 포함.
 - 잡는 어업 활동 공간은 조업 위치에 기반한 어획량 분포와 어선 밀집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르는 어업 활동 공간은 면허어업권이 분포한 공간으로 확인
 - 어업활동보호구역 구획 시 마을어업 및 양식업 보호를 위해 면허시설 주변 해역 1km를 포함하여 배분



□ 용도 상충 조정

-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 보호수면 및 수산자원관리수면, 수출용패류생산지정해역 등 수산자원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구역으로 기 지정
- 국립공원의 경우 보전 특성을 나타내는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통영 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및 보호수면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 수산자원관리수면과 보호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은 수산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수산자원 조성, 타 행위 제한 등)을 정하므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용도를 정하여 관리



〈해상국립공원 내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 현황〉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자유로운 어업활동을 보장하되, 수산자원 산란·서식 환경 보호와 수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활동 권장
 - 구역의 관리 목표와 상충·경합이 발생하는 활동(에너지개발 등)은 제한되며, 불가피한 활동의 경우 최소화 혹은 영향 완화
 - 인공어초,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설치 허용 등
 - 주요 지형·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연구·교육, 레저·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등 양립가능한 경우를 허용하고, 지역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허용
 - 수산자원 서식·산란지 등의 입력이나 위협 활동(채취·채굴,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등) 제한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동 구역 대중성 어종의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의 모니터링 및 위협 요인 분석
 - 멸치, 붕장어 아귀 등 어종의 주요 서식지·산란지의 위협 요인(수산자원 고갈, 골재채취, 기후변화, 바다오염 및 쓰레기 등) 분석 및 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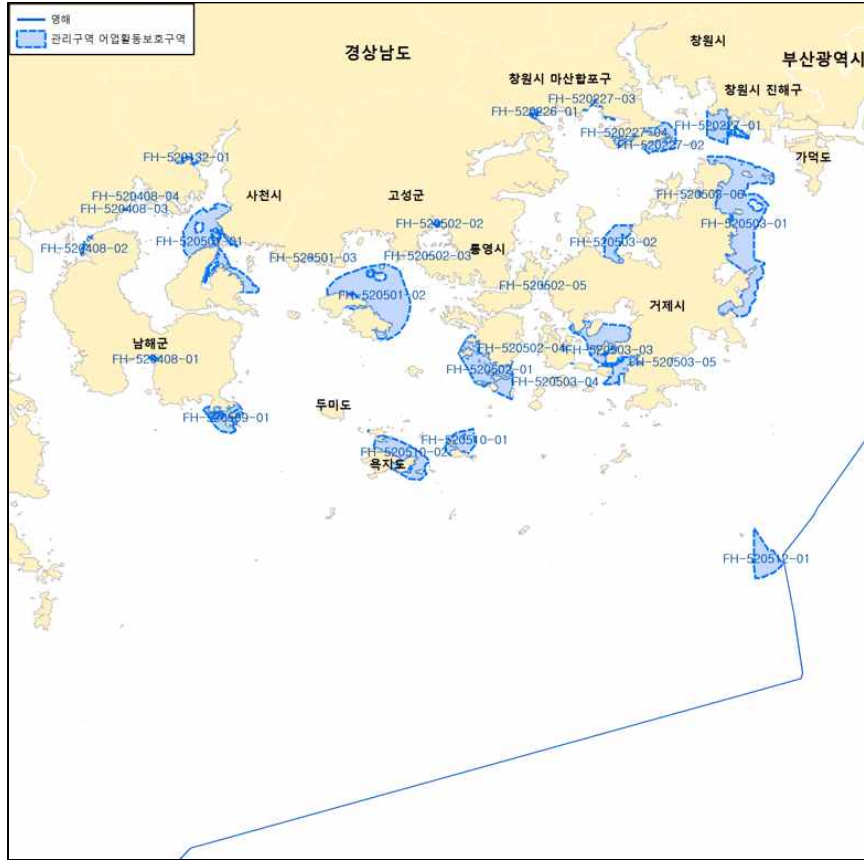
- 인공어초, 바다목장 주변 해역의 낚시 활동 모니터링 및 공간관리 수단 마련
- 해상국립공원 내 양식어업 및 마을어업 어업권 설정 해역은 어업활동의 유지와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기능을 우선으로 두어 관리
 - 수산자원의 생애주기별(산란 및 서식 환경 등), 어종별 공간 분포 조사

- 어획량 변화가 심한 해역(영해 외측 소해구)의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항만·항행구역 내 수산자원 모니터링 등
- 어업과 상충하는 이용행위 규명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 진행
 - 계획 변경 수요와 행위 상충해결을 위한 어업지역, 생산종, 생산량 정밀 자료 확보
- 수산자원 회복 정책을 실현*하는 수산자원 조성 사업 추진
 - * 수산자원 유형별 맞춤형 관리 방안(해양수산부, 2016) : 기후변화형 어종(멸치, 오징어, 삼치 등)은 매년 5%씩 어획량 늘려나갈 계획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인공어초, 바다목장 주변해역에서의 과도한 낚시 활동을 관리하고, 필요시 수산자원관리수면 등 지정 검토
- EEZ 어업활동 공간의 어종, 생산량 정밀 자료 확보
-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해양관광 및 환경생태 수요가 높으므로 조화로운 해양이용을 위한 관리 필요
 - 경남연안에는 낚시활동 밀집구역, 해수욕장이 다수 분포하므로 어업활동과 관광활동의 상충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 필요
 - 넓은 면적의 국립공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정도서,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등 환경생태 특성이 높은 해역 인근에서 어업활동이 활발하므로 관리 필요
 - 어업활동 및 어획량이 높은 해역이 대형선박 통항 밀집해역과 중첩되는 경우 별도의 안전관리 필요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경남 해역에는 어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해상국립공원, 특정도서 등이 다수 분포하며 해양레저, 낚시 등 관광활동의 밀도가 높으므로 관리 필요
 - 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의 39.50%가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조업 및 양식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환경·생태계 특성이 높은 구역이 중첩하는 구역이 다수 존재
 - 또한 우수한 해양환경·생태계에 기반하여 해양레저, 낚시 등 관광활동도 활발하므로 어업활동보호구역 관리 시 관광활동에 대한 고려 필요

〈그림 3-20〉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구역



〈표 3-12〉 어업활동보호구역 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구역	구분	면적(km ²)	중첩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관리코드				
어업활동 보호구역 (28개소)	FH-520132-01	1.06	환경생태 (해양보호생물 출현)	①어업활동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광포만 내 갯잔디 군락지, 철새서식지 및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분포
	FH-520226-01	1.10	환경생태 (해양보호생물 출현)	①어업활동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창포만 내 갯계, 거머리말 등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분포
	FH-520227-01	12.01	항만항행 (항만구역) 환경생태 (해양보호생물 출현) 해양관광 (어촌뉴딜/낙시활동)	①어업활동 ②항만항행 ③환경생태 ④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무역항 주변으로 대형선박 통항 <input type="checkbox"/> 진해구 합포마을, 수지마을 인근 잔피 서식지 분포 <input type="checkbox"/> 낚시활동이 활발, 명동항 등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존재

구분		면적(km ²)	중첩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FH-520227-02	10.65	해양관광 (낚시활동)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낚시활동 밀집구역이나 주변에 항로 존재 선박 통항에 따른 안전관리 필요
	FH-520227-03	0.76	환경생태 (해양보호생물 출현)	①어업활동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인근 해역에 거머리말(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분포
	FH-520227-04	2.69	환경생태 (해양보호생물 출현)	①어업활동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구산면 내만에 갯계, 기수갈고동 등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분포
	FH-520227-05	0.01	해양관광 (어촌뉴딜)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주도항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존재
	FH-520408-02	0.66	환경생태 (해양보호생물 출현)	①어업활동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인근 해역에 거머리말(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분포
	FH-520408-03	0.16	해양관광 (어촌뉴딜)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중평항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존재
	FH-520408-04	0.01	해양관광 (어촌뉴딜)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숭상항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존재
	FH-520501-01	35.94	환경생태 (국립공원/해양보호생물) 해양관광 (어촌뉴딜/낚시활동)	①어업활동 ②환경생태 ③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양식(패류 양식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국립공원, 특정도서, 무인도서, 갯벌 등이 존재 <input type="checkbox"/> 인근 해역에 거머리말(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분포 <input type="checkbox"/> 동시에 해양관광(낚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관리 필요 <input type="checkbox"/> 영북항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존재

구분		면적(km ²)	중첩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FH-520501-02	56.39	환경생태 (특정도서)	①어업활동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특정도서 주변 해역 및 해양생물 서식지 분포
	FH-520501-03	0.05	해양관광 (어촌뉴딜)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입암항, 제진항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존재
	FH-520502-01	25.55	환경생태 (국립공원) 해양관광 (낙시활동/해수욕장)	①어업활동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국립공원 내 해수욕장, 낙시(육지도 주변) 활동 등 관광활동 우세
	FH-520502-02	0.50	환경생태 (해양보호생물 출현)	①어업활동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거머리말(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분포
	FH-520502-03	0.01	해양관광 (어촌뉴딜)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가오치항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존재
	FH-520502-04	0.11	환경생태 (해양보호생물 출현)	①어업활동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창짜리 유지도 인근 잘피 서식지 존재
	FH-520502-05	0.08	환경생태 (해양보호생물출현)	①어업활동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견내랑권 해간도 인근 잘피 서식지 존재
	FH-520503-01	76.63	해양관광 (어촌뉴딜/낙시활동) 항만항행 (대형선박 통항)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③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이수도항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존재 <input type="checkbox"/> 낙시활동 밀집구역, 해수욕장, 어촌 체험마을이 존재 <input type="checkbox"/> 대형선박 통항 밀집 해역
	FH-520503-02	11.08	환경생태 (해양보호생물 출현) 항만항행 (대형선박 통항)	①어업활동 ②환경생태 ③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사곡권 사곡해수욕장 인근 잘피 서식지 존재 <input type="checkbox"/> 대형선박 통항밀집 해역

구분		면적(km ²)	중첩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FH-520503-03	28.80	환경생태 (국립공원/해양보호 생물) 해양관광 (해수욕장/낚시활동)	①어업활동 ②환경생태 ③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거제만권 영월마을 해간도 인근 잘피 서식지 존재 <input type="checkbox"/> 국립공원 내 해수욕장 및 비람의 언덕 등 관광시설 다수 분포하며, 낚시활동 활발 <input type="checkbox"/> 해양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
	FH-520503-04	0.17	해양관광 (어촌뉴딜)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진두항, 죽도항, 용초항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존재
	FH-520503-05	0.01	해양관광 (어촌뉴딜)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학동항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존재
	FH-520503-06	0.39	환경생태 (해양보호생물 출현)	①어업활동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조업 및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칠천도·장목권 장목항 인근 잘피 서식지 존재
	FH-520509-01	9.00	해양관광 (어촌뉴딜/낚시활동) 환경생태 (특정도서)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③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남해군 호도 및 조도 주변의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낚시활동 활발, 설리항 어촌뉴딜 300 선도지구 및 해수욕장 위치 <input type="checkbox"/> 특정도서 주변해역으로 환경생태계 특성이 높음.
	FH-520510-01	9.16	해양관광 (어촌뉴딜/낚시활동)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연화도 주변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연화도 근처로 낚시활동이 활발한 지역 <input type="checkbox"/> 연화항, 우동항, 동두항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가 존재
	FH-520510-02	19.01	해양관광 (어촌뉴딜/낚시활동)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옥지도 주변 양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옥지도 근처로 낚시활동이 활발 <input type="checkbox"/> 산등항, 하리항, 중리항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가 존재

구분		면적(km ²)	중첩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FH-520512-01	13.93	해양관광 (낚시활동)	①어업활동 ②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흥도 인근 해역으로 낚시활동이 활발한 지역
	FH-520512-01	13.93	해양관광	해양관광	<input type="checkbox"/> 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흥도 인근 해역으로 낚시활동이 활발한 지역

2)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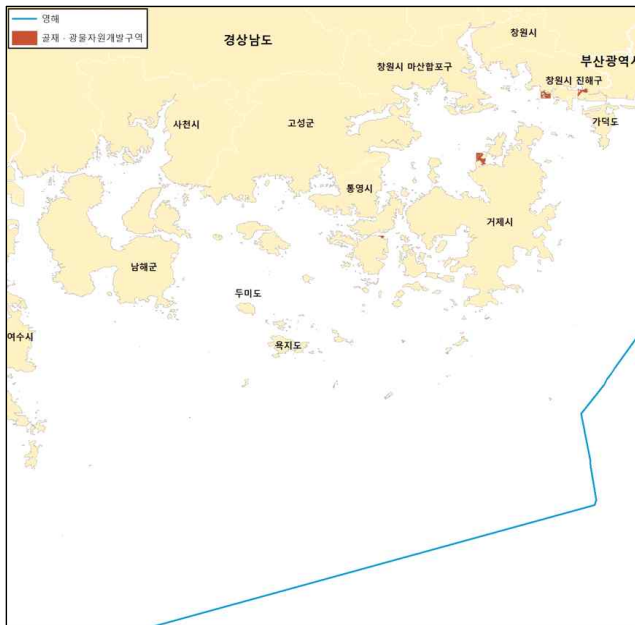
□ (정의) 바다에서 골재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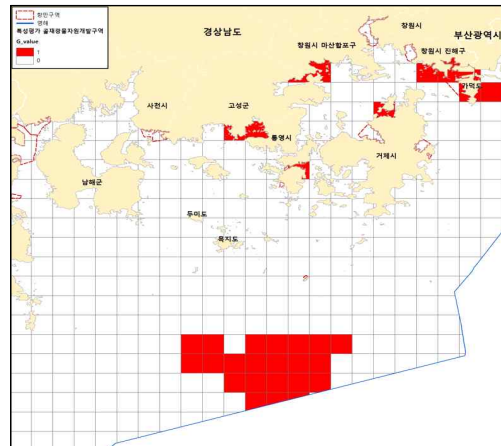
□ 바닷모래 및 광물 채취와 어업 활동 간 갈등 완화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 경남 해역에 채굴권²³⁾이 설정된 광구가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 경남 진해시, 사천시, 고성군에 채굴권이 설정된 광구 4개가 분포하며, 광업권 설정 구역은 광업권 설정기간 만료 전 해양용도구역의 변경 필요성 사전 검토 필요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특성평가 결과〉

23) 「해양공간계획법」부칙제4조(해양용도구역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 : 「광업법」 제9조의2제2호에 따른 채굴권 설정 구역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바다골재채취단지의 환경친화적 채취 활동

- 채취활동 이외의 시간을 달리하여 공존 가능한 해양이용 행위(어업활동, 항행활동 등)는 허용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바다골재채취단지 지정기간 만료 시(20.8)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유지·변경 검토 후 조치
- 채취 주변 해역의 해저지형, 해양생태계·수산자원 변화를 포함하여 주변 해역 영향 모니터링
- 채취 시 수심 제한, 산란기 휴업, 친환경적 채취방식으로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속하고, 채취 활동 후 해저 지형 복구 등에 대한 합의 사항 이행 모니터링
 - 해양생태계 등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채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주요 어종의 산란기 등을 고려하여 채취 금지기간 설정
 -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연안침식 우려지역,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조성 사업지 주변 등
- 어업활동과 상충하는 이용행위 규명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프로세스 진행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경남의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내 또는 인근에는 양식장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무역항에 인접한 해역에 광업권, 탐사권 또는 채굴권이 지정되어 있어 관리 필요
 -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3개소에는 양식장이 분포하거나 조업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 이용·개발 활동과 어업활동 간 상충이 발생 가능하므로 채굴권 허가기간 만료 이후 조정이 필요
 - 무역항 내에 골재채취 채굴권이 설정된 2개소에 대해서는 채굴권 허가기간 만료 이후 조정이 필요

〈그림 3-21〉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내 관리구역



〈표 3-13〉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구분		면적(km ²)	중첩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골재·광물 자원개발 구역 (5개소)	AG-520227-01	1.28	환경생태 (해양보호생물) 항만항행 (항만구역)	①골재광물 ②항만항행 ③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고령토, 납석의 채굴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62483, 허가 기간 : 2014.03.01. ~ 2034.02.28.)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무역항 내에 골재채취 광구(채굴권)이 존재 <input type="checkbox"/> 진해구 동섬, 명동 인근 잘피 서식지 존재 ※ 채굴권(고령토, 납석) 허가기간 만료 이후 용도 조정 필요

구분		면적(km ²)	중첩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 설명
구역	관리코드				
	AG-520502-01	0.28	항만항행 (항만구역)	①골재광물 ②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보크사이트의 채굴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100485, 허가 기간 : 2018.07.14. ~ 2038.07.13.) 골재·광물 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무역항 내에 골재채취 광구(채굴권)이 존재 ※ 채굴권(보크사이트) 허가기간 만료 이후 용도 조정 필요
	AG-520502-02	0.01	어업활동 (조업/면허어업) 환경생태 (특성평가)	①골재광물 ②어업활동 ③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고령토의 채굴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100370, 허가 기간 : 2017.10.14. - 2037.10.13.) 골재·광물 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양식 및 조업 활동이 활발 <input type="checkbox"/> 환경·생태적 특성이 우수 ※ 채굴권(고령토) 허가기간 만료 이후 용도 조정 필요
	AG-520503-01	1.69	어업활동 (조업/면허어업) 환경생태 (특성평가)	①골재광물 ②어업활동 ③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금,은,동,연,아연의 채굴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100381, 허가 기간 : 2017.11.04. - 2037.11.03.) 골재·광물 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양식 및 조업 활동이 활발 <input type="checkbox"/> 환경·생태적 특성(갯벌 등)이 우수 ※ 채굴권(금,은,동,연,아연) 허가기간 만료 이후 용도 조정 필요
	AG-520503-02	0.24	어업활동 (조업/면허어업) 환경생태 (특성평가)	①골재광물 ②어업활동 ③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광업법」에 따라 금,은,동,연,아연의 채굴권 설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등록번호 : 100382, 허가 기간 : 2017.11.04. - 2037.11.03.) 골재·광물 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양식 및 조업 활동이 활발 <input type="checkbox"/> 환경·생태적 특성(갯벌 등)이 우수 ※ 채굴권(금,은,동,연,아연) 허가기간 만료 이후 용도 조정 필요

3) 해양관광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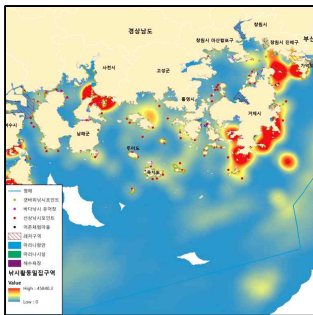
□ (정의) 해양관광·레저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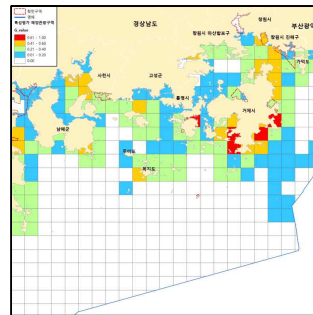
□ 해양레저, 해양친수, 마리나, 크루즈 등 다양한 해양관광·레저 수요 충족 및 핵심 공간의 해양관광 활동 증진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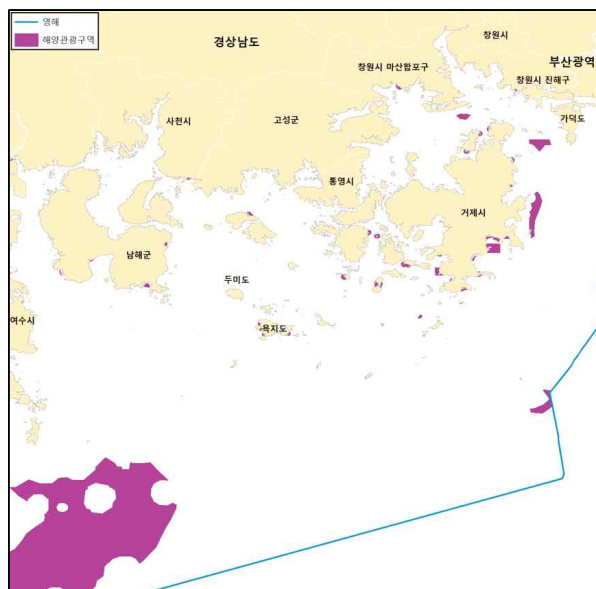
- 해수욕장, 어촌체험마을, 마리나 시설 및 항만, 낚시(갯바위, 선상) 활동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설정
 - * 마리나 예정구역은 특성평가에 반영하였으나,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제 용도구역 지정 시 미반영
 - * 속도 알고리즘(2knot 이하, 평균 유속 1m/s)을 통한 낚시활동 공간 추출 : 거제시 남측 해변, 창선도 일원 등



〈해양관광 법정 구역 및 낚시 활동 현황〉



〈특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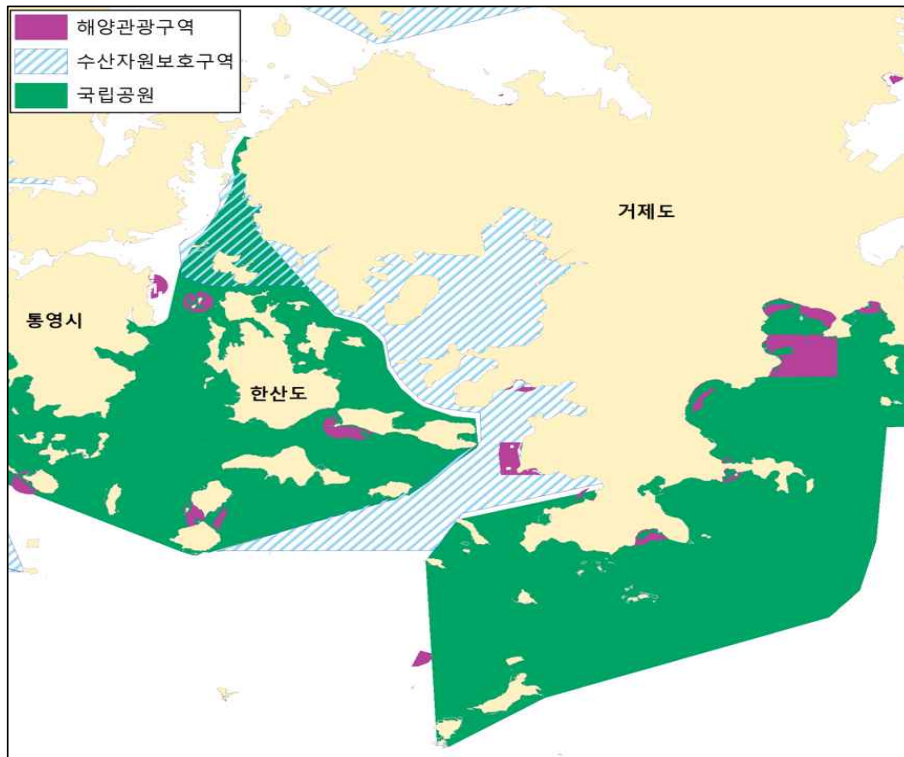


〈해양관광구역〉

□ 용도 상충 조정

- 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기존 보전용도 구역 내 존재하는 해수욕장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 통영 대항, 비진도, 봉암, 연대도 해수욕장 등



〈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현황〉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해양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한 해양 관광·레저활동 활성화 및 어업의 잠재적 가치 창출 활동 유지

- 해양관광과 해양레저 활동에 필요한 행위 및 개발 행위 허용

* 낚시 활동을 위한 시설,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레저 활동과 시설, 어촌 체험과 관광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유람선·잠수함·크루즈 등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 생태관광에 적합한 시설물, 해수욕장 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최적 투자 및 개발 공간 확보, 투자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해양 관광활동 공간분석(빅데이터 분석)과 정보 인프라 구축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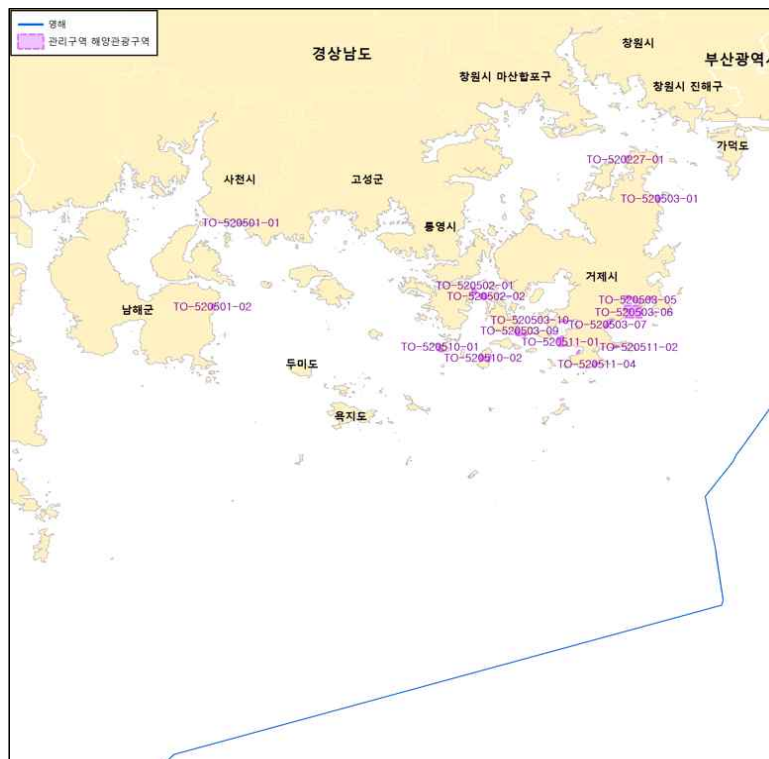
- 해수욕장, 어촌체험 마을, 어촌관광단지, 바다낚시 공원 등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 바다낚시공원(해와달 낚시공원, 비토해양 낚시공원, 통영등대 낚시 공원 등)
 - * 필요시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바다낚시 공원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 제정·시행
- 해수욕장 시설 정비 및 해양생태·해양환경·어촌관광 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관광 프로그램 개발
 - * 광암/남일대 해수욕장 조성, 진해/옥계 해양 친수공원 조성, 법동면/고현면 낚시공원 조성 및 거제시/사천시 관광 인프라 개발 등
- 충무마리나항만(132척), 삼천포마리나(42척), 지세포마리나(20척), 물건마리나(25척)를 거점으로 마리나 기반 시설 확보
 - 접근성, 네트워크 연계(간이↔소규모↔간이 계류시설), 해양활동 상호작용 등을 고려
 - 마리나항만 구성에 따른 매립으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시키도록 유도
- 해양관광의 잠재적 영향 분석 및 관리
 - 무인도서 혹은 해양보호구역 주변 해역에서 이루어지는 낚시활동과 방문객 증가로 인한 해양서식지 압력 및 영향 분석
 - 해양관광 개발 사업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변화를 사업 시행 이전에 철저히 분석·평가 하여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해양공간 이용·개발 유도
- 개발 이후 해양생태계 및 환경 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점검하고 필요시 대책 마련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경남 해역은 해양관광활동과 어업활동 밀도가 높은 해역일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등이 넓게 분포하므로 해양의 이용 및 보전 간 상충 조정이 필요
 -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된 해수욕장 내에 양식장이 다수 분포하거나 수산자원보호수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이 존재하므로 해양관광활동과 어업활동 간의 상충 조정을 위한 관리 필요
 - 또한 경남 해역에는 환경생태 특성이 높은 국립공원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해양관광 활동 시 환경·생태계 특성에 대한 고려 필요

- 해양관광구역 내 또는 인근에 항만구역이 존재하는 경우 안전관리 등의 해양공간관리 필요
 - 특히, 통영항(무역항) 인근의 해수욕장의 경우 대형선박 통항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안전 관리 필요

〈그림 3-22〉 해양관광구역 내 관리구역



〈표 3-14〉 해양관광구역 내 관리구역

구분		면적(km ²)	중첩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설명
구역	관리코드				
해양관광 구역 (19개소)	TO-520227-01	0.16	어업활동 (면허어업) 환경생태 (해양보호생물 출현)	①해양관광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황포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해수욕장 내 갯계, 달랑계 등 해양생물서식지와 양식장이 분포
	TO-520501-01	0.22	항만항행 (항만구역)	①해양관광 ②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남일대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삼천포항 항만구역 내 남일대 해수욕장 존재

구분		면적(km ²)	중첩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설명
구역	관리코드				
	TO-520501-02	0.31	어업활동 (어항구역)	①해양관광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물건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물건항 어항구역 내 물건해수욕장 존재
	TO-520502-01	0.36	어업활동 (면허어업)	①해양관광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리조트 내 인공해변 등 해양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양관광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해수욕장 내 양식장(어류/마을어업) 분포, 인근에 통영항(무역항) 존재하므로 안전관리 필요
	TO-520502-02	0.53	환경생태 (국립공원)	①해양관광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통영 죽도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양관광 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국립공원 내 통영 죽도 해수욕장이 분포
	TO-520503-01	0.18	어업활동 (면허어업) 환경생태 (해양보호생물)	①해양관광 ②어업활동 ③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흥남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양식 활동(바지락)이 활발 <input type="checkbox"/> 해양보호생물 출현 이력이 존재
	TO-520503-03	0.32	환경생태 (국립공원) 어업활동 (면허어업)	①해양관광 ②환경생태 ③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망치몽돌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국립공원 내 양식장 및 해수욕장이 분포
	TO-520503-04	0.28	환경생태 (국립공원) 어업활동 (면허어업/ 어항구역)	①해양관광 ②환경생태 ③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와현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국립공원 내 양식장 및 구조리항(어항)이 존재
	TO-520503-05	0.66	환경생태 (국립공원) 어업활동 (면허어업)	①해양관광 ②환경생태 ③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구조리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국립공원 내 양식장 및 해수욕장이 분포
	TO-520503-06	4.08	환경생태 (국립공원) 어업활동 (면허어업)	①해양관광 ②환경생태 ③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해중경관시설(양화) 존재하며 해양 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국립공원 내에 해중문화시설 존재 <input type="checkbox"/> 주변에 양식장이 분포

구분		면적(km ²)	중첩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설명
구역	관리코드				
	TO-520503-07	0.29	환경생태 (국립공원) 어업활동 (면허어업)	①해양관광 ②환경생태 ③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학동흑진주몽돌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국립공원 내 양식장 및 해수욕장이 분포함
	TO-520503-09	0.82	환경생태 (국립공원) 어업활동 (면허어업)	①해양관광 ②환경생태 ③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봉암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국립공원 내 양식장 및 해수욕장이 분포함
	TO-520503-10	0.13	환경생태 (해양보호생물 출현)	①해양관광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덕원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인근 해역에 수거머리말(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분포
	TO-520510-01	0.44	어업활동 (수산자원보호수 면) 환경생태 (국립공원)	①해양관광 ②어업활동 ③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연대도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수산자원보호수면 및 관리수면으로 지정, 양식 활동 우세 <input type="checkbox"/>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
	TO-520510-02	0.64	환경생태 (국립공원)	①해양관광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비진도산호빛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국립공원 내 해수욕장 분포
	TO-520511-01	1.09	어업활동 (면허어업)	①해양관광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해중경관시설(저구) 존재하며 해양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주변에 양식장이 분포
	TO-520511-02	0.13	환경생태 (국립공원)	①해양관광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함목몽돌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국립공원 내 해수욕장이 분포함
	TO-520511-03	0.07	환경생태 (국립공원) 어업활동 (면허어업)	①해양관광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명사해수욕장 등 해양관광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국립공원 내 해수욕장 및 양식장 분포

4) 환경·생태계관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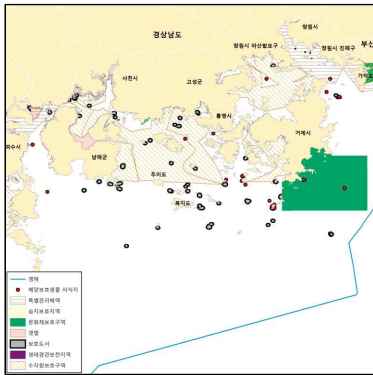
□ (정의)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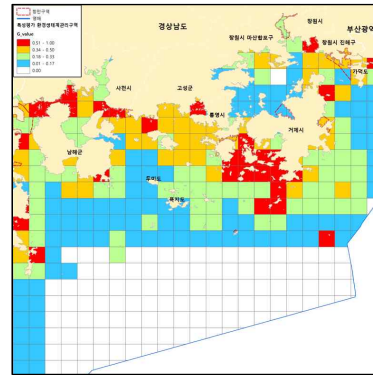
□ 해양환경·생태계의 건강성 및 생물다양성의 유지와 보전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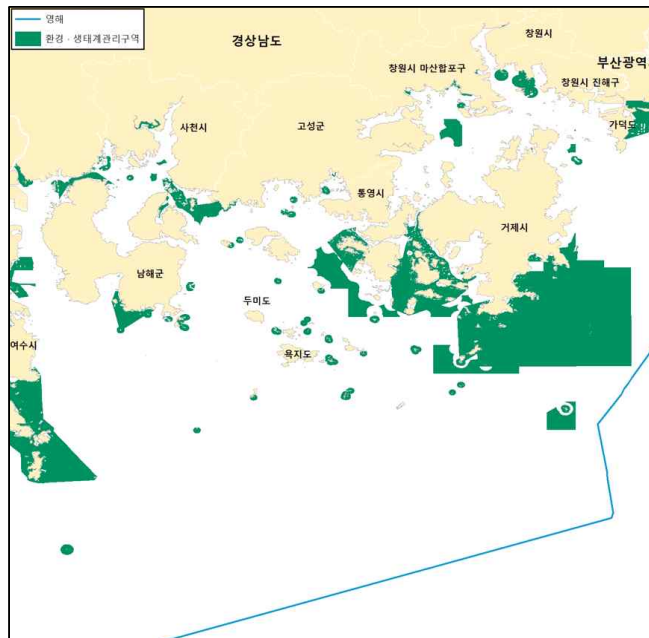
□ 특성평가 결과 3등급 이상, 연안·해양보호구역(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과 갯벌, 해양보호생물(잘피 등), 해양생물다양성지수 등을 고려하여 설정



〈기 지정된 보호구역 및 해양생물다양성 지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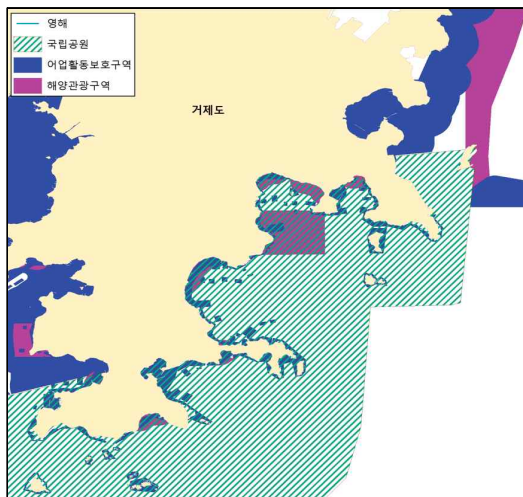
〈특성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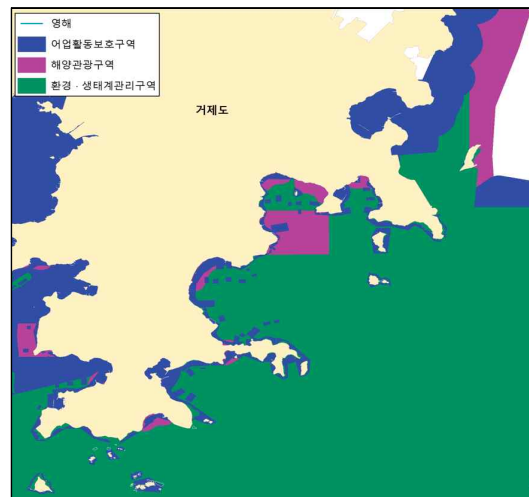
〈환경·생태계관리구역〉

□ 용도 상충 조정

- 국립공원 내 특성평가 결과 어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공간이 존재함.
- 어업활동과 환경·생태계 용도는 양립하여 공간 활용이 가능
- 법률에서 정한 구역(국립공원)의 특성과 어업 행위(특성평가 결과)가 중복되는 경우로 이 해역의 우선순위와 관리방향을 어업활동으로 정하여 관리



〈조정 전〉



〈조정 후〉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해양환경·생태계 보호와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권장

* 인간의 사회·경제활동을 유지·증진하는 과정에서 연안 및 해양으로부터 얻는 유·무형의 편익(자원공급, 기후 조절, 관광·문화, 생물다양성 유지 등)

- 시·공간적으로 공존 가능한 수산, 항행, 관광, 연구·조사 등 양립 가능

- 구역의 관리 목표와 상충·경합이 발생하는 활동*(골재채취, 에너지개발 등)은 제한되며, 불가피한 활동의 경우 최소화 혹은 영향 완화조치 제시 필요

* 해양생물종 및 서식지의 압력이나 위협 활동(채취·채굴,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등) 불가

* 주요 지형·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산물 공급, 연구·교육, 레저·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등 양립가능한 경우를 허용하고, 지역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허용

*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거주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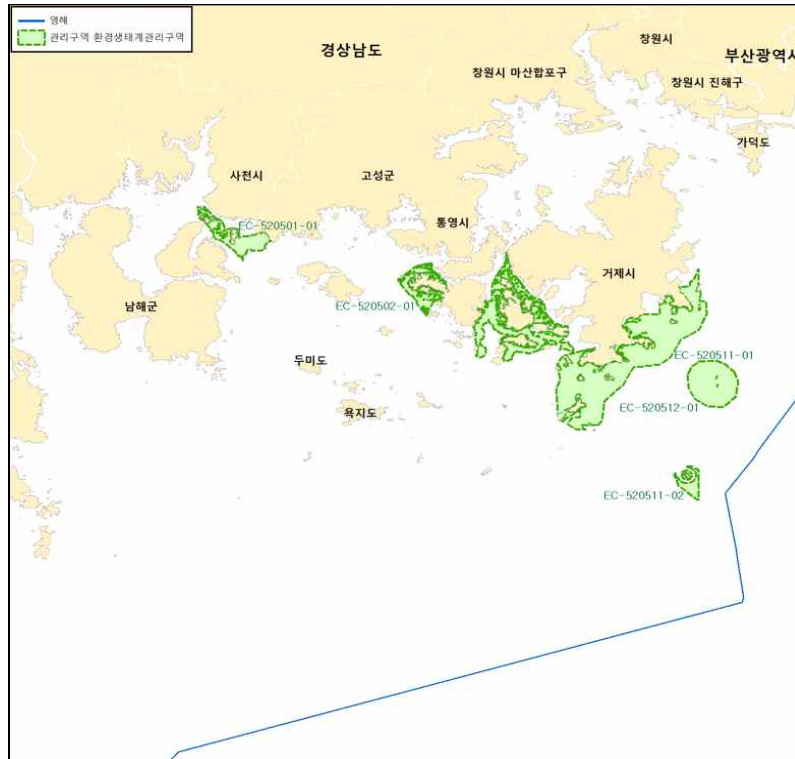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생물지리적으로 연결되는 연안·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 고성·자란만, 진동만, 사곡만 등의 해양보호생물 조사 및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검토
 - * 고성·자란만(상괘이 출현), 진동만(잘피, 말뚝게), 사곡만(멸종위기종 및 보호종 분포) 일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검토 : 지역협의회 의견 반영
 - * 다만, 지역 현장의 경험과 조사를 통해 나온 정보(경남 시민단체 보유 자료 요청)를 토대로 기존 활동과 상호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반영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다양성 위협 요인 분석 및 제거 추진
 - * 해양오염·서식지 훼손, 자원이용실태 주기적 점검 등 해양생태계 취약성 분석
- 해양생태계 및 환경 감시 강화를 위해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시 지역 시민 단체 참여
 - 해양환경·생태 모니터링의 비용, 복잡 다양성으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모니터링은 그 효용성, 신뢰성에 한계가 있음.
 - 시민 참여에 의한 해양생태 및 환경 자료 수집, 주요 이슈 발견 및 해결방안의 제시에 있어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보완 기대
- 해양생태계 서비스 규명 및 가치 평가 추진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가치를 산정하여 이용·개발 사업 및 정책 결정 기준으로 활용
 - * 생태계기반 해양공간 분석 및 활용기술 개발 R&D 추진 중('17~'21억원, KMI 등 7개 기관)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경남 해역에 분포하는 국립공원 구역에서는 해양관광, 어업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므로 해당 해역의 환경적·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해양공간관리 필요
- 국립공원, 무인도서 및 특정도서를 포함 연안·해양보호구역이 분포하는 사천시, 거제시, 통영시 인근은 어업활동 및 낚시활동이 밀집되는 해역으로서 환경·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필요
 - 특히 문화재보호구역과 낚시활동 밀집구역이 중첩되는 해역에 대한 관리 필요성 증대

〈그림 3-23〉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내 관리구역



〈표 3-15〉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구분		면적(km ²)	중첩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설명
구역	관리코드				
환경·생태계 관리구역 (5개소)	EC-520501-01	22.60	해양관광 (낚시활동) 어업활동 (조업)	①환경생태 ②해양관광 ③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삼천포 주변으로 어업활동(어업실적) 및 낚시활동이 많음
	EC-520502-01	16.46	어업활동 (면허어업) 해양관광 (낚시활동) 항만항행 (대형선박통항)	①환경생태 ②어업활동 ③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양식장 다수 분포 <input type="checkbox"/> 통영 주변해역으로 낚시 활동과 대형선박 통항이 있는 잦은 공간
	EC-520511-01	217.04	해양관광 (낚시활동) 어업활동 (면허어업) 항만항행 (대형선박통항)	①환경생태 ②해양관광 ③어업활동 ④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국립공원 내 다양한 해양관광활동(낚시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 <input type="checkbox"/> 다수의 양식장이 분포하며 대형선박 통항 밀집구역으로 안전관리 필요

구분		면적(km ²)	중첩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설명
구역	관리코드				
	EC-520511-02	8.04	해양관광 (특정도서) 어업활동 (조업)	①환경생태 ②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특정도서(홍도)로 지정되어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어업활동 및 낚시활동이 중첩하지만 어업활동이 우세
	EC-520512-01	41.12	해양관광 (낚시활동) 어업활동 (조업) 항만항행 (대형선박통항)	①환경생태 ②해양관광 ③어업활동 ④항만항행	<input type="checkbox"/> 문화재보호구역(천연기념물 아비철새도래지)으로 지정되어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어업활동 및 낚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input type="checkbox"/> 대형선박 통항 밀집 해역

5) 연구·교육보전구역

□ (정의)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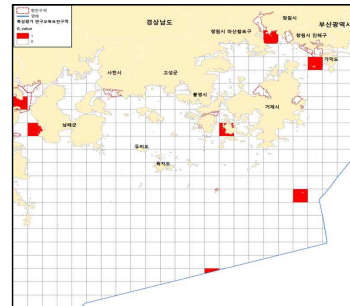
□ 영해기점무인도서* 및 해양관측 부이 관리 강화

* 영해기점무인도서는 통상기선 또는 직선기선으로 인정되는 무인도서와 국제법에 따라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으로 인정되는 간조노출지를 말함.(「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2) 용도구역 지정방법

□ 해양조사를 위한 해양관측시설, 해양보호생물종의 이동경로, 영해기점무인도서* 등을 고려하여 설정

* 홍도(선인장 군락)는 군사·외교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보전가치가 높은 도서 환경 유지



<영해기점무인도서 및 해양관측부이>

<특성평가 결과>



<연구·교육보전구역>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와 다양한 해양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인식 증진 활동을 보장

- 서식 실태, 해양관측 등 연구·조사 활동 등을 저해하지 않는 해양활동 가능
 - 해양생물 및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존이 가능한 해양이용·개발 활동 가능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실제적 관리 실현(연구조사, 주기적 점검* 등)
 - * 해양훼손 행위 방지, 불법 입도와 낚시 행위 등 오염행위 단속
- 해양관측 시설의 주기적 점검 및 해양보호생물 등의 서식지 및 이동경로 보호·감시 등 추진

6) 항만·항행구역

□ (정의)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항만기능의 효율성 제고 등 원활한 항만 개발·운영을 도모하고, 선박의 안전운항 확보
- 향후 항만·항행 기능 확대과정에서 타 용도와의 상충발생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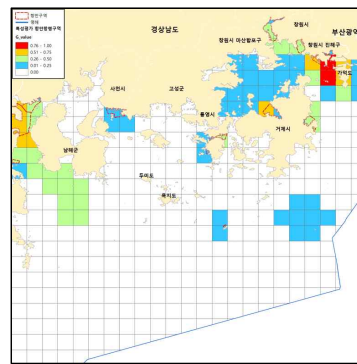
(2) 용도구역 지정 및 상충 조정

- 항만구역, 항로, 정박지, 교통안전특정해역, 해상교통 특성(항적 등)* 등을 고려한 구역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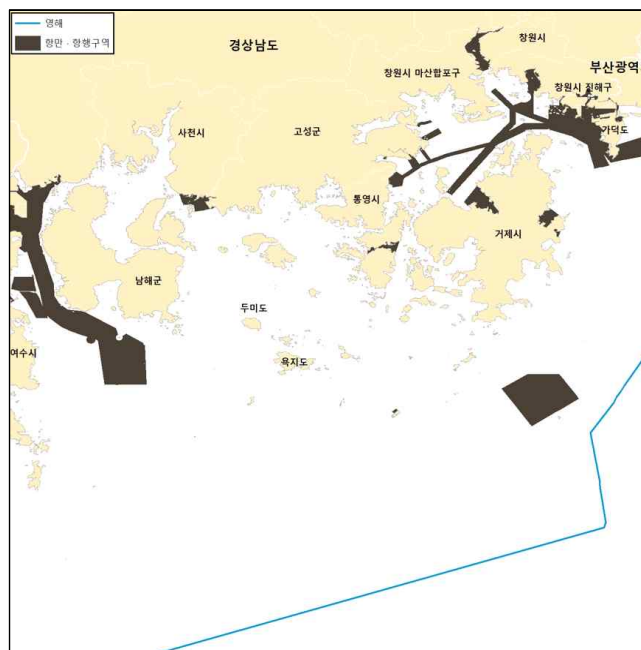
* GICOMS 데이터를 통한 화물선 및 탱크선 이동 공간 추출 : 선박의 주 이동 경로 확인



〈지정항로, 정박지 등〉



〈특성평가 결과〉



〈항만·항행구역〉

□ 용도 상충 조정

- 항만구역 내 어장, 마리나 항만, 어촌체험마을 등이 존재하는 경우, 항만구역 내라고 할지라도 각 기능과 용도에 맞게 해양용도구역 지정
 - 예컨대, 삼천포항의 경우, 삼천포항 항계 내 남일대 해수욕장 등 해역은 항만·항행구역에 포함되지만, 어장, 마리나항만, 어촌체험마을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해양관광구역으로 조정



〈삼천포항 내 해양관광구역 지정 현황〉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항행활동 우선, 그 외 활동은 시간에 따라 공존 가능한 경우 허용

- 안전한 항만·항행 활동을 보장 및 보호를 위한 해저지형(수심) 변화를 주는 개발과 항로를 침범하는 해양기반시설 승인 불가
- 안전한 항행을 위한 항로 활동 보장 및 어업, 유어활동 안전 관리 강화
-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구역(항로,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의 행위 관리 사항을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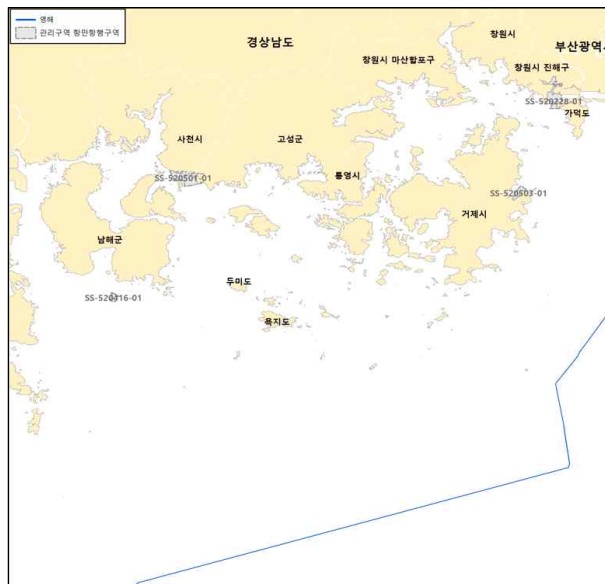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마산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진해항, 하동항 항만구역과 항로, 정박지 등은 항만의 기능과 용도를 우선하여 관리
 - 항만과 해운의 입지를 위한 주기적 해저지형 등 특성 파악
 - 선박 입출항 추세, 선박규모 및 종류 등 항만 운영여건 변동 요인 점검
 - 항만시설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퇴적물 이동에 따른 수심 변화 등)의 영향을 점검하고 주기적 준설 및 조사
- 항행 사고 및 선박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항로 및 인접 해역의 시설물 설치 시 안전성 평가
- 항만구역 내 양식 활동(면허 어업권 설정), 해양 관광 활동(마리나 항만, 어촌체험), 봉암곶별습지보호지역(기 법정 보호구역 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용도구역으로 지정·관리

(4) 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

- 경남 해역의 항만구역 내 국립공원이 분포하거나 해양보호생물 출현지가 존재
 - 경남의 무역항 또는 연안항 내 해상국립공원 구역이 분포하거나, 해양보호생물인 푸른 바다거북의 출현지가 존재하므로 환경생태를 고려한 항만·항행 활동을 장려

〈그림 3-24〉 항만·항행구역 내 관리구역



〈표 3-16〉 항만·항행구역 해양공간관리 사항

구분		면적(km ²)	중첩용도	관리의 우선순위	상세설명
구역	관리코드				
항만·항행 구역 (4개소)	SS-520228-01	9.31	어업활동 (면허어업/어항구역) 환경생태 (해양보호생물 출현)	①항만항행 ②어업활동 ③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부산항 및 부산항 신항으로 지정되 어 항만·항행 관리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다수의 어항과 양식장, 잘피서식지 가 존재
	SS-520416-01	1.69	환경생태 (국립공원/특정도서)	①항만항행 ②환경생태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지정되어 항만·항행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교통안전특정해역 내 한려해상국립 공원, 특정도서 소치도가 있음
	SS-520501-01	10.05	환경생태 (국립공원) 어업활동 (조업)	①항만항행 ②환경생태 ③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무역항으로 지정되어 항만·항행구 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삼천포 무역항 내에 한려해상국립 공원이 있으며, 낚시 및 어업 활동 높음
	SS-520503-01	2.84	환경생태 (해양보호생물 출현) 어업활동 (조업)	①항만항행 ②환경생태 ③어업활동	<input type="checkbox"/> 연안항으로 지정되어 항만·항행구 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연안항 내 해양보호생물(푸른바다거 북) 출현. 낚시 및 어업 활동 높음

7) 군사활동구역

□ (정의) 국방 및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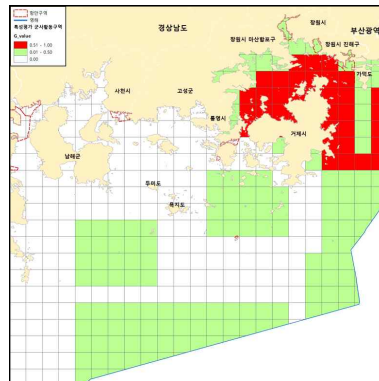
□ 군사안보와 영토관리, 해상사격 훈련에 따른 주민 안전 관리 강화

(2) 용도구역 지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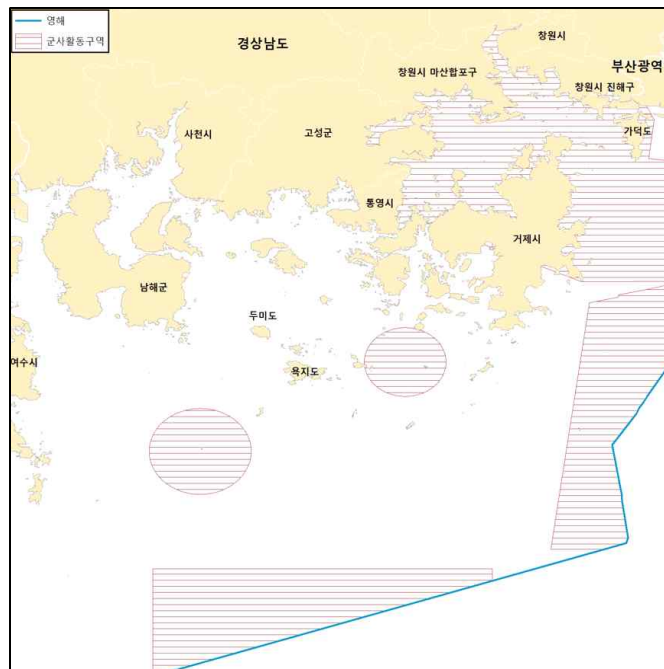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상사격 훈련구역의 경계를 고려하여 반영



〈해상사격 훈련구역〉



〈특성평가 결과〉



〈군사활동구역〉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군사활동 우선, 그 외 활동은 시간에 따라 공존 가능한 경우만 허용

○ 군사 훈련과 시간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당 구역 내 중복 용도 허용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군사활동과 충돌되지 않고, 안보 및 영토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해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존 장려

○ 군사활동구역 내 해양이용행위(불법 행위) 감시 강화

8) 안전관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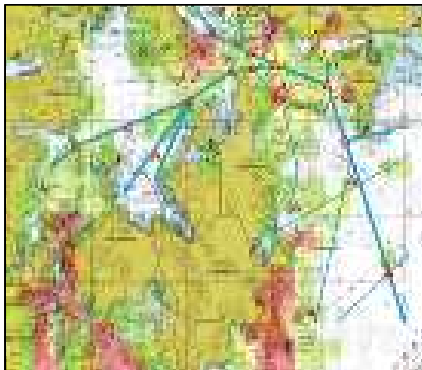
□ (정의)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의 보호 및 해양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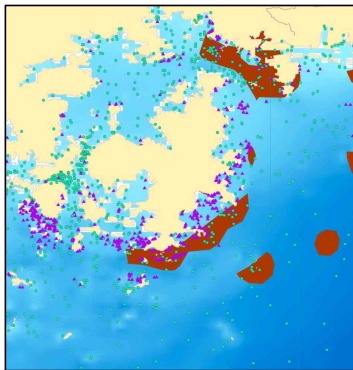
□ 안전한 해양이용 및 활동 지원

(2) 용도구역 지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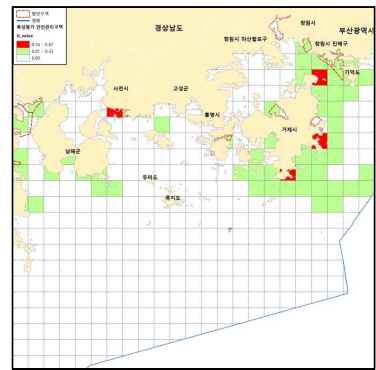
□ 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 해양에너지 시설 등 산업 및 기간 시설, 선박 통항 및 사고 위험 분석 등을 고려 설정



〈대형선박통항과 낚시활동 중복 공간〉



〈안전관리구역 내 사고 이력 현황〉



〈특성평가 결과〉



〈안전관리구역〉

(3) 공간 관리 방안

① 권장 해양 이용활동

- 사고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등 해양안전활동 지원
- 권장 해양 이용·활동 사항에 따른 행위 관리 사항
 - 안전부표, 안전경고문 설치 및 안전 순찰 활동, 해양안전 지식 보급, 해양안전 문화 확산 활동
 - 어선 종사자 및 해양 레저 활동객 등의 안전 역량 제고 및 교육 활동

② 관리 방안(해양공간의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 사고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등 해양안전활동 지원
- 주기적 위험성 조사*, 위험요소 지속 발굴 등을 통해 사고 예방조치
 - * 사고발생 해역 및 선박·어선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높은 해역을 대상으로 해역 이용자 수, 지역주민들이 전하는 위험성 정보 등 고려하여 실시
- 사고 다발지역 등에 대한 안내·경고 등을 통해 해양이용자들이 미리 조심하도록 하는 등 사고발생 저감 유도

9) 에너지개발구역

□ (정의)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

(1) 용도구역 관리목표

□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과 조화를 이루는 해양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2) 용도구역 지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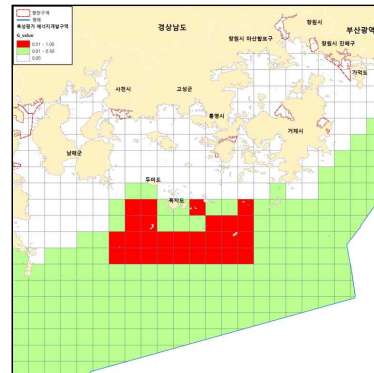
□ 풍력, 조석, 조류, 파랑, 온도차 등 해양에너지 환경과 입지조건·제약조건, 개발 계획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설정

* 해양에너지 별 자원량 분석 결과 해상풍력을 제외한 그 외 해양에너지 부존량 적음

* 해상풍력의 경우, 평균 풍속이 초속 6m/s 이상(양호)으로 나타나는 공간은 외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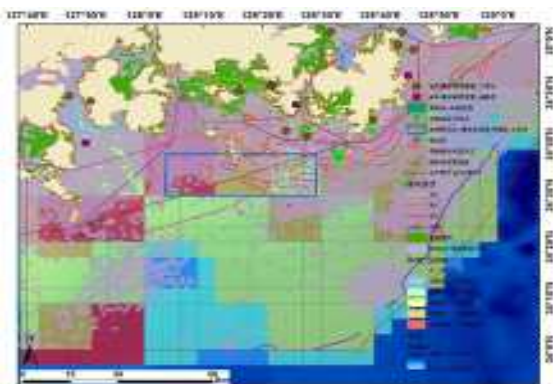


〈통영해상풍력발전단지계획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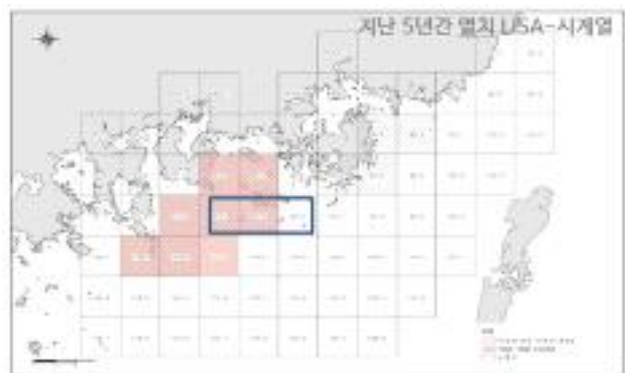


〈특성평가 결과〉

○ 통영 해상풍력발전단지 대상 후보지는 조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해역임.



〈어선 밀집 및 어획량 분포〉



〈멸치 생산량이 높은 공간〉

* 네모 박스는 경남 통영 해상풍력발전단지 R&D 대상 후보지

〈 용도구역 미반영 〉


- 미래의 해양이용·개발 수요는 수요의 특성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결정

수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가 있는 해양공간에 대한 위치정보, 규모, 이용개발의 용도 등 구체적 이용개발 계획 또는 구상이 마련 - 해당 이용개발계획이 공간특성평가결과와 부합하고, 사회적 갈등이 작을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수용 가능
수용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개발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에 대한 위치정보와 규모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고, 특성평가와 해당용도의 특성과 불부합 한 경우 수용 불가능

- 통영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수요는 예상되는 해양공간에 대한 위치정보와 규모가 구체적이지 않고, 현재 어업 생산이 높은 해역으로 현재 자료를 기반으로 수용 불가능

(3) 공간 관리 방안

-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과 관련한 타 이용행위와 충돌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메커니즘(절차) 마련



제4장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 및 이행방안

1.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2.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3. 해양공간관리 이행·점검 방안



제4장 /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 및 이행방안



1.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운영 배경

- 해양공간계획의 성공적 수립과 이행을 위해 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지역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함) 구성·운영 필요
 - 특히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 절차적 타당성, 계획의 실효성 제고

* '18년에 경남 지역협의회를 임시 구성하여 위원들에게 제도 취지 및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현안 도출, 특성 평가 결과, 해양용도구역(안) 설정 등 관리계획(안) 수립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 지역협의회 구성

- (구성) 경상남도청의 추천으로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주요 해양공간 이용, 보전 활동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
- (기능)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 수립 대상 해양공간에 대한 현안 및 관리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하여 검토²⁴⁾
 - 대상 해양공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
 - 해양용도구역 지정 검토 및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 관리계획의 초안 마련 등에 관한 자문

□ 법적 근거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본원칙(제3조) 및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

제3조(기본원칙)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1.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전·이용 및 개발할 것
2. 국방안전과 해상교통안전 등 공공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국민의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보장할 것
4.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4)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3호)제23조 참고

- 동법 시행령(제6조)은 관리계획 수립 시 관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 해양 공간관리지역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을 규정

* 제6조(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① 시·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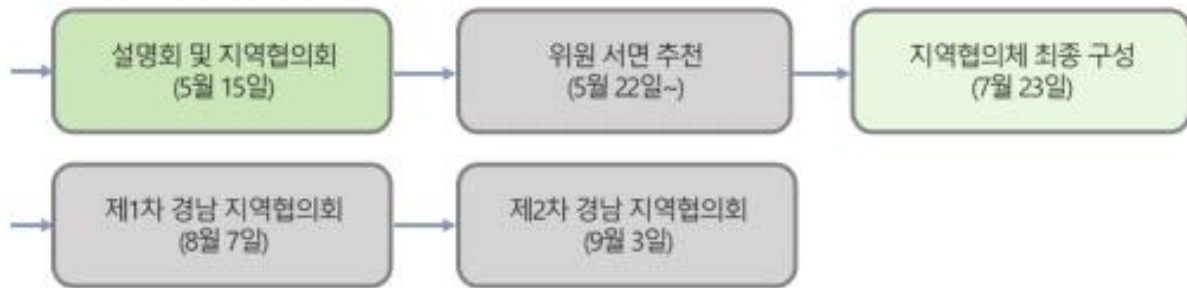
- 2018년 사전 협의회, 현장 설명회, 지역협의회를 개최
 -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업무협의회(18.4.17~18)
 - 남해안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부산·경남지역 협의회(18.5.18)
 - 위원 추천(18.6~7)
 -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사전설명회(18.8.10)
 -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현장 정책설명회(18.11.01)
 - 위원 추가 추천(18.11)
 - 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8.11.29)
 - 부산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8.11.30)

〈그림 4-1〉 2018년도 부산·경남 지역협의회 추진 경과



- 2019년도 사전 협의회 개최 및 부산경남 지역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구성
 - 경남 해양공간계획제도 설명회 및 지역협의회(19.5.15)
 - 부산·경남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위원 서면 추천(19.5.22~)
 - 부산·경남 지역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구성(안) 최종 확정(19.7.23)
 - 제1차 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개최(19.8.7)
 - 제2차 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개최 예정(19.9.3)

〈그림 4-2〉 2019년도 부산·경남 지역협의회 추진 경과



□ 부산·경남 해역 지역협의회 구성

○ 구성 원칙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 특정 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주요 이용·개발·보전 활동 관련 민관산학의 이해관계자를 포괄*

* 특히 상충행위 관련 이해관계자(예. 어업인, 바닷모래 채취업자)를 모두 포함

- 분야별 균형있는 참여 : 특정분야로 편중되지 않도록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분야별로 대표성을 갖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

○ 구성 절차 및 경과

- 부산·경남 해역 주요 이해관계자 파악을 위한 기초 문헌연구
- 지역협의회 구성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광역지자체 업무협의('18.4.17~18) 및 사전 설명회('18.5.18) 개최
- 해당 지자체의 추천으로 1차 구성('18.6~7)

〈표 4-1〉 2018년도 제1차 부산·경남 지역협의회 구성(안)

구분	1차 구성(안)
부산지역협의회	민(5), 관(7), 학(3), 연(5) 등 총 20명
경남지역협의회	민(8), 관(10), 학(2), 연(2), 산(1) 등 총 23명

- 1차 추천 위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사전설명회 ('18.8.10)에서 위원 추가 및 분야별 인원 조정 필요 의견이 제시됨
- 해양공간계획 관련 전문가 보완, 인원 과다인 분야 참여인원 조정, 주요 해양공간활동 중 미포함 분야 이해관계자 추가 등을 위해 위원 조정·추가 추천('18.11)*

* 향후 지역협의회 운영을 통해 필요 시 위원 변경 또는 추가 가능

〈표 4-2〉 2018년도 제2차 부산·경남 지역협의회 구성(안)

구분	2차 구성(안)
부산지역협의회	민(5), 관(7), 학(5), 연(9) 등 총 26명
경남지역협의회	민(10), 관(13), 학(2), 연(2), 산(1) 등 총 28명

- 부산시(20명), 경남도(29명)에서 위원을 추천받았으나, 특정분야(에너지, 골재, 군사 등)가 배제되어 관련단체부터 해당지역 전문가 추천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골재협회, 53사단, 해군작전사 등

〈표 4-3〉 2019년도 부산 및 경남 지역협의회 최종 구성

구분	3차 구성
부산지역협의회	민(8)·관(8)·학(4)·연(6)·군(2) 등 총 28명
경남지역협의회	민(14)·관(10)·학(3)·연(2)·군(1) 등 총 30명

○ 경상남도 지역협의회 위원 명단

- 지역협의회 위원은 총 9개 분야의 민(14)·관(10)·학(3)·연(2)·군(1)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로 구성

* 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3. 참조

2. 지역협의회 운영 결과

1)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업무협의회('18.4.17~18)

□ 개요

○ 부산광역시 업무협의회

- 일자 및 장소 : 2018.4.17., 부산광역시 수산자원과
- 참석자 : 부산광역시(수산자원과,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한국연안협회

〈표 4-4〉 부산시 업무협의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부산시 업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공간계획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지자체별 해양공간계획 관련 주관 업무부서 지정 필요 -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자체 권한 강화 필요

○ 경상남도 업무협의회

- 일자 및 장소 : 2018.4.18.,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 참석자 : 경상남도(해양수산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한국연안협회

〈표 4-5〉 경상남도 업무협의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경남 업무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공간계획제도의 이행의 제약요소 중 하나인 해상경계 관련 논의 - 해양공간계획제도 추진을 위해 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과학적, 합리적 근거 필요 - 계획 수립시 지역협의체 등을 통한 합의 절차 필요

2) 남해안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부산·경남지역 협의회('18.5.18)

□ 개요

- 일자 및 장소 : '18. 5.18. / 부산역 대회의실(509호)
- 참석자 :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부산시(수산자원과, 해양산업과, 해운항만과, 클린 에너지추진단), 경상남도(해양수산과, 항만정책과),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 마산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해양수산환경과, 항만물류과), 부산발전연구원, 수산자원관리공단, 연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올포랜드, 한국연안협회, 삼우소프트) 등

〈표 4-6〉 남해안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부산·경남 협의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부산·경남 업무협의회	- 해양공간특성평가 및 갈등조정 방법 등에 관한 질의·응답 - 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부처 협조 요청사항 등 논의 - 해양공간 정보의 체계적 수집, 표준화, 신뢰도 확보를 위한 관리 필요

3)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사전설명회('18.8.10)

□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8.10 / 부산 크라운하버호텔
- 참석자 :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부산광역시(사하구 도시정비과, 강서구 해양수산과), 경상남도(창원시 수산과, 통영시 해양관리과, 사천시 해양수산과, 고성군 해양수산과, 남해군 해양수산과), 부산광역시 수협, 대형기저조합, 바다살리기국민운동 부산본부,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부산지부, 한국해양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진해수협, 남해수협, 경남어류양식협회, 한국자율관리어업 경남연합회,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통영 거제환경운동연합, 남동해수산연구소,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진(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연안협회, 올포랜드, 삼우이머션) 등

〈표 4-7〉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사전설명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부산·경남지역 사전설명회	- 과학적 정보 기반, 지역별 특성에 따른 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필요성 논의 - 체계적 관리·감독·평가의 필요성 논의 - 해양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소요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 추진 로드맵 필요 - 거버넌스를 활성화를 위한 활용 데이터 정보 공개 등 논의

4)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현장 정책설명회('18.11.01)

□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11.1 / 부산·경남 일부해역
- 참석자(총 16명) : 해양수산부(4명), 부산광역시(4명), 경상남도(3명), 해양환경공단(2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2명), (사)한국연안협회(1명)

〈표 4-8〉 부산·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현장 정책설명회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부산·경남지역 현장 정책설명회	- 부산 해역 주요 현안(부산항 신항 건설, 낙동강 하구 개발, 해양레저 활동 증가, 해상풍력단지 조성, 크루즈 관광 거점화 등) 논의 - 경남 해역 주요 현안으로 해양관광(남해안 해양관광 특별권역 설정),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기한 연장, 외해 양식어장 개발, 항만 개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

□ 현장답사 지역

- 오륙도 및 주변해역, 광안대교 주변 마리나 항만 조성 사업 구역, 가덕도 북측 신항만 건설 예정지 등 현장 답사

〈그림 4-3〉 현장답사 코스



- ① 부산항 ② 오륙도(해양보호구역, 군사지역) ③ 광안대교(해수욕장, 마리나항만) ④ 가덕도(신항만 건설 예정지역), ⑤ 통영 ~ 거제(수산양식시설 밀집해역) ⑥ 부산 남외항(선박 운항 및 묘박지)

5) 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8.11.29)

□ 개요

- 일자 및 장소 : '18.11.29., 경남 풀만 엠베서더 창원
- 참석자 : 해양생태과, 경남 지자체 해양공간·자원의 이용·개발 또는 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전문가, 참여연구진 등

〈표 4-9〉 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구분	주요내용
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남해 각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해양공간계획 필요 - 경남 해역을 가치를 배가할 수 있도록 관광과 어업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방향 필요 -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시 어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필요 - 군사보호구역 관련 자료 추가·보완 필요 - 해역 전체에 대한 용도 지정 보다는 이해관계 상충 해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경남 해양공간계획 확정 전에 시·군과의 협의를 통한 재조정 과정이 필요

6) 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제도 설명회 및 지역협의회('19.05.15)

□ 개요

- 일자 및 장소 : '19.05.15.(수), 수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 참석자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경남도 및 시·군·구(창원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등) 관련 업무 담당자, 해양공간 이용 관련 이해관계자, 해수부, KMI 등

〈표 4-10〉 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제도 설명회 및 지역협의회

구분	주요내용
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이행준수 여부에 따른 제재 및 인센티브를 통한 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논의 - 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제도 간소화 등 고려 필요 - 제도의 시행을 위한 인력 확보, 담당자 인식증진, 교육의 필요성 논의 - 담당자 의견수렴 절차 필요

7) 제1차 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9.08.07)

□ 개요

- 일자 및 장소 : '19.08.07.(목), 경남도청
- 참석자 : 경남 해양공간지역협의회 위원, 해수부, 경남도 및 시·군 관련 업무 담당자, KMI, KIOST, KOEM 등

〈표 4-11〉 제1차 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구분	주요내용
제1차 경남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해양이용, 신규 해양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고려하는 계획의 필요성 논의 - 경남 지역 현안으로 관광 중심 어항 개발, 해상국립공원 관리 등 - 경남 해역의 생물다양성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 검토 필요성 제기 - 어업과 골재채취, 어업과 해양보호구역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절차 필요성 논의 - 지역협의회를 통한 지역 현안 및 정책의 반영방안 검토 필요

8) 제2차 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19.09.03)

□ 개요

- 일자 및 장소 : '19.09.03.(화), 창원축구센터
- 참석자 : 경남 해양공간지역협의회 위원, 해수부, 경남도 및 시·군 관련 업무 담당자, KMI, KIOST, KOEM 등

〈표 4-12〉 제2차 경남지역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구분	주요내용
제2차 경남 해양공간계획 지역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공간계획이 해양환경 및 활동 현황, 그에 따른 영향에 관한 체계적 정보 수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 필요 - 어업자원 보호구역, 세부 용도구역 지정·관리 등 용도구역 고도화에 대한 검토 필요 - 신항 건설, 군사활동, 에너지 개발 등 새로운 해양 이용 수용 따른 조업구역 축소를 고려하 해양정책 필요

3. 해양공간관리 이행·점검 방안

- 해양공간계획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의 역량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이후 첫 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도지사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도지사는 계획의 수립과 이행의 주체임
- 해양공간계획 수립 이후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함.

1)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구축

【구축방향】 해양공간 보전, 이용, 개발을 위한 해양공간의 계획관리 체계 개편

-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역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수요를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을 합리적으로 설정·관리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는 해양공간관리계획 과정에서 과학과 참여에 의한 해양공간의 용도 파악을 통한 계획의 수립·이행을 보장하여야 함

□ 해양공간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력 기반 구축

-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계획 수립 초기부터 이해관계자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해양공간 이용·개발, 해양용도구역 지정·관리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협의·조정
 - ※ 법률 시행 이전에 구성된 경남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를 공식 출범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 준비
-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감시 기능 강화
- 해양공간관리 필요성, 여건, 과제, 참여·협력 등에 해양공간관리 관련 홍보

□ 해양공간관리 정책 이행 조직 및 기반 마련

- 시·도와 관련 연안 시·군·구는 해양공간계획 시행할 담당 조직 또는 인원을 지정·배치
-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 ※ 제9조(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를 둠.

-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종합적 판단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담당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수행
- 해양공간계획과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관계의 조정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 등에 적합
- 「해양공간계획법」 제9조에 따라지역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해양공간관리 역량 강화 및 인식 증진

- 해양공간관리가 신뢰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활용, 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공간정보체계* 등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기본적으로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 및 보전 관련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접근
 - ※ 정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정보 공동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 중
-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관리 교육 및 연수 강화
- 지역주민 등 시민의 자발적 협조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방안 마련
 - 부산광역시 및 각 구·군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해양공간계획의 필요성, 주요 내용, 추진 방향 등 상세한 내용을 쉽게 검색하고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자료 배포
 - 정규교육과정에 반영 및 해양공간관리 전문인력 양성
 - ※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과과정에 해양공간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 실천 사항을 포함시켜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인식 제고 시킬 필요가 있음.

2) 해양공간관리 주기적 모니터링

□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현황과 관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해양공간 관리에 대해 점검 필요
 - 이행점검 대상은 경남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타 법령에 따른 인가 및 허가 등 해양공간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해양환경 및 생태계 현황, 해양공간관리 능력 등임.

- 타 부서의 협조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로 이를 위한 인력 및 조직 체계 정비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역량 강화는 해양공간계획체제 발전의 주춧돌
 - 해양공간계획체제의 도입은 중앙부처 주도의 하향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의 변경과 시행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으로 진행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정보의 분석, 관련 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다양한 해양공간의 이용·개발·보전 수요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해양공간계획체제의 발전을 위해 해양공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와 관리역량 강화에 집중 필요

〈표 4-13〉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대상 및 방법

이행점검 대상	세부 항목	방법
대상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 이용개발사업 현황과 정해진 신규 사업 및 기존 사업 추진 현황 (2) 공유수면 점·사용 현황 (3) 공유수면 매립 계획 및 추진 현황 (4)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현황	공유수면 점·사용 대장, 해양공간정보체계, 관련 담당 부서 자료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 대상 해양공간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 대상 해역 내 면허어업권, 골재채취허가 등 면허 및 인가·허가 실적 (2) 대상 해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 여부 (3) 위와 관련한 협의 및 조정 실적	지방자치단체 관련 조례, 관련 담당 부서 자료 등
대상 해양공간의 해양공간관리 능력	(1)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여부 (2) 해양공간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3) 대상 해양공간의 현안 및 갈등 사례 (4) 해양공간계획체제 활용 여부 (5)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여부 (6)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대상 해양공간의 관리 담당 부서 자료, 관련 업무담당자 및 지역협의회 의견 등

자료 : 해양수산부, 2019,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3호)

- 시·도지사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 사항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변경 시에 활용한 기초 정보, 특성평가 결과, 해양용도구역 도면 등은 해양수산정보 공동플랫폼에서 제공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출

□ 관리계획의 자체평가

○ 시·도지사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평가보고서를 해양공간관리지역 위원회의 검토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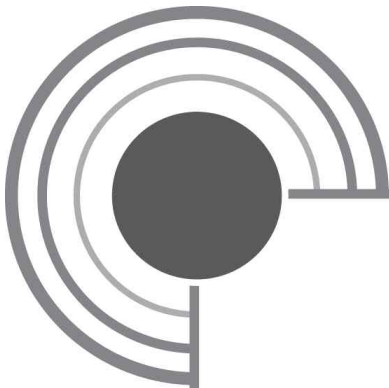
* 주기적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참조

- 자체평가보고서는 해당 년도의 이행 실적 및 부진 사유, 다음해 이행계획 및 추진 방안으로 구성되며, 앞서 설명한 주기적 점검 결과도 첨부되어야 함.

〈표 4-14〉 자체평가 보고서의 목차

<p>I. ○○○○년 자체평가의 개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경 및 목적 2. 관리계획 추진경과 3. 평가대상 및 범위(요약) <p>II. ○○○○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현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사항 2. 해양용도구역별 사업·업무의 이행 현황 ※ 각 사업·업무의 이행 현황은 미이행 /부분이행 / 완료로 제시 3. 지역협의회 운영 실적 <p>III. ○○○○년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평 2. 평가대상 사업(업무)별 자체평가 결과 1) 평가결과 ※ 자체평가 결과는 부적정, 적정, 평가유보로 제시 2) 평가결과 조치계획 - 자체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향후 이행계획의 내용 및 추진 방법 3. 기타 건의 사항 <p>【참고】○○○○년 이행점검 결과</p>
--

자료 : 해양수산부, 2021,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1-64호)



부 록

1. 경남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수요
2. 경남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서
3. 경남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위원
4. 지역협의회 운영결과
5.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6. 관계기관 의견조회 이후 제출 의견



부록 1 : 경남 해양공간의 이용 및 개발 수요

(1)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의 성격에 따른 특성분석

- 경상남도 지역의 전체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는 46개로 이중 통영시가 15개소로 가장 많고 관광 부문과 수산 부문이 각각 16개씩으로 가장 많은 수요를 보임.
 - 경상남도 지역의 전체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는 46개로 그 중 15개가 통영시에 위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거제시가 8개, 남해군과 창원시 마산합포구가 각각 6개 순으로 위치하고 있음.
 - 사업성격에 따라 관광, 마리나, 수산, 에너지, 항만, 환경, 기타 등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경상남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업유형은 관광과 수산으로 각 16개가 있음
 - 관광은 하동군을 제외한 8개 지역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만, 수산은 통영시가 8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남해군 4개, 그 외 거제시, 고성군, 사천시, 하동군에 각 1개씩 분포함.
- 전체 수요면적은 5.77km²로 창원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 부문이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 경상남도 지역의 전체 해양개발사업 사업면적은 5.77km²로 그중 5.34km²가 창원시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됨.
 - 경상남도 지역에서 가장 면적이 큰 사업유형은 관광으로서 사업면적은 5.37km²이며, 창원시에 위치하고 있음.
- 전체 사업비는 3조 1,344억원이고 이중 통영시가 1조 7,835억원으로 가장 많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부문에서는 에너지 부문이 1조 5,596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보임.
 - 경상남도 지역의 전체 해양개발사업 사업비는 3조 1,344억원으로서 통영시가 1조 7,835억원, 그 다음으로는 창원시가 1조 625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경상남도 지역에서 가장 사업비가 큰 사업유형은 에너지로서 1조 5,596억원이며, 통영시 해안에 계획된 수요(육지해상풍력발전)로 조사됨.

〈부록표 1-1〉 경남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사업성격)

구분		관광	기반시설	마리나	수산	에너지	항만	환경	안전관리	총합계
거제시	개수	4	1	1	1	-	1	-	-	8
	면적(㎡)	145,128	불명	9,946	10,000	-	불명	-	-	165,074
	예산(백만원)	21,842	51,123	15,457	2,000	-	4,445	-	-	94,867
고성군	개수	1	-	1	1	-	-	-	-	3
	면적(㎡)	불명	-	불명	불명	-	-	-	-	불명
	예산(백만원)	18,200	-	3,200	3,350	-	-	-	-	24,750
남해군	개수	1	-	-	4	-	-	-	1	6
	면적(㎡)	불명	-	-	20,000	-	-	-	불명	20,000
	예산(백만원)	7,180	-	-	31,250	-	-	-	40,000	78,430
사천시	개수	3	-	-	1	-	-	-	-	4
	면적(㎡)	3,500	-	-	불명	-	-	-	-	3,500
	예산(백만원)	65,029	-	-	1,970	-	-	-	-	66,999
통영시	개수	1	-	1	8	1	3	1	-	15
	면적(㎡)	불명	-	불명	218,080	불명	17,505	불명	-	235,585
	예산(백만원)	61,400	-	불명	103,876	1,559,600	57,875	700	-	1,783,451
하동군	개수	-	-	-	1	-	-	-	-	1
	면적(㎡)	-	-	-	불명	-	-	-	-	불명
	예산(백만원)	-	-	-	23,327	-	-	-	-	23,327
창원시	개수	6	1	1	-	-	-	1	-	9
	면적(㎡)	5,223,453	450	불명	-	-	-	120,000	-	5,343,903
	예산(백만원)	779,143	18,400	260,000	-	-	-	5,000	-	1,062,543
전체	개수	16	2	4	16	1	4	2	1	46
	면적(㎡)	5,372,081	450	9,946	248,080	불명	17,505	120,000	불명	5,768,062
	예산(백만원)	952,794	69,523	278,657	165,773	1,559,600	62,320	5,700	40,000	3,134,367

(2)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의 해역용도별 구분에 따른 특성분석


- 용도해역 구분에 따른 연안해양 이용개발 수요는 해양관광 부문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항만항행 부문이 15건으로 두 부문이 경남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함.
 - 어업활동, 에너지개발, 항만항행, 해양관광, 기타 등 5개 용도해역 구분에 따라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를 구분한 결과 해양관광과 항만항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양관광은 지역별로 거의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항만항행 15개 사업 중 통영시에만 10개 사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어업활동 7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통영시에, 안전관리는 남해군에 1개, 에너지개발은 통영시에 1개씩 나타나 통영시에 집중된 특징이 나타남.

-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전체 수요 5.7km²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5.37km²가 해양관광부문에 해당하며 특히 창원시 해역에 집중되어 있음. 5,768,062
- 어업활동 사업면적 0.23km² 중 0.2km²는 통영시에 위치하고 항만항행 사업면적 0.05km² 중 0.04km²가 통영시에 위치함. 해양관광 사업면적 5.37km² 중 5.22km²는 창원시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전체 예산 3조 1,344억원 중 해양관광 부문이 1조 2,160억원으로 가장 많고 지역에서는 통영시가 1조 7,835억원으로 가장 많은 사업예산을 보임.
- 안전관리는 남해군의 400억원, 1개 사업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해양용도별 구분에서 사업비가 가장 큰 사업은 에너지개발 부문으로 1조 5,596억원이며, 해당 사업은 통영시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부록표 1-2〉 경남 연안해양 이용개발수요 특성 분석(용도해역)

구분		안전관리	어업활동	에너지개발	항만항행	해양관광	기타	총합계
거제시	개수	-	1	-	2	4	1	8
	면적(m ²)	-	10,000	-	9,946	145,128	불명	165,074
	예산(백만원)	-	2,000	-	19,902	21,842	51,123	94,867
고성군	개수	-	-	-	1	2	-	3
	면적(m ²)	-	-	-	불명	불명	-	불명
	예산(백만원)	-	-	-	3,350	21,400	-	24,750
남해군	개수	1	4	-	-	1	-	6
	면적(m ²)	불명	20,000	-	-	불명	-	20,000
	예산(백만원)	40,000	31,250	-	-	7,180	-	78,430
사천시	개수	-	-	-	1	3	-	4
	면적(m ²)	-	-	-	불명	3,500	-	3,500
	예산(백만원)	-	-	-	1,970	65,029	-	66,999
통영시	개수	-	2	1	10	2	-	15
	면적(m ²)	-	200,000	불명	35,585	불명	-	235,585
	예산(백만원)	-	953	1,559,600	161,498	61,400	-	1,783,451
하동군	개수	-	-	-	1	-	-	1
	면적(m ²)	-	-	-	불명	-	-	불명
	예산(백만원)	-	-	-	23,327	-	-	23,327
창원시	개수	-	-	-	-	7	2	9
	면적(m ²)	-	-	-	-	5,223,453	120,450	5,343,903
	예산(백만원)	-	-	-	-	1,039,143	23,400	1,062,543
전체	개수	1	7	1	15	19	3	46
	면적(m ²)	-	230,000	-	45,531	5,372,081	120,450	5,768,062
	예산(백만원)	40,000	34,203	1,559,600	210,047	1,215,994	74,523	3,134,367

부록 2 : 경남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서



ID:

--	--	--	--

경남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2018091801-0

당첨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2018년 해양공간계획체계 구축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현재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경남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양공간 활용과 현안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설문결과를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매우 소중한 설문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는 비밀엄양원칙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이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응답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신 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2018년 10~1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획팀 전문연구원 외 연구진
 문의사항: 중앙연구소(02-3484-3071)

응답자 기본 사항			
응답자 성명		연락처(휴대)	연락처(사무실)
연락처	_____		
연락처	_____		
응답자 기본사항			
본 설문 조사는 반드시 설문지 내용을 충실히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별	나이	거주지
	남 / 여	19 / 20 / 30 / 40 / 50 / 60 이상	부산 / 울산 / 경남 / 기타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 나이는 올해 반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1) 19-29세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input type="checkbox"/> 5)
SQ3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창원시 2) 통영시 3) 시천시 4) 거제시 5) 남해군 6) 하동군 7) 고성군 8) 그 외 지역 <input type="checkbox"/>
SQ4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시군구에는 바다가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input type="checkbox"/>

- 1 -

PART A. 경남 해양공간 인식

Q01. 귀하께서는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것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불만족 2) 대체로 불만족 3) 보통 4) 대체로 만족 5) 매우 만족

Q02. 귀하께서는 현재 경남의 바다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1) 양식 및 수산업 등 어업활동을 위한 공간
2) 해수욕장, 마리나, 레저시설 등 관광·여가를 위한 공간
3) 산업단지, 조선소, 해양에너지(조력발전, 풍력발전) 시설 등 산업공간
4) 항만의 기능과 선박의 운항 등을 위한 공간
5) 어촌마을, 해양연결 주거지역 등 정주공간
6) 기타

Q03.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경남의 바다가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자원 두 가지를 골라주세요.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 2순위 ()

- 1) 모래해안, 갯벌, 사구 등 해안생태경관 자원 2) 어류 등 풍부한 수산자원
3) 어촌마을, 전통어구어업 등 해양역사·문화자원 4) 마리나, 해수욕장 등 해양레저관광자원
5) 항만, 산업단지, 조선소, 해양에너지 시설 등 산업자원 6) 기타

Q04. 경남의 바다는 야구, 갯벌, 도서 등 다양한 해양 서식지를 갖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바다 공간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부정 2) 대체로 부정 3) 보통 4) 대체로 긍정 5) 매우 긍정

Q05. 그렇다면, 귀하 자신과 경남의 바다와 얼마나 관련이 있습니까?

- 1) 전혀 무관 2) 대체로 무관 3) 보통 4) 대체로 관련 5) 매우 관련

Q06. 경남의 바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용되거나 개발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이용·개발을 통해 바다 환경이나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변화 없음 2) 약간 변화함 3) 보통 4) 대체로 변화함 5) 매우 변화함

Q97. 다음은 경남의 바다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혜택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각의 혜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0에서 10까지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 자신에게 중요한 정도와 지역사회에 중요한 정도를 구분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0점일수록 중요도가 높습니다)

< 설명 >

- (1) 수산물 생산: 바다에서 물고기, 조개, 갑, 미역 등을 얻을 수 있다.
- (2) 관광자원 제공: 바닷모래나 여러 강물을 얻을 수 있다.
- (3) 에너지 생산: 해양물체발전 등 바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 (4) 산란지와 서식지 제공: 바다는 해양생물이 산란하고 사는 곳이다.
- (5) 오염 물질 정화: 바다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해준다.
- (6) 레크리에이션과 관광: 바다는 낚시, 수영 등 사람들에게 호식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7) 심미 및 문화적 서비스: 바다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예술적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전통-문화로부터 혜택(어구 어법, 문화재, 종교 등)을 얻는다.
- (8) 기후 조절 기능: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여 준다.
- (9) 재해 및 위험 관리: 바다의 해안-해안침-사주 등은 파도-해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준다.
- (10) 부양 및 지원 서비스: 바다는 영양염 순환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11) 해상 교통 및 운송 서비스: 바다는 해상 교통과 물류 활동을 지원한다.

1) 귀하에게 중요한 정도

귀하에게 중요한 정도	중요도 낮음	중요도 높음
(1) 수산물 생산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2) 관광자원 제공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3) 에너지 생산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4) 산란지와 서식지 제공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5) 오염 물질 정화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6) 레크리에이션과 관광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7) 심미 및 문화적 서비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8) 기후 조절 기능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9) 재해 및 위험 관리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10) 부양 및 지원 서비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11) 교통 및 운송 서비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2) 지역사회에 중요한 정도

지역사회에 중요한 정도	중요도 낮음	중요도 높음
(1) 수산물 생산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2) 관광자원 제공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3) 에너지 생산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4) 산란지와 서식지 제공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5) 오염 물질 정화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6) 레크리에이션과 관광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7) 심미 및 문화적 서비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8) 기후 조절 기능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9) 재해 및 위험 관리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10) 부양 및 지원 서비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11) 교통 및 운송 서비스	0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PART B. 경남의 주요 해양활동 간 검토

주요 해양활동에 대한 설명

- 사람들은 환경으로는 바다를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개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 때로는 서로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양공간 정보를 분석해서 바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모를 조정하고 갈등들을 되도록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이번 설문에서는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 중 주로 어떤 활동들이 서로 갈등이 있는지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 보전지에 대해서 권리의 의견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요 활동	설명/사례
어업 활동	<p>우리 생활에 깊게 이용할 수 있는 수산물을 바다에서 잡거나 기르는 활동을 말한다.</p> 
공해 해저공간 자원 채취	<p>공해 해저공간을 채취는 해저의 표층 및 지질구조에 존재하는 모래, 자갈, 석회 및 천연가스, 해수에 녹아있는 소금, 미그네슘, 금, 은 등을 채취하는 활동을 말한다.</p> 
신재생에너지 개발	<p>신재생에너지 개발은 해양의 바람, 파도, 조력, 염도, 온도차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는 활동을 말한다.</p> 
해양관광	<p>해양관광 활동은 해수욕, 바다낚시, 해양레저 활동, 마성홍씨름 관람 등 바닷길에서 벗어나 해상에서 파동관광을 할 수 있는 여가 및 휴식 활동을 말한다.</p> 

주요 활동	실명/사례
<p>환경생태</p>	<p>해양환경과 생태 보호 활동은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 지정, 해양서식지 복원, 모래 관리 등을 말한다.</p> 
<p>연구·교육</p>	<p>연구 및 교육 활동은 바다를 대상으로 해양조사, 학술적 연구 등을 통해 얻는 정보와 지식과 관련한 활동과 바다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말한다.</p> 
<p>항만 활동</p>	<p>항만 항행활동은 항만의 개발, 유지, 운영하는 활동과 선박을 이용하여 사람과 화물을 수송하는 활동을 말한다.</p> 
<p>군사활동</p>	<p>군사 활동은 해양에 있는 국방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과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p> 
<p>안전관리</p>	<p>안전관리는 해양 시설을 보호하고, 해양 무인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레저 활동 등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p> 

Q96. 귀하께서는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낚시의 바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적게 이용 2) 조금 적게 이용 3) 변화 없음 4) 조금 많이 이용 5) 매우 많이 이용

Q97. 낚시의 바다를 이용하는 방식이 과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더 복잡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단순해졌습니까?

1) 매우 단순해짐 2) 조금 단순해짐 3) 변화 없음 4) 조금 복잡해짐 5) 매우 복잡해짐

Q10. 아래의 표는 사람들이 바다를 이용하는 여러 활동들 중 몇 가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들 활동은 다시 더 세부적인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활동의 값이 100%가 되도록 세부 활동들의 중요한 정도를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업활동은 어선어업과 양식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어선어업과 양식업이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각각 50%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구분	세부 활동	비중(%)
1) 어업활동	(1) 어선어업	%
	(2) 양식	%
	합계	100%
2) 에너지 개발	(1) 풍력 및 조류 등	%
	(2) 조석발전	%
	합계	100%
3) 해양관광	(1) 해변관광	%
	(2) 낚시 유람	%
	합계	100%
4) 관광생태	(1) 보양구경	%
	(2) 우수한 생태계	%
	합계	100%
5) 정만 항행	(1) 항만구경	%
	(2) 항로 중 정면구경	%
	합계	100%

Q11. 아래의 표는 해양을 이용·개발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중 어떤 활동들이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갈등이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한 표입니다. 각 활동 간의 갈등 정도를 1-5점으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은 갈등이 없거나 낮은 경우이고, 5는 갈등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을 뜻합니다.

예) 어업활동과 물자공급을 위해 활동이 같은 해양공간에서 이루어질 때 갈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5점을, 작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1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해양공간 용도	어업 활동	물자 공급	에너지 개발	해군 공간	관광 생태	연구 교육	항만 항행	군사 활동
(1) 어업활동								
(2) 물자공급	()점							
(3) 에너지개발	()점	()점						
(4) 해양관광	()점	()점	()점					
(5) 관광생태	()점	()점	()점	()점				
(6) 연구교육	()점	()점	()점	()점	()점			
(7) 항만항행	()점	()점	()점	()점	()점	()점		
(8) 군사활동	()점	()점	()점	()점	()점	()점	()점	
(9) 안전관리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PART C. 해양공간계획제도 및 경남 해양공간관리 방향

해양공간계획제도에 대한 설명

- 정부는 바다를 이용·개발하고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해양공간계획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해양공간계획제도는 다양한 해양공간 정보를 분석해서 주요한 해양활동별로 사전에 공간을 할당하는 것으로, 육상의 토지이용계획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해양활동별로 공간을 할당하면 해양공간을 더욱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공간계획의 4대 분야



해양공간계획의 4대 분야



- 정부는 해양공간계획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4월에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앞으로 시·도별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본 설문에서는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경남의 해양공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귀하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Q12. 귀하께서는 해양공간계획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1) 모른다 2) 들어는 보았으나 3) 내용을 알고 있다

Q13.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양공간계획제도가 해양공간의 다양한 활동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기여 못 함 2) 대체로 기여 못 함 3) 보통 4) 대체로 기여 5) 매우 기여

Q14. 다음은 해양공간계획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각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인지 체크해주시시오.

평가 항목	중요도				
	낮음	<<<	보통	>>>	높음
1) 해양공간계획 제도시행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1	2	3	4	5
2) 행정 조직 (해양공간계획 수립, 이행용 위한 조직 정비 등)	1	2	3	4	5
3) 해양공간정보(해양공간정보의 수집·가공·관리 등)	1	2	3	4	5
4) 법률 및 제도의 정비(시행령 등 세부적인 규정 정비)	1	2	3	4	5
5) 이해관계자 및 주민의 참여(주민 설명회, 지역협의회 등)	1	2	3	4	5
6) 관련 계획·제도에 대한 교육 및 역량 강화	1	2	3	4	5

Q19. 다음은 경남의 해양활동과 관련된 현안입니다. 이 중 해양공간관리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 2순위 ()

- 1. 일반 건설, 재개발 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추진
- 2. 인근해 어선 안전사고 및 선박 불법에 따른 양식장 훼손 증가
- 3. 해양레저활동 수요 증가와 도서해안권 중심으로 해양관광 인프라(교통, 시설 등) 집중
- 4. 해양에너지개발 계획 수요 증가
- 5. 해양환경 변화 및 해양 생태계 훼손
- 6. 양식 시설 및 바다목장,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 보살 기원 확대
- 7. 남해 EIZ 공백해제 갈등

Q19-1. 이외에 경남의 해양활동과 관련된 현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자유롭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Q20. 귀하께서 Q19에서 경남의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 1. 갈등이 존재하여 관리가 필요
- 2. 바다 환경이나 생태계에 연계를 잘 우려가 있음
- 3. 미분 및 개발 수요가 집중
- 4.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은 사업
- 5. 기타

PART D. 응답자 특성 분장

DQ1. 귀하께서는 경남 지역에서 얼마나 거주하십니까?

1. 5년 미만 2. 5~10년 미만 3. 10~20년 미만 4. 20~30년 미만 5. 30년 이상

D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업/임업/어업 2. 자영업 3. 판매/영업/서비스직 4. 기술/숙련직
5. 생산/노무직 6. 사무직 7. 전문/자유직 8. 가정주부
9. 학생 10. 무직/퇴직 11. 기타

DQ3. 살려지한 귀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대학 포함)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졸 4. 대학원 졸업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 경남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위원

〈부록표 3-1〉 2019년도 경남 지역협의회 위원

(기준 : 2019년 9월)

구분		이름	소속	직위	분야	추천기관
1	민	김창영	남해수협	조합장	수산	경상남도
2	민	이중호	멀치권현망수협	조합장	수산(풍력발전)	경상남도
3	민	최판길	육지수협	조합장	수산(풍력발전)	경상남도
4	민	강경두	한국수산업경영인 경상남도연합회	회장	수산	경상남도
5	민	황종삼	(사)한국지율관리어업 경상남도연합회	회장	수산	경상남도
6	민	이성민	남해EEZ어업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수산	경상남도
7	민	노동진	진해수협	조합장	수산업(항만건설)	경상남도
8	학	권성현	경상대학교 해양환경공학과	교수	환경(해양환경)	경상남도
9	민	지옥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공동	의장	환경(환경운동)	경상남도
10	학	박현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환경(수질관리)	경상남도
11	공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과장	환경(해양생물학)	경상남도
12	민	김용호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 기획관리국	국장	해양레저	경상남도
13	민	정재훈	경상남도 요트협회	이사	해양레저	경상남도
14	관	이수구	통영시 해양개발과	과장	해양개발	경상남도
15	연	채동렬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관리(지역현안)	경상남도
16	관	홍득호	경상남도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계획관리(해양수산)	경상남도
17	관	홍승화	창원시 수산과	과장	관리(해양수산)	경상남도
18	관	이상조	사천시 해양수산과	과장	관리(해양수산)	경상남도
19	관	정성구	고성군 해양수산과	과장	관리(해양수산)	경상남도
20	관	정명근	남해군 해양수산과	과장	관리(해양수산)	경상남도
21	관	이광재	하동군 경제수산과	과장	관리(해양수산)	경상남도
22	군	정현아	해군진해 기지사령부 작전참모실		국방	경상남도
23	민	송하균	한국해운조합 경남지부	부장	해운항만(해운항해)	경상남도
24	관	정설화	경상남도 항만물류과	항만정책담당	해운항만(항만물류)	경상남도
25	관	임우정	거제시 해양항만과	과장	해운항만(항만)	경상남도
26	공	정태균	한국남동발전 풍력사업부	부장	에너지	경상남도
27	민	전용환	경남테크노파크	팀장	에너지	에너지공단
28	민	박종포	고등기술연구원	연구원	에너지	에너지공단
29	산	이종배	(유)한진산업	대표이사	골재	골재협회
30	산	박동훈	(주)삼일산업	전무이사	골재	골재협회
예비	민	김동현	경상대학교	교수	에너지	에너지공단
예비	관	이희정	남동해수산연구소	소장	식품공학	경상남도
예비	민	허인석	해양환경공단	지사장	화학공학	경상남도
예비	공	민병주	한국수산자원공단 남해본부장	본부장	수산화	경상남도

부록 4 : 지역협의회 운영결과

□ 경남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 일시/장소 : (1차)2019.8.7.(수)/경남도청, (2차)2019.9.3.(화)/창원축구센터
- 주요내용 :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안) 검토 및 용도구역·관리구역 관련 의견 수렴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고성군 해양수산과 정성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이 어업활동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어촌뉴딜300 등 관광에 중점을 두는 어항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어항의 관광기능을 반영 요청 ○ 어업활동보호구역 확대 및 지정 시 어업생산성 자료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뉴딜 300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해양공간을 검토한 후 사업이 구체적이고 대상 공간이 명확한 경우 관리구역으로 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 현재는 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 진행 중으로 반영하기 어려우며, 평가결과 검토 후 반영 가능 ○ 어업 생산성 자료는 현재 여건, 과학적 분석의 한계 등으로 반영이 어려우며, 용도구역 지정시 다양한 관련 데이터를 교차 활용하여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input type="checkbox"/> 미수용
통영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의 특성 및 관련 이용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은 기 법정 보호 	<input type="checkbox"/> 일부 수용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환경운동연합	<p>(해양보호생물 등)에 대한 사항이 용도구역(안) 지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기수역, 연안습지 등 생물 다양성이 높은 수역이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에 적절하나 제시된 용도구역(안)은 해역 위주로 제시</p> <p>○ 이는 문헌자료를 활용하는 제도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추가적인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p>	<p>구역과 국가 법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양 환경 및 생태계 유지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공간이 지정된 것임.</p> <p>○ 현재 계획(안) 작성 절차에서 추가적인 현장 조사는 어렵지만, FIRA 자료와 현장 지식을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 잘피서식 공간에서 200m 범위를 포함하여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단, 잘피서식공간이 양식장일 경우,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하되 잘피서식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구역을 정하여 관리하겠음.</p> <p>*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 업무 협의(8.27)</p>	○ 검토 후 반영
한려해상국립공원 사무소 박은희	<p>○ 해상국립공원을 모두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요청</p> <p>※(서면요청)2020년 12월 고시예정인 공원협력구역(공원외 지역) 협의 필요</p>	<p>○ 공원 내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보호수면과 관리수면으로 지정된 곳으로 어업활동의 보호와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간임.</p> <p>- 이 공간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생물 서식지 보호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기존 자연공원 지정 목적에 상충하</p>	□ 미수용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p>는 것이 아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음.</p> <p>○ 해당 공간은 수산자원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행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으로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음. 어업활동과 생태보호 간 상충이 아닌 생태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구역 지정임.</p>	
(유)한진산업 이종배	○ 2020년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허가기한 만료 시 해양용도구역 해제로 명시한 것은 불합리	<p>○ 동 제도에서 핵심활동 종료 시 해당 용도구역의 유지와 변경에 대한 검토 후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p> <p>○ 바다모래 채취를 줄여가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남해 EEZ 골재채취구역은 '20년 종료되는 것으로 하였음</p>	□ 미수용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 김용호	○ 용도구역 지정은 지자체별로 용도구역에 관해서 협의 후 시에서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해수부에서 지정하는 절차가 실효	○ 지역협의회 전 지자체 의견을 사전조회하였으며, 협의회 후에도 시·군·구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반영	□ 일부 수용 * 시군구 지자체 제출 사업 내용 검토 후 반영
경남테크노파크 전용환	○ 구역 지정 시 미래가치(개발 가능성,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언급 필요	○ 전기사업허가구역 등에 대해서는 특성평가 시 반영하였음. 다만 용도구역 반영은 구체	※ 제도에 관한 의견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상충행위 간 가치평가 및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해역이용협의 이전의 절차가 발생하며 해양 에너지 자원 개발의 어려움을 배가시킴. ○ 지정구역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구역지정 시나리오가 검토되어야 함. 	<p>적인 추진계획 마련, 지역 수용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개발구역으로 반영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후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및 별표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계획의 경우,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등에 대해 해수부와 사전 협의 필요 <p>○ 한편,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용도구역 지정을 위한 과학적인 수단 개발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영향예측기술 개발 추진, 해양이 주는 혜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해양생태계서비스 평가체계 구축·분석기술 개발 등을 용도구역 및 계획의 변경에 활용하겠음. 	
<p>고등기술연구원 박종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의 의견 수렴 필요 ○ 해상풍력에 관한 사항 미미함으로 이에 대한 설명과 이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협의회에 수산 분야 위원 참여 중 ○ 개별 용도구역은 해양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정하며, 해당 공간에 양립할 수 있는 활동들은 우선순위를 두어 허용 - 다만, 해상풍력은 기존에 이용되어 온 활동 	<p>※ 제도에 관한 의견</p>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또는 용도와 상충되거나 사회적 갈등 유발 우려가 있어 용도구역 반영을 위해서는 사회적 협의와 조정 노력 등의 과정 필요	
(사)한국자율관리어업 경상남도 연합회 황중삼	○ 어업인을 위한 법률 제정		※ 제도에 관한 의견
멀치권현망수협 권중원	○ 행위제한 사항 포함 요청 -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어업행위와 상충하는 개발 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 필요	○ 해양공간계획법과 이 제도는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 반영이 어려우며, 법률 개정 사항임.	※ 제도에 관한 의견
진해수협 김성철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대립하지 않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법에 시도가 협의하여 공동수립하거나 해수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음. ○ 동 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도가 주장하는 공간을 동일한 용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제도에 관한 의견
육지수협 김현영	○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안이 조속이 제정되어 경제적 약자인 어업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제도에 관한 의견
남해군 해양수산물	○ 해양공간계획 전담인력 확충 및 재정 지원		※ 제도에 관한 의견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박정민	요망		
경남요트협회 정재훈	○ 법 제정은 필수적인 사항임 ○ 어업과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 제대를 위한 법으로는 한계가 있음.		※ 제도에 관한 의견
한국해운조합 경남지부 송하균	○ 해양공간계획 확정 전 이해관계자의 이견으로 합의·조정이 어려울 시 결론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사전에 이해관계자에게 공유되고 충분한 협의, 토론, 정보공유, 공청회 등이 필요		※ 제도에 관한 의견
골재협회 (유)한진산업 이종배	○ 계획 내용 만족 ○ 계획 내 바다모래채취에 대해 삭제할 것이 아니라 포함하여 가야할 것임.	○ 바다모래 채취를 줄여가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남해 EEZ 골재채취구역은 '20년 종료되는 것으로 하였으며, 신규 구역을 포함하지 않았음	<input type="checkbox"/> 미수용
골재협회 (주)삼일산업 박동훈	○ 골재협회의 입장에서 반대의견보다는 골재 역시 에너지나 다른 환경자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필요한 사업이므로 바다골재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		※ 제도에 관한 의견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거제시 해양항만과 임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이 없다면 실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임. ○ 거제시 와현, 구조, 망치 일부 지역이 해양관광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비(철새)도래지로 지정되어 있어 해양관광을 위한 개발행위나 시설을 설치 시 문화재청 심의에 있어 전혀 행위를 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비도래기간에는 수상레저활동도 할 수 없어, 구역에 대한 실제 이용 현황 재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공간계획법은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개별법(「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용도구역에서의 개별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제한되며, 참고로 해양공간특성평가시 자문한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하였음 ○ 동 계획에서 해당 공간(아비도래지)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였고, 해당 구역의 해양활동이 중첩되는 공간을 관리구역으로 반영하였음. 다만, 해당 활동이 환경·생태계 영향에 미치지 않도록 관련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음. 	□ 미수용
남해 EEZ 대책위원회 이성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공간계획 도입에 따른 어민 생계에의 영향이 우려되며, 제도 시행 시 우리나라 수산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제도에 관한 의견
<서면> 한국남동발전 정태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개발구역을 다른 용도구역과 중복 지정이 가능하도록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풍력단지가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단지를 구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제도에서 군사활동, 연구·교육보전, 안전관리 관련 구역만 중복 지정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개별 용도구역은 해양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정하며, 해당 공간에 양립할 수 있는 	※ 제도에 관한 의견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시 해수부 검토의견을 동의/부동의/조건부동의로 구분하기보다 향후 보완사항을 기술하는 형태가 바람직함 	<p>활동들은 우선순위를 두어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해양공간 통합관리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입지적정성 및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므로, 사안에 따라 검토의견이 달라질 수 있음 	
<p><서면> 해군진해기지사령부 정현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활동구역(안)의 해군훈련구역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 군사활동구역(안)의 해양경찰청훈련구역에 관해서는 해경 측의 검토가 필요 ○ 진해 군항의 제한보호수역 외측(부산광역시, 여수시, 남해군 인근 등)은 해군작전사령부 및 해군3함대사령부의 관할수역으로 관련 기관의 검토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해 군항의 통제 및 제한보호구역 반영 ○ 해군진해기지사령부 관할 외측 수역에 대해서는 해군작전사령부 등의 자료 요청 	<p><input type="checkbox"/> 수용</p>
<p><서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박현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조사자료 분석 및 폭넓은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며, 미래를 대비한 종합적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함 ○ 지정된 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우선 증진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영 육지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하여 전기사업허가 구역에 대한 정보는 특성평가에 반영하였음. 에너지개발구역으로 미반영 - 다만 용도구역 반영은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 지역 수용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에너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p>는 방향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민 수용성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p> <p>○ 에너지 개발에 따른 어업권 훼손 문제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통영 육지도 주변 해상풍력발전 개발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p>	<p>지개발구역으로 반영 가능</p> <p>○ 추후 사업추진 시 피해보상,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은 관련법에 따라 추진할 사항임.</p>	

부록 5 :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 일시/장소 : 2019.10.14.(월) 14:00/경남 창원 컨벤션 센터
- 주요내용 :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안) 관련 주민 의견 수렴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일시 : 2019.10.25.(금)~11.27.(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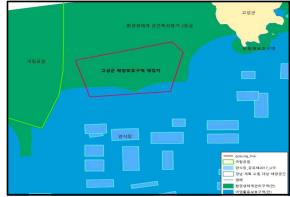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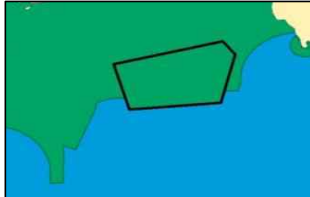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경남 환경운동연합 ※ 공문제출(19.10.28)	창원시	1-1. 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 계획에 따라 환경·생태계관리구역 면적 확대 요청	○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 계획이 확정되기 전으로 대상 공간을 확인하기 어려움. *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 고시 이후에 용도구역 변경이 가능함	미수용
		1-2. 가토 오토캠핑장 인근에 해양보호생물(갯게, 기수갈고둥)이 서식하므로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지정 요청	○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특정할 수 없으며, 현재 방파제 안쪽을 유어장으로 기 활용	미수용
		1-3. 덕동만 갯벌에 해양보호생물(갯게, 기수갈고둥)이 서식하며, 천	○ 기존 활동(어업권 설정 등)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갯벌 분포를 고려하여 일부를 환경·	일부수용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연기념물(원앙)의 월동지가 분포하므로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요청	생태계관리구역으로 반영	
		1-4. 구산면 내만에 해양보호생물(갯게, 기수갈고둥, 거머리말)이 서식하며, 해양생물 서식지 및 산란지로 기능하는 갈피가 분포하므로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요청	○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구역(환경생태계)으로 반영	기 반영
		1-5. 구산면 해안에 해양보호생물(기수갈고둥, 거머리말)이 서식하므로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요청	○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기 반영	기 반영
		1-6. 마전리 내만에 해양보호생물(갯게, 기수갈고둥, 거머리말)이 서식하므로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요청	○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기 반영	기 반영
		1-7. 진동천, 덕곡천, 대장천 하구 및 진동만 내만에 해양보호생물(기	○ 법정구역인 마을어장으로 지정된 공간으로 현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유지	미수용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수갈고등)이 서식하므로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요청		
	1-8.	창포만에 해양보호생물(갯게, 붉은발말뚝게, 기수갈고등 거머리말)이 서식하는 지역이지만 매립계획이 발표되어 갈등이 발생한 곳으로 보전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구역인 마을어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당 구역을 제외하고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기 반영 - 다만, 어업활동보호구역(마을어장) 중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은 관리구역(환경생태)으로 추가 	일부수용
사천시	2-1.	광포만은 갯잔디 군락지이며 철새 중간 기착지로 환경생태 특성이 높은 곳으로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구역인 마을어장으로 지정된 공간으로 현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유지 - 해양생태계종합조사(긴급조사) 결과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을 관리구역(환경생태)으로 추가 	일부수용
통영시	3-1.	화삼리 연안 조하대에 해양보호생물(거머리말)이 대규모 분포하며, 통영시 해양보호구역 추진이 확정(19.10.24)된 구역으로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확대지정(2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삼리 연안 조하대 잘피 서식지는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기 반영 - 보호구역 지정 수요 존재만으로는 확대 지정의 근거로 활용하기 어려움. 	미수용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3-2. 광도면 광도천 하구에 해양보호생물(기수갈고둥)이 서식하므로 환경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 요청	○ 갯벌 분포 공간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반영	수용
		3-3. 도산면 원산천 하구에 해양보호생물(기수갈고둥)이 대규모 서식하므로 환경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 요청	○ 법정구역인 광업권 설정 구역으로 골재·광물자원구역으로 유지 - 다만,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은 관리구역(환경생태)으로 추가	일부수용
		3-4. 한산면 한산도~서좌도 사이 해역에 해양보호생물(거머리말)이 대규모 분포하므로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요청	○ 법정구역인 양식장이 분포하는 구역 ○ 양식장 외 지역의 해양보호생물(거머리말)이 서식하는 공간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기 반영	기 반영
거제시		4-1. 장목면 황포해수욕장에 해양보호생물(갯게, 달랑게) 서식지이므로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요청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조사결과에 근거함	○ 법정구역인 양식장, 해수욕장이 분포하므로 반영 불가 - 다만,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은 관리구역(환경생태)으로 추가	일부수용
		4-2. 사곡만에 해양보호생물(갯게, 달랑	○ 법정구역인 마을어장이 분포하므로 반영 불가	미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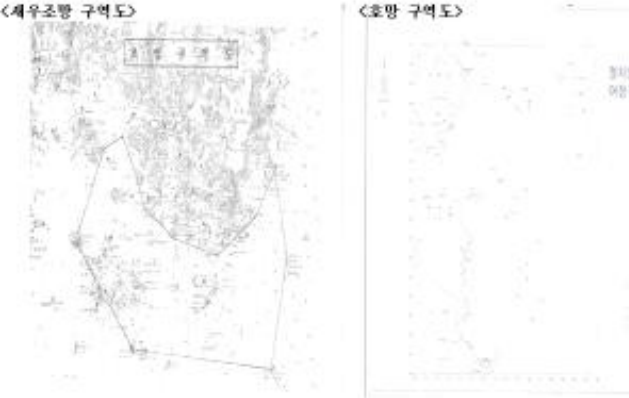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p>계)이 대규모 서식하며, 인근 하천 기수역에 해양보호생물(기수갈고둥)이 서식하므로 환경·생태계관리 구역으로 지정 요청</p>		
		<p>4-3. 죽림만에 해양보호생물(달랑게)이 서식하며, 오수천 및 산양천 하류에 기수갈고둥이 서식중으로 거제시에서 산촌습지 생태공원을 추진 중인 지역으로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요청</p>	<p>○ 갯벌 분포 공간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반영</p>	수용
		<p>4-4. 울포만, 탑포만에 해양보호생물(갈피)이 대규모 서식하며, 환경부에서 댕섬을 특정도서로 추진중이므로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요청</p>	<p>○ 탑포만 아래쪽에 어항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반영 불가</p>	미수용
고성군	5-1.	<p>덕호리~덕명리 해역에 상괭이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 중으로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요청</p>	<p>○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 중인 구역의 대부분이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기 반영되어 있으며, 일부 어업활동보호구역을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변경</p>	수용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p>(기존)</p>	 <p>(변경)</p>	
	남해군	<p>6-1. 동대만에 해양보호생물(갈피)이 대규모 서식하며, 인근 염습지에 해양보호생물(붉은발말뚝게, 갯게, 대추귀고둥)이 서식하므로 동대만 내만 전체를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요청</p>	<p>○ 법정구역인 양식장이 분포하는 지역 외 해양공간이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기 반영</p>		기 반영
전남 여수시 어업생산과	<p>○ 경남-전남 간 관할권 다툼이 있는 지역을 경남측 계획에 포함하고 있음. 2015년 대법원에서 인정한 전남-경남 해양경계를 바탕으로 계획수립 대상 해역 범위 재설정 필요</p>		<p>○ 경남-전남 해상경계 관련 2015년 대법원의 전남 승소 판결 이후, 경남에서 동 확정판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상태로 현재 해상경계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이므로 분쟁의 대상이 되는 해양공간을 <u>경남-전남 공동 계획수립 대상 해양공간</u>으로 설정하였음.</p> <p>○ 해양공간계획은 해상경계 설정을 전제로 하지</p>		일부수용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p>아니하며, 다만 관할권 경계가 모호한 해역에 대하여 인접 시·도에서 동일한 용도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 해역을 공동 계획수립 해양공간으로 설정</p>	
<p>한려해상국립공원 김현선</p>	<p>○ 타법령과 협의하는 추가적인 절차 필요 - 해양용도구역(안) 지정 시 타법령과 협의 ※ 국립공원구역을 타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변경할 시 환경부 장관과 협의 (자연공원법 제18조의2)</p>	<p>○ 해양공간계획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절차가 포함 됨</p>	<p>기 반영</p>
<p>의창수협</p>	<p>○ 부산항 신항건설에 따라 조업구역이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가덕도 인근 어업인은 소형 선박으로 어업활동을 영위 중으로 가덕도 연안을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필요</p>	<p>○ 해양공간계획은 해양 이용·보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주요 해양공간에 대한 정책·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조업구역 확대는 용도구역을 지정근거에 부합하지 아니함</p>	<p>미수용</p>
<p>통영수협</p>	<p>○ 개발행위에 따라 어장축소, 생태계 파괴가 지속되어 어족 생산량이 감소 중으로 조업확대를 위하여 유보 해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 필요</p>	<p>○ 해양공간계획은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로서 신뢰성 있는 가용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해양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용도구역을 지정할 수 없음</p>	<p>미수용</p>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서남구수협	○ 조업환경 악화가 심화되고 있어 기존 해양 이용자인 어업인의 의견을 우선하여 해양 공간계획 수립 및 이행 필요	○ 해양공간계획은 해양 이용·보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주요 해양공간에 대한 정책·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조업구역 확대는 용도구역을 지정근거에 부합하지 아니함	미수용
경상남도	○ 어촌 뉴딜 300사업 추진 중 또는 추진예정 지역에 대한 해양용도구역 반영 요청 - 추후 적합성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지연이 예상됨 ※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23개소	○ 해양관광구역 용도로 반영하기 어려우나, 지자체 업무협의를 통해 어촌뉴딜 평가 후 선정된 지역 중 해양공간을 포함하면서 구체적인 위치와 계획 수립 여부, 사업의 성격(어항개발, 해양관광 등), 상충여부를 고려하여 관리구역으로 검토 및 반영 ※ 20.01.14 경남 해양수산과 업무협의 진행	일부수용
창원시 이제빈	○ 창원 명동해역에 채굴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채굴은 육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구역이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18.10)되어 있으므로 해양관광구역으로 지정 요청	○ 채굴권 설정구역은 물권적 권리가 인정되는 법정구역으로 실제 채취구역과 관계없이 골재채취법에 따라 권리가 인정되는 광구를 골재광물 자원개발구역으로 하되,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따른 진해명동 마리나항만구역을 관리구역(AG-520227-01)으로 반영	일부수용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창원시</p>		
<p>거제시 위경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인과의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골재 광물자원개발구역 배제 요청 ○ 거제 인근해역에 다양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항로구역을 제외한 해역에 대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우조망 조업구역 및 대구호망, 통발 어업 등 조업수역이 미반영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골재채취법 상 골재채취예정지 및 골재채취단지를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으로 지정 ○ 어업허가구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항구역, 면허어업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수면 등이 어업활동보호구역 지정기준에 포함됨 	<p>미수용</p>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p>경상남도연구원 채동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로활동은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생계수단으로서 용도구역 지정에 따라 어로활동의 자유가 침해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어업활동보호구역을 용도구역에서 폐기하고 여타 해양국과 같이 어업활동 금지구역을 신설 ○ 바다 골재채취는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어업피해를 유발하므로 현재 골재채취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채취구역에 대한 해저지형 원상복구가 필요함 ○ 현재 제시된 관리계획(안)의 해양관광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재채취법 상 골재채취예정지 및 골재채취단지 허가기간 만료 시 용도구역 변경에 관하여 검토함 ○ 관광진흥법, 어촌·어항법, 해수욕장법, 마리나항만법 등 타법에 따른 구체적인 해양관광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 해양관광구역으로 반영 	<p>※ 제도에 관한 의견</p>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p>은 관광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경남 연암 시군이 계획 중인 해양관광개발사업을 고려하여 해양관광구역 재설정 필요</p>		
<p>한국수산자원공단 홍정수</p>	<p>○ 경남 해수면 수산자원보호수면 지정 현황에 고성군 현내면 내용 삭제 필요</p>	<p>○ 착오로 인한 오폭기로 삭제</p>	<p>수용</p>
<p>창원시 이제빈 거제시 위경오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이기호</p>	<p>○ 플랑크톤 등 먹이생물 이동에 따라 어획지점이 매년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유보해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 요청</p>	<p>○ 신뢰성 있는 가용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관리실익이 없는 해역을 미지정해역으로 유보 - 플랑크톤 등 먹이생물의 이동, 어족자원 회유 경로 등에 대한 신뢰성 높은 과학정보 확보 시 해양공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후 제도 개선 추진</p>	<p>미수용</p>

부록 6 : 관계기관 의견조회 이후 제출 의견(20.11.28~)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p>경남 환경운동연합 ※공문제출(20.7.20)</p>	<p>○ 전내량권 해간도 잘피 서식지를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지정 요청</p> 	<p>○ 해양공간특성평가와 어항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반영 - 다만, 제출의견을 고려하여 잘피 서식지를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 우선순위* 구역(환경·생태계관리)으로 반영 * 「해양공간관리계획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8조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우선순위)</p> 	<p>일부수용</p>
	<p>○ 한산도권 창좌리 해안~유자도 인근 잘피 서식지를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지정 요청</p>	<p>○ 어항 지정, 어업활동 등 기존 활동현황을 고려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 우선순위 구역 (환경·생태계관리)으로 반영</p>	<p>일부수용</p>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p>○ 사곡권 사곡해수욕장 인근 잘피 서식지를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지정 요청</p> 	<p>○ 어업권 설정 등 기존 활동현황을 고려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 우선순위 구역(환경·생태계관리)으로 반영</p> 	<p>일부수용</p>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p>○ 거제만권 영월마을 인근 잘피 서식지를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지정 요청</p> 	<p>○ 어항 지정, 어업권 설정 등 기존 활동현황을 고려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 우선순위 구역(환경·생태계관리)으로 반영</p> 	<p>일부수용</p>
	<p>○ 칠천도·장목권 장목항 인근 잘피 서식지를 환경·생태계관리구역으로 지정 요청</p>	<p>○ 어항지정, 어업권 설정,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기존 활동현황을 고려하여 어업활동보호구역 내 관리 우선순위 구역(환경·생태계관리)으로 반영</p>	<p>일부수용</p>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p>거제시 안전총괄과 김호근</p>	<p>○ 지세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를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 요청</p>	<p>○ 자연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의 목적, 필요성,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p>	<p>수용</p>

구분	의견내용	검토 의견	비고
	